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한국법제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301-01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2012. 5.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301-01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2012. 5.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만들기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5.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9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필요성	10
II. 연구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팀 구성방안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추진일정	13
III.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13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제 2 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일반기준	15
제 1 절 개 관	15
I.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배경	15
II. 법률용어정비의 기본원칙	15
제 2 절 법률용어의 순화	18
I. 순화의 주요내용	18
II. 용어순화의 기준	19
III.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21
제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25
1. 문장구조	25
2. 자연스러운 문장	26
3. 어문규범의 준수	32
제 3 장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정비안 마련 ...	35
제 1 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개관	35
I. 수산업 관련 법령의 ‘알법’만들기 현황	35

II. 수산관계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39
III. 수산관계 법령용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의 전환 방법	40
IV. 정비대상 법령 및 선정기준	43
V. 향후 개선안의 입법정책적 반영 방안	45
VI.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결과 요약	52
제 2 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53
I. 수산업법	53
II. 수산업법 시행령	57
III. 어업등록령	87
IV.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87
V. 수산자원관리법	92
VI.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04
VII. 어선법 및 하위법령	110
VIII. 어장관리법	124
IX. 낚시어선업법	125
X. 낚시관리 및 육성법	126
XI.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126
XII. 기타 법령 및 행정규칙	128
XIII. 기타 수산관계 용어	137
【부 록】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141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143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개선방안 마련 용어	143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163
1-1-2. 바꿀 필요성이 있는 용어	172
1-1-3.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177
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설명병기 가능 용어	182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188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197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229

제 1 장 연구개요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이 입법정책적 환경변화 및 어업현실의 변화 등에 따라 10개의 법률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등 현재에 이르러 복잡하고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법령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 특히 어업에 관련된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용어가 한자식표현 및 일본식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어업인 및 어업관련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등이 이해의 곤란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법제처 주관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을 개정하였다. 2007년 개정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산관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전문용어는 일부용어를 제외하고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여전히 법령이해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서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어업허가 규칙, 어업면허 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각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 전문용어를 선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함으로써 어업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및 향후 어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산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동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수산관계 법령에 산재해있는 전문용어로 인하여 어업인, 일선 공무원 및 향후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업인들과 일반 국민이 수산관계 법령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주요 수산관계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용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법 개정시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수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입법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동 연구는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및 어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산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향후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업인들 및 향후 정책 담당자가 될 신규 공무원과 귀촌하여 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도시생활자 및 일반국민의 수산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어업허가 규칙, 어업면허 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각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 전문용어를 선정하여 정비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 특히 금번 연구를 통해 선정된 수산 관련 법령의 전문용어의 개선을 통하여 향후 어업현실은 물론이고 어업관련 중등 교과서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고자 한다.

<수산관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용어 예시>

- 어구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한자식·일본식 명칭*이 고착화되어 명칭만으로 어떠한 어구인지 알기쉽지 않은 실정

* 한글만으로 알기 어려운 명칭의 사례 : 권현망(權現網), 안강망(鮫鰈網), 저인망(底引網), 조망(漕網), 형망(桁網), 선인망(船引網), 승망(柁網), 건강망(建干網) 등

2. 연구팀 구성방안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및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실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등을 통한 신뢰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 분야 및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와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 법제연구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수산업분야 및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와 학제간 연구가 될 수 있는 연구진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실시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보고서, 관련기관 및 세미나자료, 외국 전문기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분석하여 정비안 마련에 반영한다.

-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
 - 담당 분야별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연구진이 내용을 공유하여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 학계, 전문가 중에서 동 연구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정비안 마련에 활용한다.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동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수산관계 법령 관련 논문, 자료, 기존의 고등학교 어업교과서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정비대상 용어의 선정 및 정비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 일본의 수산관계 법령 및 용어의 유래 등을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우리의 용어와 비교·대조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한다.
- 전문가자문을 통한 법령 용어 분석 및 정비
 - 주요 수산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대상으로 개선·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산 관련 전문가, 법제 전문가 및 용어정비 전문가와 함께 수행한다.
 - 선정된 법령 전문용어에 대한 개선·정비안을 마련한 후 수산 관련 전문가, 현장 정책 실무진, 법제 전문가 및 국어학자 등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제시한다.

4.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30일	~70일	~100일	
연구수행 착수심의				
수산관계 전문용어 선정 및 정비기준 마련				
용어정비 관련 전문가 워크숍 중간보고				
최종보고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추진진도 (%)	20	70	100	100

Ⅲ.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2011. 6. 29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된바 있다.
- 정부차원에서는 어업의 기본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Ⅳ.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금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산관계 법령 전문용어의 개선·정비안은 향후 수산 관계 법령 개정시 관련 전문용어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이와같은 수산관계 법령 전문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어업현장은 물론이고 중등교과과정의 어업 교과서 및 어업관련 용어를 설명하는 사전 등에 개선·정비안을 적용하여 이해를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 2 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일반기준

제 1 절 개 관

I.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의 배경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語文) 규범에도 맞지 않으며, 일상 언어생활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 그에 따라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한국법제 연구원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87%는 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주요원인으로 선택한 것은 ①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61.9%), ② 어려운 전문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48.5%), ③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27.4%), ④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2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 모든 법령을 쉽게 정비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금까지의 공무원·법률전문가 중심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 법률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II. 법률용어정비의 기본원칙

1. 알기 쉬운 법령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법령문에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

법령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법령문은 쉬운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잘 이해할 수 있게 까다롭지 않고 쉬운 법령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종래 법령문은 가능하면 하나의 문장이나 용어로 압축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령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장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입법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히 나타내는 내용이 법령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세나 기술 관계 법령 등과 같이 그 제도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기술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법령은 내용이 어느 정도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이런 경우에도 논리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을 쉽게 서술하면서 정확성과 치밀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즉,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한다든지, 실제 규정과 절차 규정을 나눈다든지, 수식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조항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조항 배열의 순서도 조정해서 알기 쉬운 법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 용어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없다면,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뚜렷한 법령

법령문은 이를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한다.

우리 법령문은 애당초 친숙하고 일상적인 생활 언어와의 거리감이 생기고 점차 법령의 수가 늘어가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은 국민 생활을 규제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다의적인 해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어문규범에 충실한 법령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문 표현”이라고 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충실하지 못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어문 규범에 따르면서, 법령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어문 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의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그간의 법령문이 한글 전용의 원칙과 어문 규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한문과 일본어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민이 법령문을 국어 교제로까지 여길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어문 규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좋은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번역체 문장에 간혀 있는 법령문을 한결 품위 있는 문장으로 바꾸어 법령문의 차원을 높이고 법률 문화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길이 될 것이다.

4. 자연스럽고 친근한 법령

법령문의 문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바꾸어, 읽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어체(古語體)에 가까운 문어적 표현이 법령의 위엄과 무게 그리고 중요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런 법령문은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에 어렵다. 즉 고어식 문어체나 번역체로 된 법령문은 친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일반 국민이 가깝게 다가가기 쉽지 않으며, 또한 우리 법령문의 많은 어휘나 표현이 대체로 어색하고 딱딱하다.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다듬어서 국민이 그 법령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률용어의 순화

I. 순화의 주요내용

- 법률의 한글화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
-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醇化)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쉽게 고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법률 문장에서도 가운데뎨점(·), 반뎨(,) 등의 문장부호 사용이나 띄어쓰기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II. 용어순화의 기준

1. 한자어 순화기준

(1) 어려운 한자어

법령수요자인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한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더라도, 법령의 적용 대상인 사람들이나 그 법령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어렵지 않은 한자어라면 무리해서 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2) 의미전달이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면 그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러나 한글화하더라도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법문장의 내용에 따라 한자 표기가 다른 동음이의어나 한글 표기만으로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현 행>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순화안>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어휘를 한자음대로 읽은 것으로 원래 일본말은 음으로 읽는 것(音讀)과 뜻으로 읽는 것(訓讀)으로 나뉘는 바,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뜻으로 읽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서 표기하고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발 앞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와 법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어로서 만들어진 번역식 법률용어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에서와 音讀밖에 없는 한국어에서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도 법이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법생활로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조어자의 원어이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번역어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라는 면에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감정과 일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와 「일반국민의 법으로부터의 소외」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¹⁾

2. 용어의 순화

(1)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용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일상생활의 언어와는 달리 어색한 것,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법령문의 용어들은 일상적인 언어 습관과 사용법에 맞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친다.

1)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1-12면.

(2) 외래어 및 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쓸 때는 ‘외래어 표기법’²⁾에 맞게 쓴다. 다만 관례적으로 오래 써서 입에 익은 외래어는 먼저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표기를 따른다.

Ⅲ.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1. 어려운 한자어

(1) 쉬운 말로 고치기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고칠 것인지는 법령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일반 국민과 실제 그 법령이 필요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서 어렵지만 한 한자어는 쉬운 용어로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³⁾

예 : 암거(暗渠) ⇨ 지하 도랑
사위(詐僞) ⇨ 속임수

(2) 설명 붙이기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 어려운 한자어는 그 한자어를 일단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다. 다만 이 방법은 입법 기술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2)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 국립국어원 홈페이지(korean.go.kr)]를 참조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35-37쪽.

예 : 독립가(篤林家) ⇨ 독립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소택지(沼澤地) ⇨ 습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3) 한자를 같이 쓰기

법률을 한글화하더라도 ‘차대(車臺)’⁴⁾ ‘실화(失和)’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填)’,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 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한자 병기를 할 것인가와 한자 병기를 몇 번 할 것인가는 그 법령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와 법령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결정한다.⁵⁾

예 : 저인망
그 법령과 별로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렵지만 실제 그 법령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한자어는 바꿔 쓸 적절한 용어도 없으면 무리해서 순화하지 말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요하다면 한자를 함께 쓰기도 한다.

예 : 이 법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라 함은 저인망(底引網) 또는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란 저인망(底引網)이나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말한다.

4) 기차 따위의 차체(車體)를 받치며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철로 만든 데.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38-39쪽.

2.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음독하거나 훈독한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한자의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는 순수한 일본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가 한자의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해당 법령문에서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뀌서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쉽게 바꾼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와 일치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가건물(假建物)	⇨	임시건물
공작물(工作物)	⇨	인공 구조물
굴삭기(掘削機)	⇨	굴착기
내역서(內譯書)	⇨	명세서
수속(手續)	⇨	절차
음용수(飲用水)	⇨	먹는 물, 마시는 물

3. 소 결

(1) 한자어의 문제

법이 지배자의 지배수단이었던 봉건시대 내지 전제군주시대와는 달리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은 국민의사의 표현이므로 민주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입법의 민주화, 법령의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법의 평이한 표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법령의 표현의 평이화라는 요청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법령의 자구가 성문화된 권리의무의 규범이라는

법령으로서의 성질에서 생기는 기술적인 제약이다. 먼저, 법령에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서로 상위·하위의 관계, 전법·후법의 관계 및 일반법·특별법의 관계 등이 있으며, 각 법령은 이러한 관계에서 각각 논리적으로 통일된 법질서의 일환으로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 법령자체에 있어서도 법규범으로서의 논리적 통일, 동일한 의미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동일한 자구의 사용, 후문의 전후관계의 명확한 표현 등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법령의 표현방식에는 법령자체의 성질에서 생겨나는 특수한 요청과 국민에게 이해가능하기 위한 평이성이라는 것은 상호 모순된 두 가지의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령으로서의 기술적 제약에서 일반일상용어에 의한 구어체가 반드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법령의 규정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생활현상자체에서 반드시 평이한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아무리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경우에 따르는 것이며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난해한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령에서 한자어의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 a. 의미 영역이 명확하고 지시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것
- b. 한자어의 각 구성부분은 일상의 언어대중이 사용하는 그 글자 혹은 그 어휘의 자의(字義)와 동일한 음과 의미를 지니고 사용될 것
- c. 동음이의어와의 충돌이 적어야 할 것
- d. 한자어의 조어법과 우리의 정서에 맞을 것

(2) 일본식 한자어의 문제

우리 법령용어의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일본식 법률용어의 순화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법령 제·개정시마다 가능한 한 일본식 용어·문장을 피하고 우리 어법과 정서에 맞는 용어와 문장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용어들 중 이미 오래 동안 관행되어 온 결과

‘외래어’로 정착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를 바꾸는데 따른 문제점과 효용을 비교하여 그 교체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특정 업계의 전문 용어의 문제

특정 업계의 전문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나 외래어, 특히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아 앞의 논의와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런데 전문 용어의 경우 그 분야 사람들, 특히 수범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반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을 위해 전문 용어를 순화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고려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 용어를 일반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문 용어가 그 업계에서는 통용된다 하더라도 그 업계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단어라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새롭게 그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 보다 쉬운 용어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관련 용어들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보급의 필요가 생기지만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보급이 어려워진다면 용어를 쉽게 풀어쓸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이 보다 많이 보급되고 직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법률상 전문용어도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다.

제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1. 문장구조

(1) 문자의 호응과 어순

법령문에서도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문장의 어순도 자연스럽게 배치해야 하는데,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에 있어서 의미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 피동문의 제한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비하여 피동문이 적다. 그러나 법령문에서는 주체가 사람임이 분명하면서도 피동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피동문은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쓴다.

2. 자연스러운 문장

법령문장에서 여러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나열되거나 어색한 명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딱딱하게 하거나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를 넣어서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분명하게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보조사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 ~으로써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의 ‘以(이)’나 일본어 ‘~をもって、~をして’에 대응하여 많이 쓴 표현이다. ‘~으로써’를 ‘~여(서)’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서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하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함으로써’도 쓸 수 있다.

<현 행>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여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차적으로는 도모하다를 피하다로 순화시키고, 2차적으로 피함으로써의 ‘~으로써’ 표현을 ‘~하여’로 순화시킨다.

(2) ~에, ~에 있어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게 않게 사용된 예는 일본어 조사 ‘に’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로 보이는데,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 ‘~에’를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조사로 고쳐 쓴다.

1) ~에

<현 행>

제 7 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순화안>

제 7 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 ~에 있어(서)

<현 행>

제 2 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순화안>

제 2 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조사 ‘의’의 남용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꾼다.

<현 행>

제 2 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화안>

제 2 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 행>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순화안>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생존하다’는 ‘살아있다’로 순화하고, ‘경과하다’는 ‘지나다’로 순화한다. ‘의’는 적절하게 바꾼다.

<현 행>

제35조 ②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순화안>

제35조 ② 4.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p><현 행> 제105조 ③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u>형의 선고를 받고</u> 그 집행이 <u>종료되거나</u>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u>경과되지</u> 아니한 자 또는 <u>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u>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순화안> 제105조 ③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u>형을 선고받고</u> 그 집행이 <u> 끝나거나</u>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u> 지나지</u> 아니한 자 또는 <u>집행유예를 선고받고</u>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

‘형의 선고를 받고’에서 남용된 ‘의’는 적절하게 순화하고 ‘선고를 받고’는 ‘선고받고’로 순화한다.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동일한 취지에서 순화한다.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주어와 부사구에서 ‘~은(는) ~은(는)’ 식의 중복은 어색하므로, 의미에 변화가 없으면 ‘~은(는) ~하면’과 같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다.

<p><현 행> 제25조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순화안> 제25조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u>필요하다고 인정되면</u>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

주어가 ‘~은’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목적어 ‘이름’을 반복하여 쓸 필요가 없다.

<현 행>
제40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화안>
제40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나 괄호에서 예외를 표현할 때 쓰는 ‘~을/를 제외한다’도 비교, 대조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조사 ‘은/는’을 써서 ‘~은/는 제외한다’로 고쳐 쓴다.

<현 행>
제54조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순화안>
제54조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5)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현 행>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순화안>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내린다(부과한다).

<p><현 행>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u>준하는</u>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u>목적상 필요한</u>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u>게재할 수</u> 있다.</p> <p><순화안>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따르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u>목적</u>을 <u>위해 필요한</u>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u>실을 수</u> 있다.</p>

(6)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표현인 ‘그렇지 않다’로 바꾼다. ‘그렇지 않다’의 의미는 대부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간결성을 위해 풀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풀어 쓰는 경우 한 법령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를 모두 풀어 쓰도록 한다.

<p><현 행> 제12조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순화안> 제12조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

(7) ‘때’와 ‘경우’의 표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형 ‘~하는 때, ~되는 때’를 사용하도록 하고, 문맥에 따라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형 ‘~할 때, ~될 때’나 과거형 ‘~한 때, ~된 때’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때’는 ‘~한 때’와 ‘~하는

때'로 쓰면 자연스럽지 않고 '~하였을 때'와 '~할 때'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시제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 경우'와 '~하는 경우'를 쓰기로 한다.

<p><현 행> 제25조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p> <p><순화안> 제25조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

3. 어문규범의 준수

(1) 띄어쓰기

법령문에 자주 사용되는 고유 명사와 전문용어는 「한글 맞춤법」 기준에 따라 법령문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로 한다.

<p><현 행> 제13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순화안> 제13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p>

(2)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에 이를 ‘설계’, ‘도안’, ‘의장’으로 순화하자는 법제처의 “법령용어 순화기준”과는 대조적으로 특허분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의장’ 대신에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과 정책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실제로 ‘의장’보다는 ‘디자인’이 국민에게 더 친숙한 용어이므로 “법령용어 순화기준”에서 ‘도안’이나 ‘의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제 3 장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정비안 마련

제 1 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개관

I. 수산업 관련 법령의 ‘알법’만들기 현황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수산업 관련 영역에서 기본법 적인 지위에 있는 법률이다. 이와 관련된 수산 어업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다.

법 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시행령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어선법시행규칙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 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보호수면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 3 장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정비안 마련

법 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수산업에 관한수수료규칙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용자에 관한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
		K·S등에 관한규칙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규칙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 관한규칙
		영어조합법인에 관한규칙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
		수산자원보호구역의관리에 관한규칙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 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환경복원등에 관한특별법(국토해양부 공동)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환경복원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	
기르는어업육성법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

법 른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이 법령들은 수산업, 어업, 해양, 어촌 등과 관련되어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수범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영역의 법령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또한 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관련 영역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전문적인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수산업 관련 법령들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 2007년 관계 법령들이 개정된 바 있다. 2007년 개정에서는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한 수정은 없었고, 알기 쉬운 법령 일반 원칙에 따른 일괄 개정이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법률의 한글화가 이루어졌다.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하였다. 둘째,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하였다.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살포(撒布)하는”을 “뿌리는”으로, “기산(起算)”을 “계산하기 시작”으로, “개시(開始)”를 “시작”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다. 셋째,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였다. 넷째,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또한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다섯째,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을 간결화·명확화 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이를 주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서 기존과 개정안의 대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黃海	서해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과반수	50퍼센트
자국내의	자기 나라 안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기산하여	계산하기 시작하여
살포하는	뿌리는
그 末日	그 마지막 날
동종어업	같은 종류의 어업
동순위자 상호간의	같은 순위자 끼리의
주소를 가진 자	주소를 두고 있던 자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어업경영을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이 끝나
어업신고필증	어업신고증명서
수차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상 당해어업의 경영	해당 어업의 경영에 실제로 지배
교부하여야	내주어야
계류	어선을 매어 놓은 조치

당시 일괄 개정은 현행 법률의 용어 중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일본식 한자어, 한글한자 병기가 필요한 용어, 풀어 써야 할 축약어 등을 이러한 공통적인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정비기준이 제시하는 법적 간결성과 명료성 제고, 국민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개정으로 법률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전체가 함께 수정되고 개정되어야 하므로, 당시 일괄 개정에서는 전문 용어의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에 포함된 전문용어는 그대로 존치됨에

따라 법령이해에 한계가 남게 되었다. 특히, 어구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한자식·일본식 명칭이 고착화되어 명칭만으로 어떠한 어구인지 알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컨대 권현망(權現網), 안강망(鮫鱧網), 저인망(底引網), 조망(漕網), 형망(桁網), 선인망(船引網), 승망(杼網), 건강망(建干網) 등은 한자가 병기되어 있었으나 한글만으로 보거나 한자를 보거나 양자의 어느 쪽도 일반인이 및 예비 어업인들 및 예비 정책집행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수산관계 전문 법령 용어들은 법령 용어이기 전에 어업인들이 실제 어업현장에서 약 100여년간 큰 불편 없이 사용하여 왔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용어의 수정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II. 수산관계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수산 관계 법령 용어들이 어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 하더라도, 일반인 혹은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인 학생들이나 어업에 종사하고자 시도하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인식된다면, 법령 용어로서나 전문 용어로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법전문가나 관계 정책 부처 담당자들이 어려워 할 정도라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도 쉽지가 않다.

또한 수산 관계 법령 용어들은 다른 법령 영역에 비하여 한자 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 어업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일본식 용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용어를 어렵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적인 수산 관련 용어들은 외국어 사용이 혼재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지식 사회와 문화가 일반인들도 전문 영역에 참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지식의 전파가 대중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령 용어의 정비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수산관계 용어의 경우 어업인 및 어업관계 전문가들이 주 수범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느끼는 법령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어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현재 수산 및 어업 관련 업에 종사하거나 정책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어

개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의 익숙함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에는 수산·어업에 관련이 있는 주요 수범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재에는 수산·어업에 관련이 없는 경우지만 장래세대에 수산·어업 관련 직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미래 수산·어업인과 수산·어업 정책을 담당하게 될 미래의 정책담당자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촌인구를 위해서 전문용어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Ⅲ. 수산관계 법령용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의 전환 방법

1. 고칠 필요가 있는 용어 선별

수산관계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전환하여 개선·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칠 필요성이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야 한다. 이때 용어 선별의 기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

-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 여부
-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일본식 한자어인지 여부
- 용어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고 분명한지 판단
- 고도의 전문가 이외에 이해할 수 없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우선 고칠 필요가 있는 용어로 선별

먼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 여부를 선별기준으로 삼는 것은 수범자인 전체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입법 및 입법정책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수산관계 법령이 어업인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일반 국민들이 관련 법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용어가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일본식 한자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용어를 대체되는 용어로 새롭게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순화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현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

하거나 혹은 대체 용어의 개발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용어의 어원이나 사용연혁 및 사전적 의미와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되는 의미 등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한다. 또한 용어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고 분명한지의 기준에 따라 고칠 필요성이 있는 용어인지를 판단한다. 용어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현안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용어의 의미가 그 자체로 명확성을 갖지 못하고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산관계 법령을 법제 전문가 및 수산 정책 실무자 등 법 관련 고도의 전문가 이외에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 용어로 선별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는 당연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가장 손쉽고 이해도 빠리된다고 생각할 것이나, 법령은 이들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소수의 전문가집단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은 이미 생명력을 잃고 의미를 퇴색해가는 법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를 넘어 전체 국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법령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 강한 법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2. 고칠 수 있는 용어 선별

위의 용어 선별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는 용어를 선별한 후 다음으로 고칠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는 2차 선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칠 필요성이 제기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개선·정비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나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된 용어를 모두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고칠 필요가 있는 용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 고칠 수 있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서 용어 선별을 하여야 한다. 먼저 대체 가능한 용어 또는 함께 사용되고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찾아 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어, 일본어, 영어, 북한 용어 등을 비교하여 적정한 용어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산 및

어업 관련 학자, 국어학자, 법률가 등에게 고칠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해 달라고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산업에 관련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어구어법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비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하는 용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산관계 법령의 특성상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및 국립국어원 자료를 확인하여 정비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3. 일반인과 어업인의 이해 고려하기

이와 같이 개선·정비 및 순화하여야 하는 용어들이 선정되면 그 용어를 대상으로하여 개선·정비안 및 순화용어를 마련한다. 이때에 여러가지 가능한 용어 가운데 일반인과 수산, 어업인의 이해를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용어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용어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산·어업인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에 대한 익숙함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기 사용하던 용어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용어정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일반인에 대한 배려와 어업인의 이해를 고려하여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난해한 용어를 평이한 용어 또는 현대적 용어로 개선

대체하려는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가 평이한지 아니면 현대적인지 판단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에 같은 범주에 있는 용어들은 동시에 모두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종전의 용어를 사용하되 대체 가능한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새로 개선하는 용어에 대한 어업현장, 어업실무에서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개선·정비안이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법령에서의 표현 방식 결정

위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는 법령에서의 표현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기술적 판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법령 용어의 일시적 교체는 오히려 현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업계 종사자)들의 현실과 괴리될 수 있어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 용어의 개정은 국회에서의 법령 개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용어를 실제 사용하는 현장에서 보급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현실 속에 살아 있는 용어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용어의 개정은 일정한 시기 동안 본래 용어와 대체 용어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즉 입법기술상 권장되지는 않지만, 설명붙이기 또는 용어를 병행 사용하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정비대상 법령 및 선정기준

1. 정비대상 법령의 범위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허가 규칙, 어업면허 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법령 전문용어 200개를 선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기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 수산관계 법령용어의 기준이 되는 법령인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어업허가 규칙, 어업면허 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개선·정비안을 마련한다.

2. 개선 용어선정의 기준

개선되어야 할 용어의 선정기준은 크게 ① 일반인이 어려움을 느끼는가, ② 법전문가가 어려움을 느끼는가, ③ 어업인 및 어업관계 전문가가 어려움을 느끼는가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개선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정비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수산관계 법령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시 유의점

수산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는 수산관계 법령의 특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즉 수산관계 법령은 타 법령에 비하여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높고, 일본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도 높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관계 전문용어의 경우 우리말, 한자, 일본어 및 외국어가 하나의 용어에 혼재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수산관계 전문용어의 경우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어구·어법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용어의 사용이 많다는 점에서도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수산관계 법령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정비안 마련시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는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어구어법 정비의 기준

수산관계 법령을 읽고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어구·어법에 관한 전문용어이다. 현재 수산관계 법령에서의 어구·어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물의 모양 및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용어, 잡는 어종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용어, 잡는 어종과 낚는 방법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용어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구·어법 관련 용어들의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구의 모양, 어법의 형태, 포획대상 어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물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개선·정비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선·정비안의 가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결과 그물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마련한 개선안이 어구·어법에 대한 가장 명확한 용어표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용어가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의 용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우리말로 순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성을 위해서 변경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순화화 관련하여 어구·어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망(網)은 우리말인 그물로 통일하여 순화하는 것으로 정비기준을 마련하였다.

V. 향후 개선안의 입법정책적 반영 방안

수산관계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법안 개정시 반영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가능하다. 먼저 법령 개정시에 마련된 개선안을 바로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법령 개정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산관계 전문용어와 개선안을 같이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산관계 또한 현행과 같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한자어 또는 영어 등 원어를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하여 주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풀어 넣어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래에서 용어정비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선안 즉시 반영

법령 개정시에 연구를 통해 마련된 수산관계 전문용어 개선안을 바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개선안을 바로 반영하는 방안은 개선안이 법령에 반영되므로, 법령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사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 및 실 수범자(어민 등) 및 국민들이 개선 용어를 사용하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데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현행 수산관계 전문용어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정책집행 및 어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실 수범자인 어민 등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개선안의 연착륙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 다만 개선안을 즉시 반영하여도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시로 변경하여도 혼란이 없는 용어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입법정책적 사안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제 수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시) 저인망어업(底引網漁業)→저층끌그물어업

2. 현행 수산관계 전문용어와 개선안 병기

현행 수산관계 전문용어와 개선안을 병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두 가지로 시행가능한데 먼저 개선안을 적고 괄호안에 현행용어를 병기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 현행용어를 먼저 적고 괄호안에 개선안을 병기하는 방안이 있다. 양자 모두 수산관계 전문용어와 개선안을 병기하여 줌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정비의 결과물이 법령과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개선안을 먼저 적고 현행용어를 병기하는 것과 현행용어를 먼저 적고 개선안을 병기하는 것은 어떤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혼란을 줄이면서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용어를 먼저 적는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정책 집행시 개선안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개선안을 먼저 적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강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용어를 병기하는 방식은 일정기간(예: 10년)이 경과하여 현장 및 정책집행의 혼선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안만 적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예: 10년)이 경과한 후 수범자 및 어업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용어 정착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용어병기에서 개선안 단독 표기로의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를 통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근해자망어업

- 1)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1) 개선안(현행용어) 병기

개선안을 먼저 적어주고 괄호 안에 현행 수산관계 전문용어를 병기해주는 방안이다.

예시) 저인망어업(底引網漁業)→저층끌그물어업(저인망어업)

(2) 현행 용어(개선안) 병기

현행 수산관계 전문용어를 먼저 적어주고 괄호 안에 개선안을 병기해주는 방안이다.

예시) 저인망어업(底引網漁業)→저인망어업(저층끌그물어업)

3. 정의조항으로 설명하는 방식

정의조항을 두어 설명하면서 개선안을 병기하여 줌으로써 개선안이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용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개선안으로의 직접적인 전환이 가져오는 용어전환에 대한 반발을 줄이면서 용어를 법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별표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제1항 관련)

I. 일반사항

1.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도 이에 포함된다.
3.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
4.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5. “조업모식도”란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6. “뚝”이란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부자”(浮子)라고도 한다.
7. “발돌”이란 물속에서 어구를 가라앉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침자”(沈子)라고도 한다.
8. “투망”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며, 낚시나 줄을 투망할 경우에는 “투승”이라고 말한다.
9. “예망”(曳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10. “양망”(揚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며, 낚시나 줄을 양망할 경우에는 “양승”이라고 말한다.
11.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

II. 생략

4. 설명병기 방안

특히 대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수산관계 법령에서만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령 전체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설명을 병기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한자어인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주는 방식과, 외래어의 경우 괄호안에 원어를 병기하여 주는 방식 및 한글로 병기하여 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정의의 형태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식이 있다.

사례 1. 한자어 병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2. 외래어 원어병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가.차. 생략
 - 카. 기압조절실(chamber)
 - 타. 이하 생략

사례 3. 외래어 한글병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 1~4. 생략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이하 생략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은 전문용어를 적고 괄호안에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과 법령의 말미 또는 부록으로 동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의 설명을 나열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현행 법령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용어를 적은 후 괄호 안에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은 수산업법 제6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1. 수산업법 제65조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사례 2. 항공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비행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제9조의3 각 호의 비행장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滯空旋回圈: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이하 생략.

다음으로 법령의 말미 또는 부록으로 동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의 설명을 나열하여 주는 방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사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자체가 어구·어법 관련 용어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어려운 용어를 하단에 *를 사용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별표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제1항 관련)

I. 생략

II.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날개그물: 자루그물 입구 양쪽 옆판 쪽에 붙어있는 그물

* 자루그물: 밀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부분을 “끝자루”라 함

* 전개판(장치): 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판(장치)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과 같다.

1)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2)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후릿줄: 그물과 끌줄 사이를 잇는 줄

5. 소 결

수산관계 법령의 수산관련 전문용어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개선안을 먼저 적고 현행용어를 병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의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 및 정책 집행의 혼선을 줄이면서 동시에 개선안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체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대체하여도 무방한 용어의 경우에는 개선안을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어업현장에서의 반대 및 반발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써 “수산관계용어해설집”의 재정비 및 법령개선시 최소한의 수준에서 용어정비에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다수의 용어를 한꺼번에 변경할 경우 입법자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어업인 등 실수범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산관계 업종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세대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정책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현장의 괴리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 결과 요약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를 위하여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어업허가 규칙, 어업면허 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각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 전문용어를 약 220여개 선정하여 선정된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정비결과 145개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개선·정비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39개 용어에 대해서는 수범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명을 병기하거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41개 용어는 어려운 전문용어로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나 순우리말로 사용하고 있어서 정비하지 않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전문용어가 없어 현행용어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용어 개선·정비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145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법령 개정시 반영해야 할 용어와 개선필요성이 있는 용어 그리고 타 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수산관계 법령용어이기는 하지만 바로 정비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1 및 1-1-1, 1-1-2, 1-1-3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부록 1-1-1.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법령 개정시 반영해야 할 용어 69개를 제시하였는데 수산관계 전문용어 중에서 어구·어법에 관한 용어들이다. 일반인 및 장래의 수산관계 종사예정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어구·어법 관련 용어들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시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가장 큰 용어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구·어법 관련 용어들은 기존에 어업인들 및 수산관계 전문가집단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용어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용어의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시 말하자면 69개 용어를 대상으로 하는 제2차적 선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향후 수산관계 법령 개정시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I. 수산업법

1. 호료(糊料)

- 출처 : 수산업법 제2조제4호
- 해설 :
 -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축을 좋게 하는 물질. 천연 호료와 합성 호료가 있으며, 식품에 넣으면 점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지는 물질
 - 호료작물(paste crop, 糊料作物) : 풀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특용작물의 일종. 구약감자, 닥풀 등.

* 국립국어원의 순화자료집에 의하면 호료(糊料)의 순화어로 ‘풀’을 제시하고 있음

- 개선안 : **접착원료/폴/현행 유지**(설명을 붙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이유 :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지만, 식품업계 등의 원료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며,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개선방안으로 검토함. 다만 현행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설명을 붙여주는 방안을 고려함.

2.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 출처 : 수산업법 제2조제18호
- 해설 : 밀물 경계선 고조선 공유수면 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의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 고조선(高潮線, high-water line)이라고도 하며, 공유수면에 포함되는 바닷가와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 국립국어원 순화자료집에 의하면 만조는 ‘밀물’로, 만수위는 ‘역찬물 높이’로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음

- 개선안 : 고조선/최고수위선/현행유지
- 이유 : 일반인에게 어려운 용어이지만, 선박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용어로 쓰임이 명확하다는 점과 한자어의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의미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3.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 해설 : · 어업의 형태 : 어구는 크게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길게 뻗힌 길그물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우리(통그물)로 어군을 유도하여 잡는 어업
- 사전적 설명 : 자루 모양의 그물에 테와 깔때기 장치를 한 어구를 어도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들어가는 쉬우나 되돌아 나오기 어렵도록 장치한 어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 어법이며 단번에 대량 어획하는 데 쓰임

- 개선안 : **자릿그물어업/고정그물어업/고정식어업/고정망어업**

· 이유 : ‘망(網)’은 특별한 쓰임을 제외하고는 ‘그물’로 순화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그물의 모양을 고려할 때 정치망어업은 자릿그물을 활용하는 어업이므로 자릿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함

· ‘정치(定置)’는 한자어로 ‘세워두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정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여도 크게 의미의 차이가 없지만, 일반 국민의 이해도는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정치망’은 ‘고정망’ 또는 ‘고정그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치망어업은 고정망어업, 고정그물어업, 고정식어업 중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고정그물어업 등으로 순화하는 경우 동 용어의 포괄성에 대하여 타 용어와 교집합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립국어원 순화자료집은 정치망을 ‘자리 그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자리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4. 통 발

- 출처 : 수산업법 제29조제2항제3호

- 해설 :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데 쓰는 어구.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 플라스틱, 아크릴 등으로 통처럼 엮어 만들어 사용하며, 대게, 붕장어 등을 잡는데 사용함.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통발은 오래 전부터 어업과 관련된 기구로서 순우리말이며, 일반인의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음은 물론 어업종사자 등 전문가그룹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5. 연승(long line, 延繩)

- 출처 : 수산업법 제29조제2항제3호

- 해설 : ·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어업이다. 주요 대상어종은 장어, 복어, 도미, 불락, 가자미 등이다.
 - 주낙(long line) :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열레에 감아 물살을 따라서 감았다 풀었다 하는 낚시어구. 외줄낚기[一本釣]는 1개의 낚시를 드리워서 한 마리씩을 차례로 낚아올리는 어구. 어법인 데 비하여 주낙은 여러 개의 낚시를 거의 동시에 드리워서 낚아올리는 어구. 어법이다.
 - 땅주낙(저연승), 뜯주낙(부연승), 선주낙(입연승)
- 개선안 : ‘연승(延繩)’은 한자어이며, 주낙은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주낙’으로 통일함.
- 이유 : ‘주낙’은 순우리말이라는 점과 일반적으로 ‘연승’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낙’이 보다 많이 쓰이고 있으며, 두 개의 용어를 함께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6. 구획어업(區劃漁業)

- 출처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 해설 :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을 의미함.
- 개선안 : 구역어업/현행유지
- 이유 : 한자어로 순화의 대상이기는 하나 적당한 대체용어가 없으며,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므로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함

7. 유어장(遊漁場)

- 출처 :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 해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
- 개선안 : **체험관광어장**/현행유지
 - 이유 : 법안에서 용어의 의미를 지정하여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대체할 용어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일반적인 이해와 활용의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인 등 관련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유어장 설치의 목적에 맞게 체험관광어장으로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 수산업법 시행령

1. 낙망(落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 해설 : · 정치망의 일종으로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그물은 다시 헛통과 원통으로 구분됨. 헛통과 원통 사이에는 비탈그물(등망)이 있어 헛통에 들어간 고기가 비탈그물을 타고 원통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없게 되어 있고 조업시 원통그물만 들어 올려 어획하는 그물류.
- 개선안 : **비탈 자릿그물**/함정망/함정그물
 - 이유 : ‘낙망’은 그물에 고기를 떨어뜨려서 잡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어이지만, 용어만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파악이 가능한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어구의 모양을 따서 비탈 자릿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함. 또한 ‘속여서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함정망’ 또는 ‘함정그물’로 순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어의 포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승망(fyke net, 枴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 해설 :
 - 긴자루 모양의 어망
 - 길그물, 헛통, 자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헛통에 머무르던 어군을 다시 자루그물로 유도하여 어획하는 것이므로, 어법으로 보아 유도함정과 미입함정을 함께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도 함정에 속하는 그물류.
- 개선안 : **고리테 자릿그물/자루망/자루그물**
- 이유 : ‘승망’은 한자어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물의 모양을 중심으로 고리테 자릿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자루망’ 또는 ‘자루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어의 포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죽방렴(bamboo weirs, 竹防簾)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 해설 :
 -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대나무 어사리, 방전)
 - 남해안의 협수로에서 멸치를 잡는 데 쓰이는 어법으로 통말목을 해저에 박아서 V자 모양으로 벌어지게 날개그물을 설치하고, V자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자루그물을 설치하여 어획하는 정지성 어구



- 개선안 : **대나무밭 자릿그물/대나무밭어업/현행유지로 순화**
- 이유 : 원시어업의 원형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서 대나무를 밭로서 널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통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나무밭’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판단됨. ‘죽방렴’의 한자식 풀이 역시 ‘대나무 방어막을 친 밭’이라는 점에서 학위논문 등에서 한자어를 학문적 용어로 쓰면서 ‘죽방렴’이 전문용어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판단되지만, 적절한 용어의 선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나무밭 자릿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4. 수하식(hanging culture, 垂下式)양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해설 : 양식 대상 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 바닥 양성이나 다른 양성법으로서 양성하는 것보다 생장이 좋고,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이 방법으로 양성하는 것은 굴, 진주조개, 진주 담치, 가리비, 피조개, 멍게, 미역, 다시마 등이 있다.
- 개선안 : **수중매달기/현행 유지**
- 이유 : ‘수하식’은 양식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다만, 수하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수중매달기’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순화안을 마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특히, 다른 양식 방식과 관련해서 ‘가두리’, ‘바닥식’과 비교할 때는 ‘매달기’라는 식으로 순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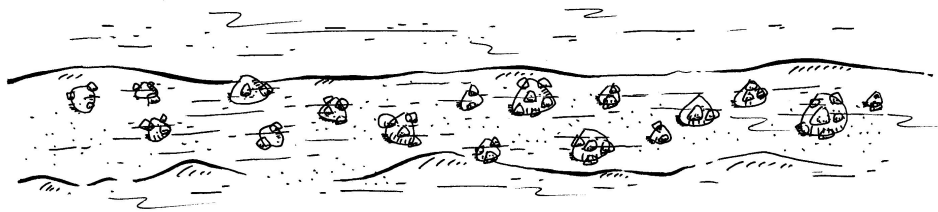
5. 뜸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조
- 해설 : 물에 띄워서 그물, 낚시 따위의 어구를 위쪽으로 지탱하는 데에 쓰는 물건.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
- 개선안 : **현행 유지/설명병기**

- 이유 : 적절한 용어의 쓰임이며, 순우리말임. “뜸(어구 지탱을 위한 물건)”으로 설명병기

6. 바닥식양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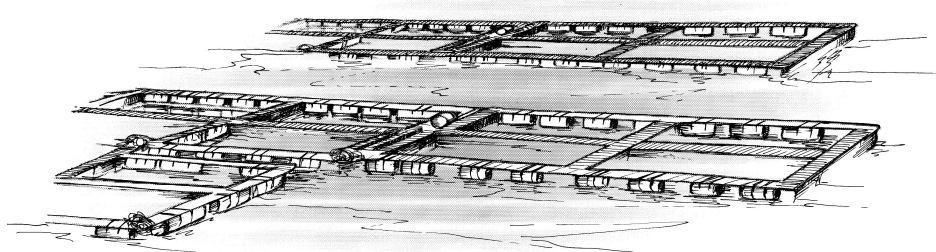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조
- 해설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적절한 용어의 쓰임이며, 이해의 편의를 주는 용어이므로 현행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함.

7. 가두리양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조
- 해설 :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또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부자에 의해 수면에 떠 있는 4각의 목재 구조물의 둘레를 그물로 막아 해수가 자유로이 드나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시설한 우리에서 양식하는 방법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가두리’는 순 우리말로 적절한 용어의 쓰임이며, 이해의 편의를 주는 용어임.

8. 채롱(-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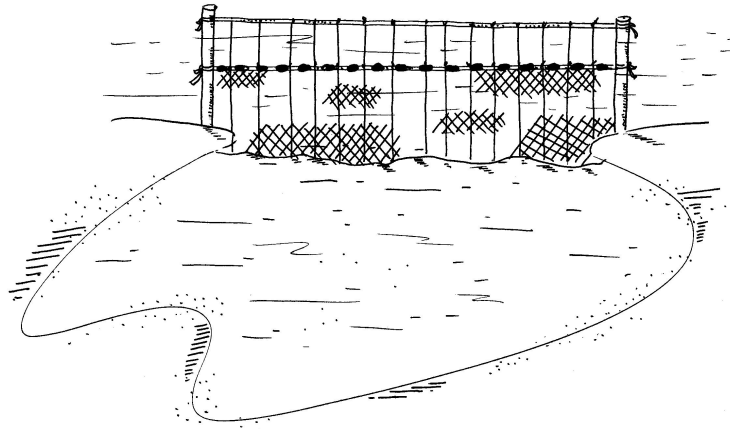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 해설 :
 -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틀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전복이나 가리비 등 치패를 넣어 성장시키는 양식에 사용되는 통
 - 채롱은 망목 2~3cm되는 그물로써 편평하게 여러 개의 주머니 꼴과 같이 만든 다음, 각주머니마다 줍실로서 입구를 여닫을 수 있게 하여 각 주머니에다 대상이 되는 수산물을 수용하여 수하 양식하는 도구



- 개선안 : 그물 망태기/현행유지
- 이유 : ‘채롱’은 한자어로서 전문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어려운 한자어라는 점에서 ‘그물 망태기’ 등의 의미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9.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 해설 :
 - 축제(築堤, 둑을 쌓는 일)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자연의 해면에 제방을 쌓아서 일정한 수면을 조성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수를 교환하여 양식하는 방법



- 개선안 : ‘제방식’양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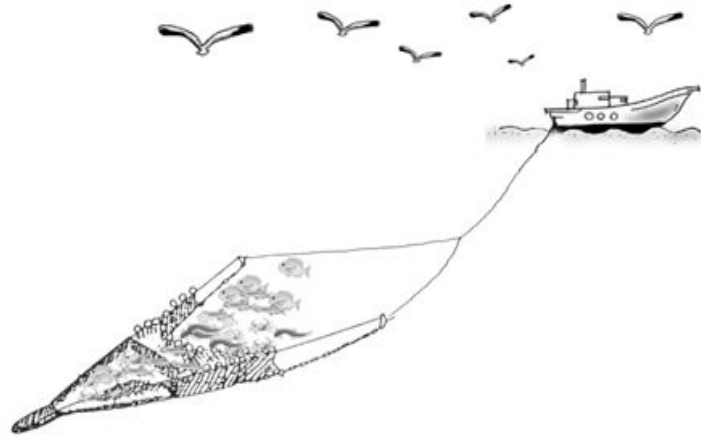
- 이유 : ‘축제’라는 함축어를 쓰기보다는 ‘제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제방식양식어업으로 순화의견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 저인망(底引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 해설 : 바다 밑에 서식하는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 끌그물[曳網]류에 속하는 그물어구
- 개선안 : 저층끌그물/저층끌망/현행유지
- 이유 : 고등학교 어업교과서에서 저인망을 끌그물류로서 저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함

11. 저인망어업(底引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 해설 : 동력선으로 바다 밑에 있는 어류 등을 어획하기 위해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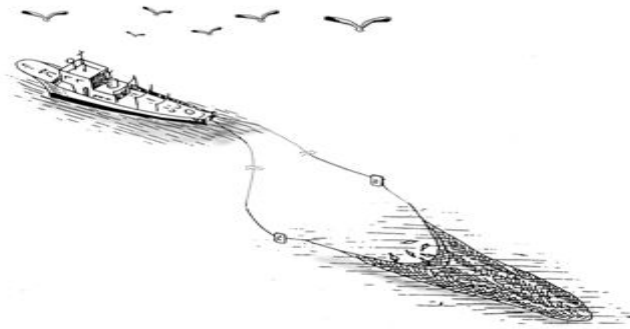
- 개선안 : 저층끌그물어업/저층끌망어업
- 이유 :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저인망어업은 끌그물 어구어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바다 바닥면을 끌어가는 그물어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므로 저층끌그물어업 또는 저층끌망어업으로 개선함

12.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 해설 : 긴 자루형의 그물양측에 날개 그물을 달아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부자를 하부에는 밧줄을 부착하고 날개그물 앞쪽에는 후릿줄을 연결하여 동력선 1척이 후릿줄을 예인해서 해저수산동물을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 어획하는 어업
- 개선안 : 외끌이대형후릿그물어업/외끌이대형저층끌그물어업/외끌이대형저층끌망어업
- 이유 : 저인망어업을 저층끌그물어업 또는 저층끌망어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나머지 용어들은 현행대로 유지함. 다만, 수산전문가 검토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끌그물어법이 아닌 후릿그물(선인망)어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개선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제시함.

13. 트롤어업(trawls 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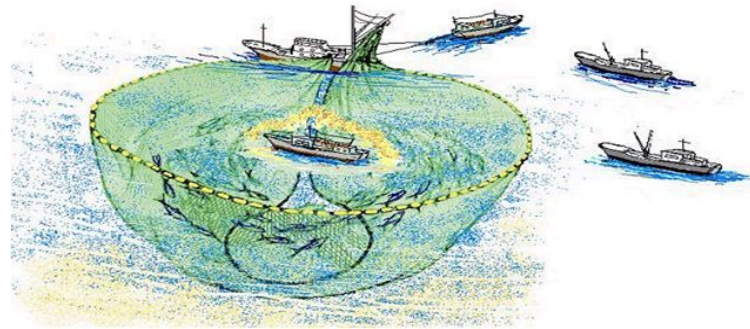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6호
- 해설 : · 동력선으로 전개관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이다.
 - * 저인망어업과 같은 말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음



- 개선안 : **현행유지**/저인망어업과의 차이점 검토 필요
 - 이유 : 저인망 어업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수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트롤어업의 경우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용어이므로 순화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4. 선망어업(旋網漁業, coastal surrounding 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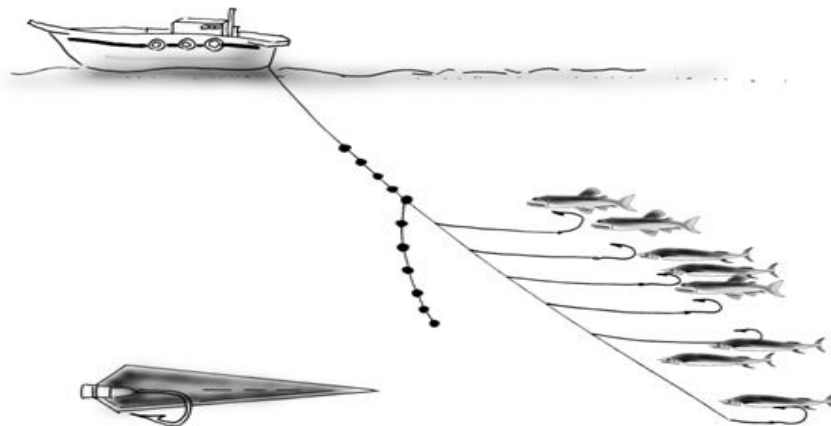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 군집하여 회유하는 어군의 습성을 이용하여 긴그물로 고기를 둘러싸서 어획하는 조업방법에서 어구의 어원이 유래함.
 -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fish shoal)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에 차차 그 범위를 좁혀서 떠 올리는 어법을 두릿그물(선망)어법이라 함. 두릿그물 어법은 그물의 구조에 따라 유낭망류와 무낭망류로 구분되며, 그물배의 수에 따라 쌍두리와 외두리로 나누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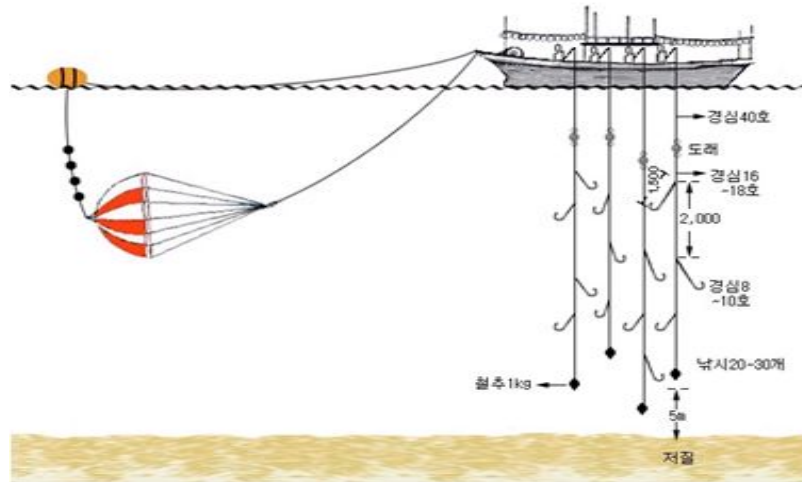


- 개선안 : 두릿그물어업/현행유지
- 이유 : 고등학교 어업 교과서에서의 설명을 차용하여 두릿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 국립국어원 순화자료집에도 선망의 순화어로 ‘두릿그물’을 제시하고 있음

15. 채낚기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늘이 없는 낚시 여러 개를 달아 맨 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어군탐지기로 어군의 유연층을 확인한 후, 속임낚시를 단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예인하면서 낚시줄에 미치는 장력을 촉감으로 확인하고 포획여부를 판단하여 양승하는 어법을 채낚기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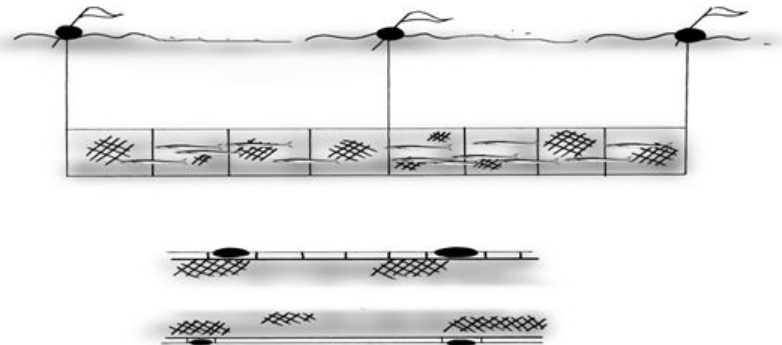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채어 낚는 어법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채낚기는 우리말이며, 용어가 어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순화 및 정비의 필요성이 없음

16. 자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인 자망을 이용한 어업, 대상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 개선안 : **걸그물어업/고정걸이그물어업/현행유지**

- 이유 : 걸어구류의 일종인 고정걸이그물류(자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어업이므로 걸그물어업 또는 고정걸이그물어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 * 국립국어원의 순화자료집에서 ‘자망’의 순화어로 ‘걸그물’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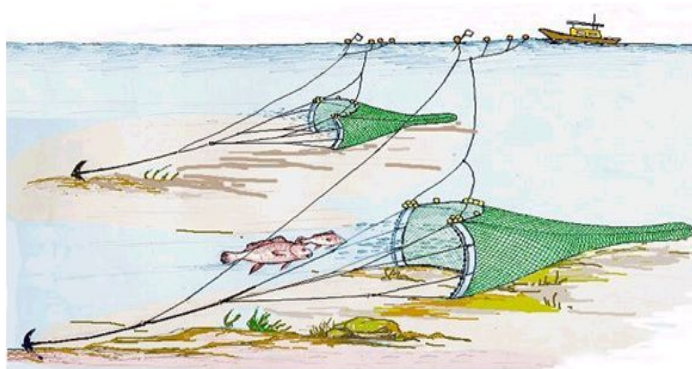
17. 유자망(流刺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 긴 대모양의 그물 상부에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부착하여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걸어구류의 어업.
 - 동 어업은 어구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느냐, 고정하지 않느냐에 하는 점과 설치 수심에 따라 크게 고정걸그물류(자망), 흘림걸그물류(유자망), 두리걸그물류(선자망), 그리고 깔걸그물류로 나눌 수 있음
- 개선안 : **흘림걸그물/현행유지**
- 이유 : 걸어구류의 일종인 흘림걸그물(유자망)을 사용하는 어구어법이므로 흘림걸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 국립국어원의 순화자료집에서 ‘유자망’의 순화어로 ‘흘림걸그물’을 제시하고 있음

18. 안강망어업(鮫鰈網漁業, Stow net(영), ankoami(일))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 안강(鮫鰈)은 아귀과의 바다 물고기의 명칭임
 -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조류에 의해 어군이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 안강망은 우리나라 재래식 어망인 중선망(中船網)과 어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보급될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를 ‘일중선(日中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원추형의 길다란 낭망(囊網)을 사용하는 점이 중선망과 같으나 중선망은 어망을 어선에 달고 다니는 데 반하여 안강망은 어선이 어장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 어망을 해저에 설치한다.
 - 이것은 처음에 서해안의 조기어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어망은 우리나라 재래식 어망에 비하여 능률적이었으므로, 우리나라 어민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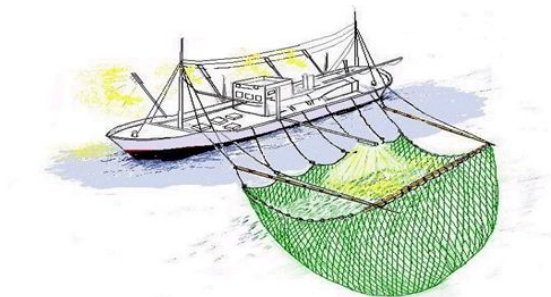
- 하나의 닻을 내려 고정하고 자루그물을 이용하는 어업.



- 개선안 : 한닻자루그물어업/한닻고정자루그물어업/하나닻 자루그물어업
- 이유 : 재래식 어망인 중선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선망어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함

19. 봉수망어업(捧受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 사각형 그물의 한 모서리에 뜬과 테의 역할을 겸하는 뜬대를 붙여 수면에 지지하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발돌[沈子]을 달아 가라앉혔다가 어군(魚群)이 그물 위에 모이면 발돌 부분에 연결된 뜬움줄을 당김으로써 발돌부분을 들어올려서 잡는 어구. 어법을 이용한 어업.
 - 쾡치와 같이 불빛에 잘 따르는 어군을 어획하는 어구로 그물의 모양은 가운데가 오목한 보자기와 같으며, 집어등이 있는 현에 집어가 되면 배를 멈추고 투망현이 조류아래로 가도록 하여 그물을 완전히 전개시키고 유도등을 켜고 동시에 집어등을 꺼서 어군을 그물위로 유도하는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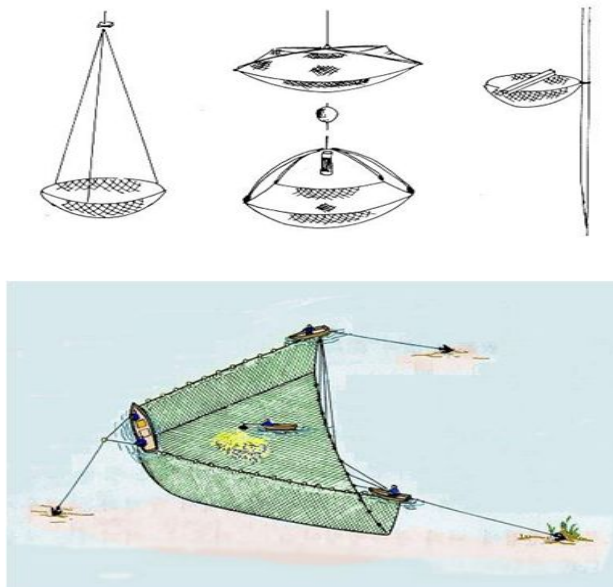
- 개선안 : 채들그물어업/꽂치어업/꽂치잡이어업/현행유지
- 이유 : 봉수망어업으로 주로 잡는 대상물이 꽂치이므로 꽂치어업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함. 다만 어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명칭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물의 모양을 중심으로 하여 채들그물어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20. 초망(抄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채그물’의 북한어. 채그물은 지나가는 물고기를 물 밑으로부터 떠올려 잡는 그물을 말함.
- 개선안 : 채그물/현행유지
- 이유 : 국립국어원의 순화자료집에서 ‘초망’의 순화어로 ‘채그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채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21. 자리돔들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평평한 그물을 펴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한 후 그물을 들어올려서 잡는 방법이며 비교적 작은 어구는 별다른 기구가 없으나 대형화하면 어구를 올리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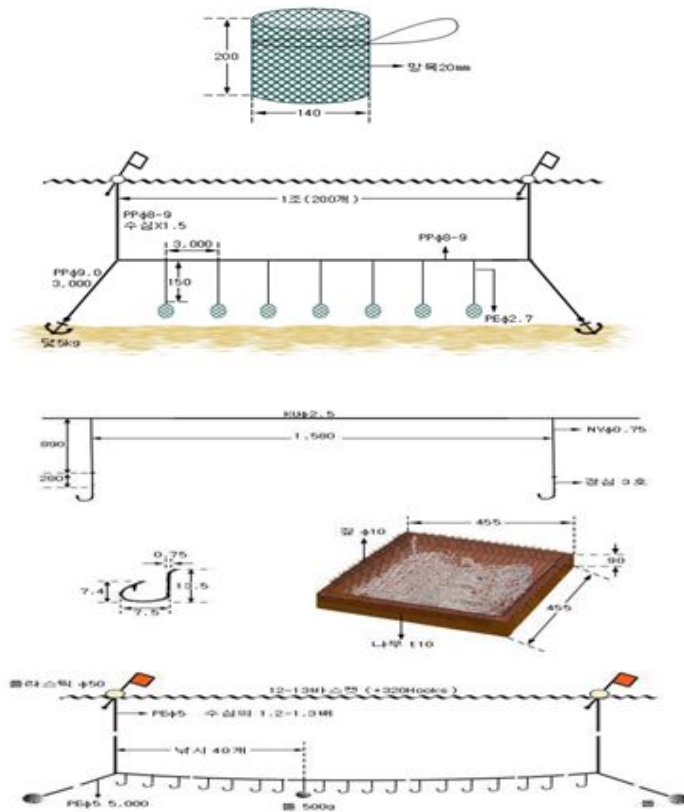
- 개선안 : **자리돔들그물어업/현행유지**
- 이유 : 들망은 들그물로 순화하여 정비함. 망을 그물로 풀어서 사용함으로써 용어정비의 통일성을 확보함.

22. 문어단지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여러 개의 단지를 미끼 없이 일정 간격으로 밧줄에 묶어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 후에 인양하여 단지 속에 들어 있는 문어를 잡는 어구(漁具)를 활용한 어업. 문어가 은신처를 찾아 들어가서 상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단지를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인양하여 단지 속의 문어를 어획한다. 단지를 인양할 때는 일반 어류는 모두 놀라 달아나지만, 문어는 단지가 움직일수록 내부에 더욱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단지의 인양으로 인해 문어가 이탈하지 않음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단지를 활용하여 문어를 잡는 어업으로 명칭에서 쉽게 설명되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여도 무방함

23. 연승어업(延繩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한 가닥의 기다란 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어획 대상생물을 잡는 어업. 바다 밑에 서식하는 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땅주낙』, 바다 중간층에 서식하는 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뜯주낙』, 줄낚기의 원리를 이용한 『선주낙』이 있음. 오징어나 고등어를 잘라 미끼로 사용하며, 주낙을 바닷속에 던져 약 1시간가량 대기하였다가 유압식 양승기로 끌어올림.



- 개선안 : 주낙어업/현행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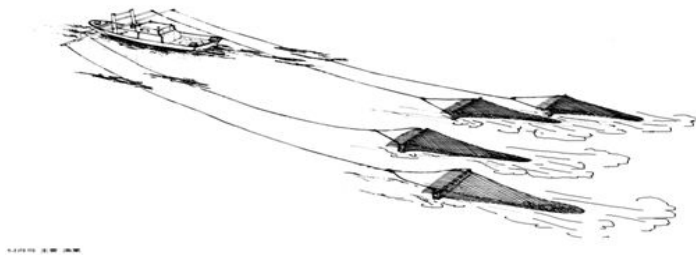
- 이유 : 연승은 한자어이며 주낙은 순우리말이므로 주낙어업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24. 형망어업(桁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퀴나 씨레 같은 것을 부착한 것으로 씨레에 의해 펄이나 모래 속에 묻혀있는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 일반적으로 선박이 직접 형망을 끌어 대상생물을 채취하나, 개량조개를 대상으로 하는 형망의 경우는 어구를 투입한 후 끌줄을 내주고, 어선 1척이 2개의 형망을 준비하여 큰 것은 선수측에, 작은 것은 선미측에 끌줄을 길게 주어 투하한 후 선미측 형망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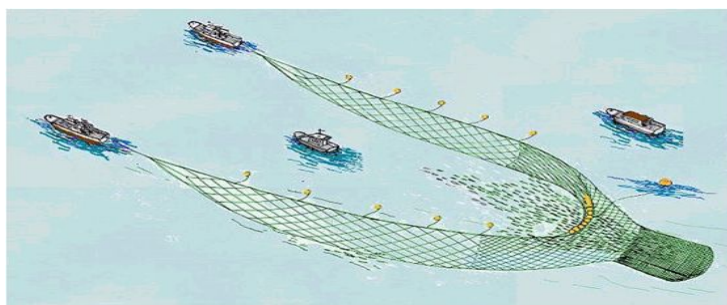
줄은 어선에 설치된 윈치나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형망을 끌어 올린 후 패류를 수거함



- 개선안 : **틀방그물어업/씨레그물어업/쓰레그물어업**
- 이유 : 형망은 갈퀴나 씨레를 부착한 그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형망어업을 씨레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립국어원 순화자료집에서는 형망을 쓰레그물로 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관계 전문가의 자문 결과 쓰레그물은 저인망의 포괄적 표현이며, 씨레는 규모가 작은 것에 적용되는 용어이므로 틀방그물어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함.

25. 기선권현망어업(機船權現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멸치잡이 그물어구인 권현망을 사용하여 멸치 등을 잡는 어업. 권현망은 기본적으로 끌그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1개의 자루와 2개의 날개로 되어 있으며, 날개는 크게 오비기와 수비로 구분됨.



- 개선안 : **쌍끌이(대형)중층끌그물어업/쌍끌이(대형)중층인망어업/멸치잡이어업, 멸치어업, 권현망어업, 표층끌그물어업**
- 이유 :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잡이어업을 주로 하므로 멸치잡이어업 또는 멸치어업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함, 또한 기선이 아닌 배로 권현

망어업을 하지는 아니하므로 권현망이라는 용어를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선은 삭제하고 권현망어업으로 사용하는 것과 권현망어업이 표층에서 사용되는 끌그물류어업에 포함되는 점에 착안하여 표층끌그물어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수산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결과 권현망어업은 표층어업이 아닌 중층어업으로 의견을 제시하므로 개선안은 쌍끌이 중층끌그물어업으로 제시함.

- *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으로 잡는 물고기 중 멸치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약 60-70% 정도)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멸치잡이어업 또는 멸치어업으로 개선할 경우 법 해석상 일정 공백이 생길 수 있음.

26.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 해설 :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개선안 : **현행유지/잠수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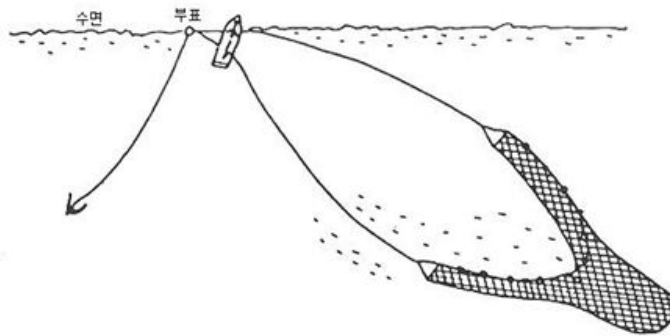
- 이유 : 나잠어업과 구분하여 잠수기어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유지를 하는 방안이 적정함

27. 조망어업(漕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 해설 : 조망을 활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 개선안 : **빔 트롤어업**/현행 유지
- 이유 :
 - ‘조망’은 ‘반두’(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와 동의어. 적절한 대안용어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빔 트롤어업은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용어이므로 빔 트롤어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28. 선인망어업(boat seine, 船引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 해설 : 배후리그물, 사람들이 어선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지인망과 동일하나 사람이 인력으로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과 배에서 당기는 점에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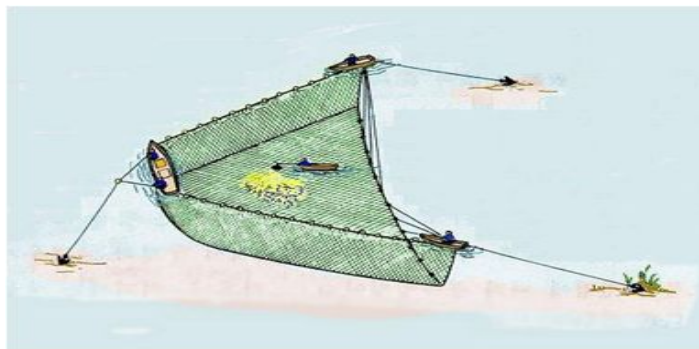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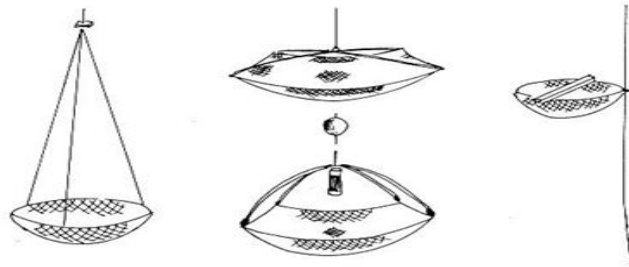


- 개선안 : **배후릿그물어업**/배후리망어업/현행유지
- 이유 : 현재 사용중인 한자어 용어를 우리말인 ‘배후리그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선안과 같이 제시함.

29. 들망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 해설 :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 두고 대상물을 위로 유인하여 들어올려서 잡는 어업을 들그물어업(들망)어업이라 함. 규모가 작은 것은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으며, 모서리에 길이가 같은 3-4가닥의 목줄을 내고, 이 목줄을 한데 묶은 곳에 돋움줄을 달거나 채를 달아서 어구를 들어 올림.



- 개선안 : 들그물어업/들망어업
- 이유 : 고등학교 어업교과서에서 들그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들망어업은 들그물어업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함

30. 손뽕치어업(손뽕치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 해설 : 통상 뽕치잡이는 유자망어업, 정치망어업, 봉수망어업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뽕치어업은 사람의 손을 활용하는 어업임. 뽕치들이 산란기가 되면 바다풀에 모여 산란을 하는데, 이때 뽕치들은 산란을 위해 다른 물체에 몸을 비벼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바다풀을 뽕치의 산란장에 띄워 놓고 열손가락을 펴서 담그고 있다가 뽕치가 오면 순간 딱 잡아 올리는 어업임.

- 해가 뜬 직후 손꽂이잡이를 위해 모여든 어선들은 먼저 바다풀을 산란장에 띄움. 예전에는 구멍이 뚫린 가마니 밑에 바다풀을 달아 사용하거나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바다풀을 묶어서 사용하였지만 요즘은 대나무 4-5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줄로 엮고 그 사이에 바다풀을 달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뜸북” 또는 “몰”이라고 함. 약 2-3시간정도 지나면 꽂이가 모여드는데, 예전의 방법대로 가마니나 줄에 바다풀을 끼워 뜸북을 놓았을 때는 줄을 따라 차례로 이동하면서 바다풀 밑으로 쪽대그물이나 손을 넣어 꽂이를 잡았고, 요즘처럼 대나무를 엮어 뜸북을 띄웠을 경우에는 뜸북을 천천히 어선 쪽으로 당겨 붙인 다음, 손가락을 펴서 꽂이를 집어 올리는 것임.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주로 소형 어선이며,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할 때는 전마선으로 노를 저어 출어하거나, 어장이 연안 먼 거리에서 형성될 때는 전마선 여러 척이 소형동력선에 의해 예인되어 출어함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어업의 형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우리말 용어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1. 패류껍질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 해설 :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개선안 : 현행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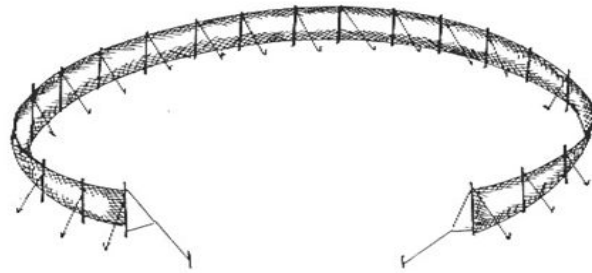
- 이유 : 패류의 껍질을 활용하는 어업의 형태를 용어자체로 연상할 수 있으므로 개선하지 않고 현재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건간망어업(fish fence, 建干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물고기가 밀물 때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썰물 때에 걸리어 잡힘. 어구의 형태가 방패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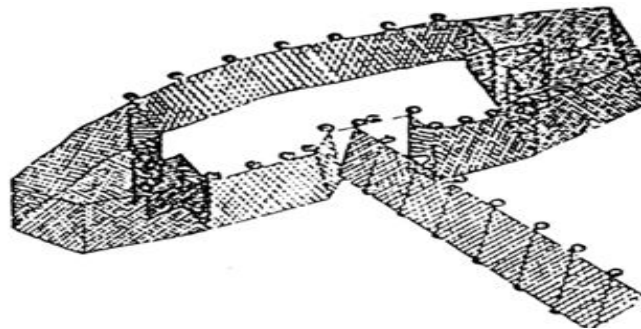
생겨 조수간만시 그물에 고기가 걸리도록 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임. 조류에 정황이 되도록 만조시에 그물을 기둥 끝에 끌어 올려서 고기의 통로를 열어주고 간조시에는 그물을 부설하여 고기의 통로를 막아 어획하는 것으로 하루에 2회 간조시에 어획하며 개막이그물이라고도 함.



- 개선안 : 개막이그물어업/개막이어업
- 이유 : 건망은 순우리말로 개막이그물이라고 하며, TV 등을 통하여 수차례 소개된 바 있으므로 개막이그물어업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함

33. 건망어업(健網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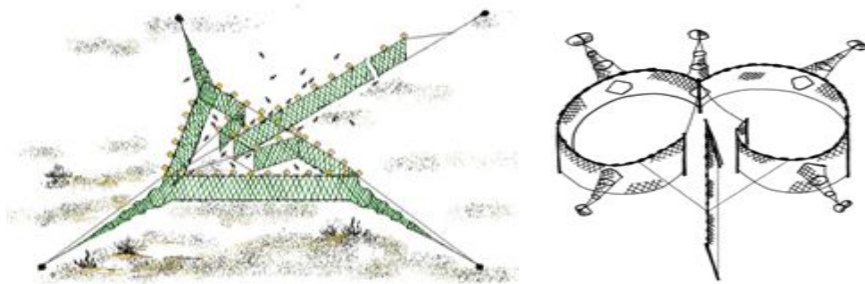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길거물, 헛통, 어포부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어구를 활용하는 어업. 조업방법은 어포부 측에 배를 매달아 놓고 어포부를 한쪽부터 들어올려 어포부의 한쪽으로 고기를 몰아 퍼올려 어획함.
 - * 국어사전에 건망은 ‘정치망’의 잘못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어사전의 개정도 고려할 수 있음.



- 개선안 : 소형 사각자릿그물어업/현행유지
- 이유 : 건망과 정치망의 개념의 상이함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순화용어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수산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하여 소형 사각자릿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34. 승망류어업(柁網類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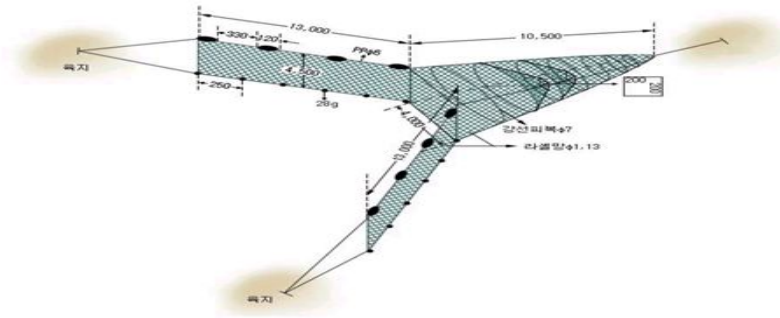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승망을 활용하는 어업. 어구의 구성은 길거물, 헛통, 자루그물 등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루그물 속에 둥근테를 넣어 깔대기모형으로 만들어 고기가 나오지 못하게 함. 과거에는 3각망, 5각망, 7각망, 호망 등을 승망어업으로 분류하였음



- 개선안 : 고리테 자릿그물어업/자루그물류어업
- 이유 : ‘승망’은 한자어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물의 모양을 중심으로 고리테 자릿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자루그물류어업으로 순화할 경우 포괄성을 갖게 되므로 고리테 자릿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산관계 전문가가 제시함.

35. 장망류어업(張網類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어류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루에서 망수가 물 빛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어군을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그물을 올려잡는 전통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어업



- 개선안 : **벌린 자루그물류어업/현행유지**
- 이유 : ‘장망’은 입을 벌린 모양의 넓은 자루그물의 모양을 한자어로 표현한 의미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문용어로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겠지만, 이해의 편의만을 위한 순화를 표현한다면, ‘벌린자루그물’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36. 장망(gape net, 張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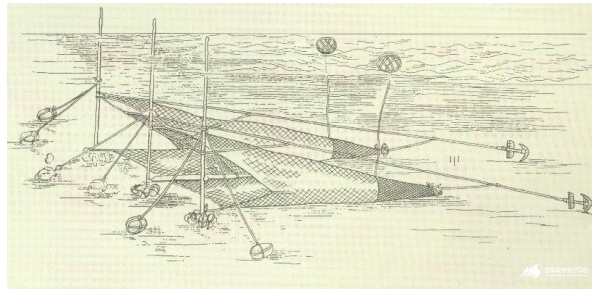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 주목망, 안강망 및 낭장망 등과 같이 강제 함정어구로서, 어구를 고정시키거나 또는 이동시켜 조류의 힘에 의하여 대상물을 강제로 자루에 몰아넣는 것.
 - 어류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망루에서 망수가 물 빛깔과 물 속 그림자의 변화로 어군을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그물을 올려잡는 전통적인 어법

- 개선안 : **날개벌림 고리테자루그물/현행유지**
- 이유 : ‘장망’은 입을 벌린 모양의 넓은 자루그물의 모양을 한자어로 표현한 의미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문용어로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겠지만, 이해의 편의만을 위한 순화를 표현한다면, ‘날개벌림 고리테자루그물’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37. 주목망(stow net on stakes, 柱木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 4각뿔 모양으로 된 자루그물의 좌우 입구를 나무 말뚝으로 고정시켜 조류의 힘에 의해 밀려 들어간 고기를 어획하는 어구이며 서해안에서 조기, 갈치, 새우 등을 잡는 데 사용됨.



- 개선안 : 말뚝 벌림자루그물/나무기둥고정그물/연안 고정식 함정그물/현행 유지
- 이유 : 전통적인 재래식 그물을 칭하는 것으로 적절한 대안 용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다만, 순화할 경우에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무기둥고정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고등학교 어업교과서의 설명에 따라 ‘연안 고정식 함정그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함. 수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물의 모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로 말뚝 벌림자루그물을 순화어로 추천받았으므로 같이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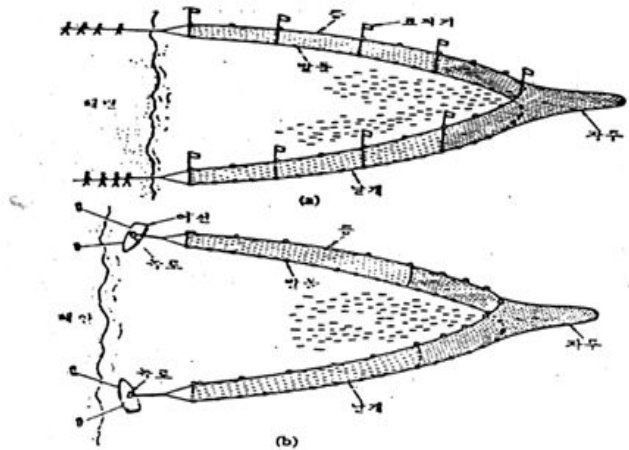
38. 낭장망(Gape net with wingst, 囊長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조류(潮流)가 빠른 곳에 설치하여 대상물을 잡는 어구(漁具). 긴 자루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닻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잡는 정지성(定置性) 어구. 자루 속에는 유도망이 있어 한 번 들어간 고기는 되돌아 나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 그에 따라 그물이 뺏는 방향이 바뀐다. 전라남도 일대에서 사용함.

- 개선안 : **날개벌림 자루그물**/ 긴자루 고정그물/ 이동식 함정그물/현행유지
- 이유 : 낱장망은 어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대체 용어를 발굴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그물의 모양을 설명하는 보다 쉬운 말로 순화한다면 날개벌림 자루그물로 순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9. 지인망어업(beach seine, 地引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 평탄한 해안, 강, 호숫가에서 그물 입구를 육지로 향하여 투망하고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 어획하는 어업으로 멸치, 송어, 농어 등 연안성 어류 대상의 재래식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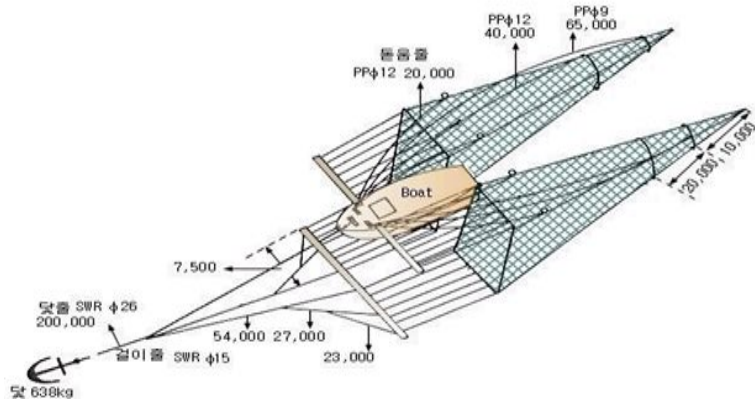


- 개선안 : **갯후리그물어업**/육상끌그물어업/육상끌망어업/현행유지
- 이유 :
 - ‘갯후리’는 순우리말 표현으로서 지인망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임. 이와 더불어 ‘인망’은 ‘끌끄물’ 또는 ‘끌망’으로 개선하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인망어업을 풀어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함. 갯후리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수산관계 전문가의 의견은 지인망어업은 끌그물어법이 아닌 후릿그물어법에 속하므로 갯후리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40. 해선망어업(醢船望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 해선은 젓을 담그는 배 즉 젓배를 말함.(멍텅구리배, 새우잡이배)
 - 젓새우를 잡는 어업(해선망어업)
 - 연안 안강망과 같이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 특히 협수로에서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수해를, 하부에 암해를 부착하여 1개의 닻으로 고정시켜 대상생물을 잡는 어업으로 어기 동안 거의 어장을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배를 고정시켜 놓고 조업하며 선원들도 배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어업. 조업선은 선수·선미가 뚱뚱하고 상자모양으로 생긴 무동력선을 사용하며, 지방에 따라 멍텅구리배 또는 부산안강망이라고 부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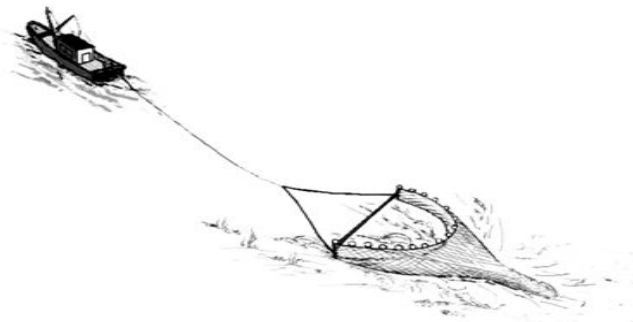


- 개선안 : 배고정 가름 대자루그물어업/하나뚱 가름 대자루그물어업/젓새우잡이어업/현행유지
- 이유 : ‘해선’은 젓배를 의미하며, 해선망어업은 젓새우를 잡는 어업이라는 점에서 ‘젓새우잡이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수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결과 그물의 모양을 풀어주는 용어로 배고정 가름 대자루 그물어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41. 새우조망어업(--翼網漁業)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 새우조망 어업은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 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으로 생이 무리와 보리새우 무리를 어획.
 - 배를 저으면 새우 튀어 오르는 습성을 이용하여 잡는 어구어법. 남해안의 수심 7-8미터에서 새우(중하)를 주대상 어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통 “피망”으로 부르고 있으며, 새우수조망(手操網 : 손으로 어구를 당겨서 조업하는 어법)배가 지나가면 새우가 물위로 튀는 습성을 이용하여 어획하는 방법. 어선의 뒤쪽에 그물(피망)을 매단 채 어장을 향해하다가 새우들이 어선이 이동함에 따라 수면위로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 투망하여 그물을 끌고, 튀기를 멈추면 양망함. 이러한 조업행위를 반복함.



- 개선안 : 새우 빔 트롤어업/현행유지
 - 이유 : ‘조망’은 ‘반두’(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와 동의어. 적절한 대안용어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개선한다면 조망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빔 트롤로 바꾸어 새우 빔 트롤어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42. 각망(角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 해설 : 대모망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여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구
- 개선안 : 사각자릿그물/사각형정치망/현행유지

- 이유 : 그물의 모양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는 사각자릿그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43. 채묘연(採苗漣)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 해설 : · ‘채묘(seed collection)’는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 부유생활기 이후 부착생활기를 갖는 이매패(굴, 피조개, 가리비등) 및 우렁쉥이 등을 대상으로 부착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이들 유생을 수집함. 부착력이 없는 바지락, 대합 등은 바닥에 침강할 때 완류장치를 이용하여 침강을 촉진시킴.
- 개선안 : 현행 유지(설명병기필요)
- 이유 : · 어려운 한자어에 해당하는 전문용어이지만, 적절한 순화용어를 대체할 수 없어 현행 유지가 적절함. 적절한 순화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적절한 순화용어의 선정이 어려워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함. 채묘연(採苗漣: 이매패를 부착시키기 위한 부착기질)

44. 말목식종묘생산어업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 해설 : · ‘말목식’은 연안의 깊이가 얇은 곳에서 두 줄의 말목을 박고 말목 위에 옆으로 나무를 걸쳐서 이 나무에 수하연을 늘어뜨려 양식하는 방식을 말함.
 - 간이수하식(말목식 수하양식) : 주로 굴의 종묘생산과 양성에 이용
- 개선안 : 말목식종묘생산어업/현행유지
- 이유 : ‘말목식’은 양식재배의 특수한 모양을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용어의 쓰임이며, 대체할 보다 쉬운 용어를 찾기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함.

45. 물양장(lighters wharf, 物揚場)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 해설 : •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
- 개선안 : **소형선박 접안부두/소형부두/소형하역부두**
 - 이유 : ‘물양’이란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물건을 내리는 것’이며, ‘물양장’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근접하는 용어는 ‘소형선박 접안부두’이며,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는 ‘소형하역부두’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소형부두’로 순화하여도 그 의미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6. 부망(敷網)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부칙 제8조
- 해설 :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펴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
- 개선안 : 들그물
 - 이유 : ‘부망’은 들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칙 용어대비표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들망의 순화어인 들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47. 양식장형망선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제17조제1항 관련)
- 해설 : • ‘형망(dredge, 桁網)’은 틀에 갈구리를 붙여 해저생물을 채취하는 장치
 - 인회망류의 일종으로 목재 또는 철재 등의 틀로 망구를 고정시킨 대망을 1가닥의 예인술로 끄는 어구로 조개틀과 같이 그물 입구가 고정된 형태가 그 특징임.
- 개선안 : **양식장틀망그물선/양식장틀망선/현행유지**
 - 이유 : ‘형망’은 그물의 생긴 모양을 중심으로 ‘양식장틀망그물선’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8. 강선(steel ship, 鋼船)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 해설 : · 선체의 주요 구조(構造)의 재료가 강철인 선박.



- 개선안 : **철강선/철강선박/현행유지**
- 이유 : 한자어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보다 쉬운 대체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현행 용어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49. F.R.P 선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 해설 : 유리섬유를 골격으로 하여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로 만든 배(강화 플라스틱선).
- 개선안 : **강화플라스틱선/현행유지**
- 이유 : 선박의 주요재료에 관한 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적절한 대체용어가 있지 않다면, 현행 유지가 적절함

50. 내용연수(耐用年數)

- 출처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 해설 :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 개선안 : **활용가능기간/내구연수/내구연한/현행유지**

- 이유 : 좀 더 쉬운 용어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활용가능기간, 내구연수, 내구연한 등의 용어로 순화가능하나, 회계학 등에서 내용연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순화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Ⅲ. 어업등록령

1.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 출처 : 어업등록령 제9조제1항제3호
- 해설 : · ‘어장도(fishing chart, 漁場圖)’는 어떤 시공간에서 어떠한 어업이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시한 것
· ‘(도면)편철(filing)장’은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 중 하나이다.
- 개선안 : 어장도면 보관장부/현행유지
- 이유 : 적절한 순화용어와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는 용어로의 순화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Ⅳ.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죽홍(竹筴)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해설 : 대나무를 쪼개 발을 만들고 수면에 띄워 양쪽을 고정시켜 대발에 포자를 부착해 하는 양식방법
- 개선안 : 대나무발
- 이유 : 대체가능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2. 일본홍(日本筴)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해설 : 산죽이나 갈대 따위를 모래필에 꽂아 하는 양식방법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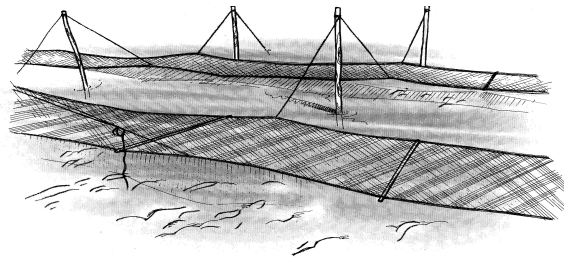
- 이유 : 대체가능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적절한 대체 용어가 없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일본홍(日本筭:양식방법의 하나)”와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컴프레서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호
- 해설 :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
- 개선안 : 공기압축기
- 이유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이지만, 법령용어로는 적절한 것이 아니며, 대체용어로서의 ‘공기압축기’도 적절한 용어이므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건홍식(建筭式)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김양식을 위하여 대나무 등 다발을 갯벌에 세우는 방식



- 개선안 : (김)통발식
- 이유 : ‘홍(筭)’은 통발 또는 다발의 의미라는 점에서 ‘통발식’이라고 순화할 수 있을 것임.

5. 지주망홍(蜘蛛網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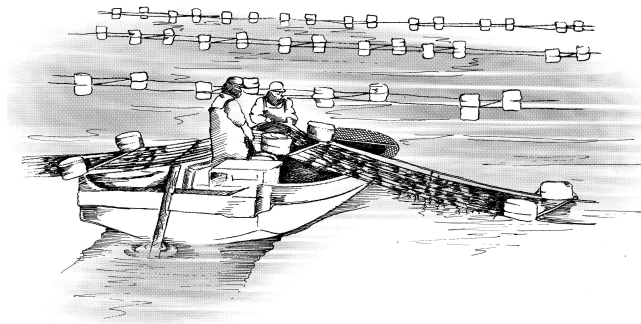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의 모양이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는 방식, 말목(지주) 등을 설치하여 그 말목에 그물망을 연결.

- 개선안 : 거미줄통발

- 이유 : 적절한 한글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미줄통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6. 부류망흥(浮流網筴)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이 고정식이 아니라 물속에 띄어서 설치하는 방식, 해저에는 앵커(닻)를 박아 고정시킨 다음 부자(뜸)를 이용하여 해수면에 그물망을 띄움.



- 개선안 : 부류통발

- 이유 : ‘부류’의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용어의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혼합어로서 ‘부류통발’로 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투석식(投石式)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으로서 조개껍데기, 돌 따위를 바다에 뿌려서 조개류나 해조류를 기르는 방법, 갯벌 등에 약 20kg 정도의 석재를 넣어 패류의 종묘가 부착하여 성장하게 하거나 또는 종묘를 뿌리거나, 석재에서 해조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양식하는 방법.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투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투석식(投石式: 바다에 뿌려 기르는 양식방법)”으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8. 천해(淺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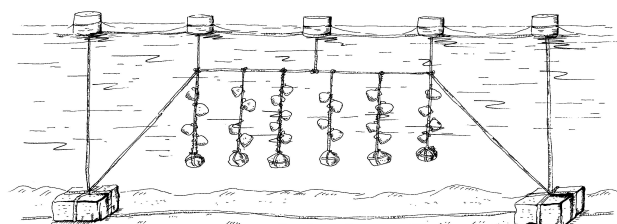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얕은 바다. 대개 해안에서부터 수심 200미터 되는 부분까지를 이른다.
- 개선안 : **얕은 바다**
- 이유 :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방안으로 ‘얕은 바다’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9. 간이식(簡易式)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수하식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적절한 용어로 판단됨. “간이식(簡易式)

10. 수하연식(垂下延式)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롱을 달거나, 약 3m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



(수하식 가리비 채묘시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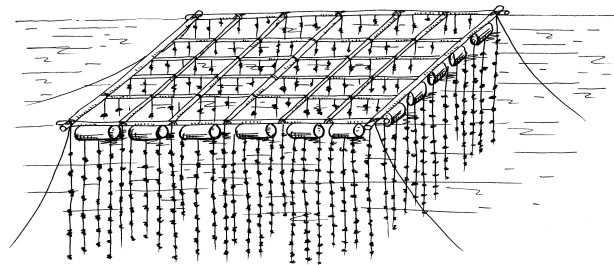
- 개선안 : 수직강하식/현행 유지
- 이유 :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적절한 용어로 판단나 순화필요성이 있다면 수직강하식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11. 살포식(撒布式)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살포식은 수심 약 40m 이내의 모래와 뺨이 섞인 바닥에서 서식하는 패류의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적절한 용어로 판단됨. “살포식(撒布式: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 등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2. 뗏목식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치패를 부착시켜 양식하는 방법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뗏목은 순 우리말인 '뗏'과 한자어인 '木'이 합쳐진 말임. 양식어업의 한 방식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함.

13. 침하식(沈下式)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해설 : ‘침하’는 가라앉아 내림.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양식어업의 한 방식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의 선정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침하식(沈下式: 가라앉히는 바닥 식양식어업)”과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4. 조수로(潮水路)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해설 : 조수가 통과하는 물길.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한자 병기를 통해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

15. 어장빈매(漁場濱賣)

- 출처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해설 :
 -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
 - 빈매행위는 1960년대 광전 분쟁과 더불어 공동어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바 있으며, 어장의 과도한 이용 및 관리부실을 초래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높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어장을 과도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자원 남획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임대형태임.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및 설명병기)
- 이유 : 적절한 대체용어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한자 병기와 설명병기를 통해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 “어장빈매(漁場濱賣: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의 일종)”으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V. 수산자원관리법

1. 어초(the fish shelter, 魚礁)

- 출처 : 법 제2조제1항제4호
- 해설 :
 -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번식하는 바다 밑의 도도룩한 곳

-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
- 암초나 퇴와 같이 해저 지형이 용기한 곳에서는 상승류가 일어나 영양염류를 표층에 운반하기 때문에 각종 부유생물과 치어가 번식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은 곳을 어초라 함.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문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어초(魚礁: 물고기 번식장소)”와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 해조장(algal bed, 海藻場)

- 출처 : 법 제2조제1항제4호
- 해설 : · 해조류가 많이 모여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 생물의 산란장, 성육장 및 서식장소가 되는 곳.
- 동의어 : 조장(藻場)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문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해조장(海藻場: 해조류 서식장소)”과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총허용어획량

- 출처 : 법 제2조제1항제4호
- 해설 :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법률상의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4. 보호수면(保護水面)

- 출처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설 :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구역.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법률상의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5. 수산자원관리수면(水産資源管理水面)

- 출처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설 :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으로 지정한 곳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법률상의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6. 수산자원조사원(水産資源調査員)

- 출처 : 법 제12조제1항
- 해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임명한 경우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법률상의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7. 근해어업(offshore fishery, 近海漁業)

- 출처 : 법 제12조제4항
- 해설 : · 근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
 - 어업에는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어장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업과 아주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이 있다. 근해어업은 그 중간 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수산행정상 기선선망어업(機船旋網漁業)·기선K·S어업(機船底引網漁業)·안강

망어업(鮫鰈網漁業)· 트롤어업· 유자망어업(流刺網漁業)· 근해통발어업 등을 포함해서 근해어업이라 한다.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수산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8. 연안어업(coastal fishery, 沿岸漁業)

- 출처 : 법 제12조제4항
- 해설 : · 해안에서 가까운 곳 또는 한 나라의 영해(領海)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 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하루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에서 작업한다. 수산업법에는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 또는 어구(漁具)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전근대적인 조업방식으로 생산성이 낮았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어선이 동력화·대형화하고 어업기술이 발달하여 작업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어업 형태로는 자망·개량안강망·선망·통발·들망·조망·선인망·낚시·문어단지·손꽂치 등이 있고, 어종은 멸치·까나리·꽃게·꽂치·상어·준치·청어·새우·민어 등이 많이 잡힌다.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수산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9. 어획물운반업

- 출처 : 법 제12조제4항
- 해설 : 어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수산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10.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 출처 : 법 제13조제1항
- 해설 :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수산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11. 포란(brooding, 抱卵)

- 출처 : 법 제14조제2항
- 해설 : 동물이 산란한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체를 이용하여 알을 따뜻하게 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보통 조류에서 많이 발견되며, 게나 성게의 일부도 몸체로 알을 보호하지만 육자낭이나 입 속에서 알을 보호하는(구내보육, mouth brooding) 어류 종류가 있음.
- 개선안 : **알 보호행위**/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12. 방란(spawn, 放卵)

- 출처 : 법 제14조제3항
- 해설 : 어류, 양서류, 파류 등이 알을 낳는 것.
- 개선안 : **산란**/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

13. 어망(fishing net, 漁網)

- 출처 : 법 제14조제3항제1호
- 해설 :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 개선안 : 그물
- 이유 :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알법의 정비기준에 적합하므로 그물로 순화함

14. 어구(漁具)

- 출처 : 법 제14조제3항제1호
- 해설 :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
- 개선안 : 어획도구/현행 유지
- 이유 : 적절한 순화용어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나 풀어 쓰는 경우 어획도구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5. 포획(捕獲)

- 출처 : 법 제14조제4항
- 해설 :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

16. 채취(採取)

- 출처 : 법 제14조제4항
- 해설 :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냄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함. “채취(採取)”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7. 체장(體長)

- 출처 : 법 제14조제5항
- 해설 : 개별 수산자원(물고기·어패류 등)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값. 수산자원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에 대비되는 한자어
- 개선안 : 일반용어인 ‘(몸)길이’로 순화
- 이유 : ‘체장’은 체중에 대비되는 용어의 선택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도 아니며, 전문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어인 ‘(몸)길이’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의 순화에 맞는 것은 ‘몸’을 추가하는 것이지만, 불필요한 수식어이므로 ‘길이’로 하는 것이 적절.

18. 조업금지구역(操業禁止區域)

- 출처 : 법 제15조제1항
- 해설 :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

19. 휴어기(no-fishing period, 休漁期)

- 출처 : 법 제19조제1항
- 해설 : 어로 작업을 쉬는 시기.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휴어기 (休漁期: 어로작업을 쉬는 기시)”와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0. 수역(水域)

- 출처 : 법 제19조제2항
- 해설 : 수면의 일정한 구역. 물지역(비슷한 말)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

21. 어법(漁法)

- 출처 : 법 제3장제2절 제목
- 해설 :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망법이나 조어법 따위가 있다.
- 개선안 : 어획방법/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하나 순화해야 한다면 어획방법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2. 선복량(船腹量)

- 출처 : 법 제21조, 제55조제1항제3호, 제65조제3호
- 해설 :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해상운송시장에서 해운용역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며, 일반화물선의 경우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말하는 재화중량톤수(載貨重量 ~ 數, Dead Weight Tonnage)가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컨테이너적재량을 20피트 컨테이너단위(Twenty foot Equivalent Unit : TEU)로 표시한다.
- 개선안 : **선적용량**으로 개선
 - 이유 : ‘선복량’은 선박의 공간을 표현하는 용어로 전문용어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이해의 정도는 매우 어려운 용어임. 또한, 선박의 비어있는 공간을 표시하는 수동적 용어보다는 실을 수 있는 전체 용량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의 정도와 적정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자어 역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23. 그물코(mesh)

- 출처 : 법 제23조제1항
- 해설 : 그물실을 서로 조합시킨 네 개의 매듭과 네 가닥의 그물실, 즉 발로 구성된 것. 망목(網目)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고, 우리말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24. 자망(gill net, 刺網)

- 출처 : 법 제23조제3항·제4항
- 해설 :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

- 개선안 : **결그물/가시그물/침그물**

- 이유 : 일반적인 ‘그물’의 총칭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그물의 종류의 다양성으로 자망의 특징을 표현하는 ‘가시’ 또는 ‘침’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하여 ‘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자망’은 수산 관련 일반적 용어로 정착된 면이 있어서 순화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일반용어의 순화를 통하여 순화 용어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도로 판단됨.

25. 수산종묘(水産種苗)

- 출처 : 법 제26조제1항제1호

- 해설 : 수산관련 동·식물의 종묘(성어로 가기이전의 치어단계 또는 유생 단계를 지나 착저단계).

- 종묘 : 농작물이나 수산생물의 번식·생육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농작물에서는 종자를 비롯하여 뿌리·줄기·잎 등의 영양기관 일부가 변형된 것을 이르고, 수산생물에서는 이식, 방류, 양식하는 데 필요한 어린 것을 가리킴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

26. 어업자협약(漁業者協約)

- 출처 : 법 제3장제3절 제목

- 해설 :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현재 법령상 정착된 용어이며, 한자어이지만 그대로 이해가능한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27. 소하성(溯河性)

- 출처 : 법 제26조제1항제3호, 제43조
- 해설 :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번식기가 되면 하천, 호수 등지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성질. 연어, 송어, 철갑상어 따위가 있다.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로서 ‘회귀성’ 어종으로 쓰이고 있는 바, 법령 용어로서의 ‘소하성’은 ‘회귀성’으로 순화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회귀성’으로 순화할 경우 ‘강하성’과 ‘소하성’을 모두 포괄하게 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

28. 치어(稚魚)

- 출처 :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8호
- 해설 : 어린 물고기
- 개선안 : 어린물고기
 - 이유 : ‘치어’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용어라는 점에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나, 전반적인 알법 기준에 맞춘 순화의 방향성에서 볼 때, ‘어린 물고기’로의 순화를 검토할 수 있음.

29. 치패(稚貝)

- 출처 :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8호
- 해설 : 어린 어패류
- 개선안 : 어린어패류
 - 이유 : ‘치어’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용어라는 점에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지만, ‘치패’는 매우 생소한 용어라는 점에서 한자병기 등이 필요함. 다만, 전반적인 알법 기준에 맞춘 순화의 방향성에서 볼 때, “어린 어패류”로 쓰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됨.

30. 수질오탁행위(水質汚濁行爲)

- 출처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해설 : · 오탁(pollution, 汚濁) : 대기 또는 물이나 인체 등 동·식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
· 일본 법률에서는 수질의 더러움을 취급할 때에 오탁이란 말을 사용하여 오염과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오염물질’로 규정
- 개선안 : 수질오염행위
- 이유 : 법령의 용어사용의 통일성과 구별 필요성이 없는 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어인 오염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31. 이식(transplantation, 移植)

- 출처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해설 : 식물의 나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심어서 그 곳에서 기르는 것이나 동식물의 조직, 장기 등의 부분을 잘라 같은 생물의 다른 부위에 심거나 다른 생물에 옮겨 심는 것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32. 부수어획(bycatch, 附隨漁獲)

- 출처 : 법 제39조제1항
- 해설 :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
· 어획 대상 목표종에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어획물의 일부.
- 개선안 : 현행 유지(설명병기)
- 이유 : 법령상 해당 조문이 적고 적절한 한자어의 조합으로 이해가능한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부수어획(附隨漁獲: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과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3. 낙도(落島)

- 출처 : 법 제40조제2항단서
- 해설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

34. 벽지(僻地)

- 출처 : 법 제40조제2항단서
- 해설 :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을 이른다. 비슷한 말(벽경)
- 개선안 : 현행 유지(한자병기)
- 이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함. “벽지(僻地)”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5. 인공어초(人工魚礁)

- 출처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해설 : 바다속 자연적인 지형지물이외에 인공적으로 연안에 투하하여 어초를 만든 것.
- 개선안 : 현행 유지(한자병기)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인공어초(人工魚礁)”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6. 경계수면(境界水面)

- 출처 : 법 제48조제2항
- 해설 : 경계지역의 수면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37.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 출처 : 법 제49조제2항
- 해설 : 친수공간은 ①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등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공간, ② 바다에 접하는 육역 및 바다에 가까운 수역을 합한 개념으로 연안역에 비해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해양친수공간은 바다에 면한 친수공간을 의미함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38. 매립행위(埋立行爲)

- 출처 : 법 제49조제7항제1호
- 해설 :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들이나 흙 따위로 채움. ‘메움’으로 순화.
- 개선안 : 메움행위
- 이유 :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메움행위를 순화의견으로 제시함

39. 준설행위(dredging, 浚渫行爲)

- 출처 : 법 제49조제7항제2호
- 해설 : 물의 깊이를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하천·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VI.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 양륙항(port of discharge, 揚陸港)

- 출처 : 시행령 제5조
- 해설 : 운송되는 물품의 환적항 또는 최종목적지

- 개선안 : **상륙항**/현행유지

- 이유 : ‘양륙항’은 선박의 운송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단순한 ‘상륙항’ 등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방안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용어사용의 생소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의 창출이 필요한 용어임.

2. 어선감척(減隻)

- 출처 :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 해설: 어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어선감척사업’

- 개선안 : **어선감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 이유 : ‘감척’은 용어의 의미에 어선 즉, 배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적절한 조어이지만, 예시에서 보듯이 독자적인 용어로 쓰이기 보다는 ‘어선감척’과 같이 대상에 부가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불필요한 중복적인 용어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감축(減縮 : 수를 줄인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왕돌초(--礁)

- 출처 : 시행령 제11조

- 해설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해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암초.

- 개선안 : 현행 유지. ‘초’는 ‘암초’로 순화검토

- 이유 : 지명이라는 점에서 법령에 있어서 용어가 아니며, 적절한 순화대상 용어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 다만, ‘초’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암초’로 표현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선발육종(選拔育種, selective breeding)

- 출처 : 시행령 제23조

- 해설 : 생물이 가진 유용한 유전적 형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진 개체나 개체군을 선택하여 교배하여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에서도 연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교배하는 일.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정함

5. 나잠어업(裸潛漁業)

- 출처 : 시행령 제25조제1항
- 해설 :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즉,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 여성노동력 위주의 생업 생산체계이다.
- 개선안 : 맨몸잠수어업/해녀어업
- 이유 : 이 어업의 수행방식은 거의 대부분 해녀에 의한 어업이라는 점에서 ‘해녀어업’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여성만이 나잠어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도 있으므로 양성평등적 용어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맨몸잠수어업으로 순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됨.

6. 해중림(sea jungle, 海中林)

- 출처 : 시행령 제51조제3호
- 해설 : 바다에 대형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곳. 일반적으로 해조류가 잘 번식하는 곳은 보통 저조선에서 수심 20m까지로 수산동물의 산란장이나 유생의 발육장으로서 중요함.
- 개선안 : 해조숲, 해조밭, 현행유지
- 이유 : 한자의 의미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풀어서 해조숲 또는 해조밭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다만, 한자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이며, 전문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의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

7. 세목망(細目網)

- 출처 : 시행령 별표 11
- 해설 :
 - 그물코가 아주 작은 그물감.
 - 일반적으로 세목망은 그물코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규격 단위를 mm를 사용하지 않고 ‘경’이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50cm 폭 안에 든 씨줄의 수를 뜻합니다. 보통 시판되고 있는 것은 90경, 105경, 120경, 140경, 160경 등이 있음.
- 개선안 : 모기장그물/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모기장그물로 할 경우 수산용어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나 쉽게 이해가 되므로 세목망(細目網: 모기장 그물)등으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8. 여자망(緋子網)

- 출처 : 시행령 별표 11
- 해설 : 씨줄과 날줄을 2가닥씩 꼬아 가면서 일정한 간격마다 서로 엮어 그물코가 직사각형이 되게 짠 그물로 멸치 등 작은 고기를 잡는데 쓰임.
- 개선안 : 교차꼬임사각그물/현행유지
 - 이유 : 여자망의 그물의 형태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안을 고려함.

9. 직망(織網)

- 출처 : 시행령 별표 11
- 해설 : 편자사 또는 2자사를 강하게 꼬아서 교차시켜 만든 그물
- 개선안 : 교차사각그물/현행유지
 - 이유 : 직망의 그물의 형태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고려함

10. 양망(揚網)

- 출처 : 시행령 별표 11
- 해설 :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

- 개선안 : 그물 올리기/현행유지
- 이유 : 양망의 의미를 풀어서 그물 올리기로 개선하거나 “양망(揚網: 그물 올리기)”와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1. 가 리

- 출처 : 시행규칙 제6조제4호
- 해설 :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대오리를 엮어서 밑이 없이 통발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강이나 냇물에서 씀.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순 우리말 용어이며, 일반인이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

12. 낫 대

- 출처 : 시행규칙 제6조제5호
- 해설 : 설낫, 미역낫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낫의 손잡이 부분을 의미하는 말로서 관련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임이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

13. 반 두

- 출처 : 시행규칙 제6조
- 해설 :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어구, 두 개의 긴 작대기 사이에 너비 1.5m, 길이 5m쯤 되는 그 물을 위는 좁고 아래는 조금 넓게 잡아매며 아랫도리에 작은 납덩어리를 달아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음.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물고기를 잡는 특수한 형태의 용어로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화의 필요성보다는 현행용어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14. 투망(投網)

- 출처 : 시행규칙 제6조
- 해설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으므로 현재의 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특히 어구로서의 투망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설명병기가 필요함. “투망(그물던지기)” 등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함.

15. 수망(受網, deep net)

- 출처 : 시행규칙 제6조
- 해설 : 자루 모양의 그물에 막대를 달아 올려 잡는 어구.
- 개선안 : 현행유지/반두그물
- 이유 : 반두그물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반두와의 비교 검토 필요함.

VII. 어선법 및 하위법령

1. 계선(繫船)

- 출처 : 어선법 제3조 제5호
- 해설 : 선박을 육지에 매우 두는 일. 계류(繫留)라고도 한다. 해운의 경기가 악화될 때 운항을 중지하고 항구에 정박하는 것도 계류라고 한다. 종류는 묘박(錨泊: 닻을 내려 정박하는 일) · 부표(浮標)계선 · 안벽(岸壁)계선의 3가지가 있다.
- 개선안 : **선박묶기**/현행유지
 - 이유 : 선박관련 법령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용어로서 적절한 순화대상 용어가 없음. 다만 한자어를 풀어 순화어를 제시한다면 선박묶기를 순화용어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양묘(繫船)

- 출처 : 어선법 제3조 제5호
- 해설 : 닻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개선안 : **닻 올리기**/현행유지
 - 이유 : 국내 조선산업이 시작된 이래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계속 사용하고 용어로서 변경시 혼선 초래할 수 있음. 다만 한자어를 풀어 순화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 닻 올리기를 순화용어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 출처 : 어선법 제4조
- 해설 :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積荷限度)의 흘수선.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만재흘수선 규정에 의하여 선종별로, 또 같은

선박일지라도 최대 만재흘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정위치를 명확히 하고,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박의 중앙부 양현(兩舷)에 건현표(乾舷標: 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시행규칙 제2조 4호 : 어선이 사람과 어획물 또는 화물을 싣고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를 나타내는 선

- 개선안 : 최대선(수)심선/현행유지

- 이유 : 한자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으나, 조선해양공학 일반의 기술용어로서 변경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4. 감항성(堪航性)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3호

- 해설 :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상법은 감항능력(堪航能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있어서 내공능력(耐空能力)에 비견될 수 있음. 선체능력·감하능력(堪荷能力)·인적 감항력(人的 堪航力) 등을 내용으로 함. 선박에서 감항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해상에서는 선박이 항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가운데 특히 침몰(沈沒, Sinking)·좌초(坐礁, stranding)·충돌(衝突, Collision)·황천(荒天, Heavy Weather) 등 해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 내포되어 있고, 항행 중에는 외부와의 고립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상법은 운송인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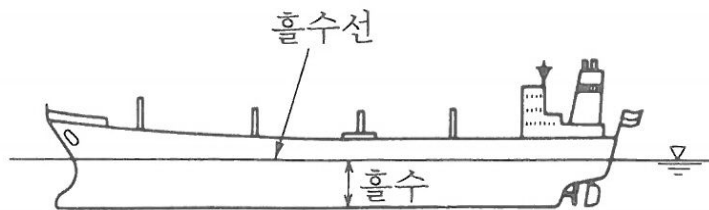
- 개선안 : 항해안전성/현행유지

- 이유 : 한자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으나 항공과 선박 모두에 해당하는 공학일반 용어이며, 국내조선

산업이 시작된 이래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변경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다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항해 안전성으로 풀어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5. 흘 수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 해설 : 수중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 흘수선 이하의 물체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무게가 부력이 되며 부력과 물체의 무게가 같을 때 평형 정지해 있다.



- 개선안 : 선(수)심/현행유지
- 이유 : 국내조선산업이 시작된 이래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변경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6. 폭로부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해설 : 선박의 외부장소로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
- 개선안 : **노출부**/폭로갑판/노출갑판/현행유지
- 이유 : 국내조선산업이 시작된 이래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변경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7. 코퍼댐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표
- 해설 :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청수 탱크와 유류 탱크 사이의 유밀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저 선박에서 연료유 탱크와

유탄유 탱크 사이, 연료유 탱크와 청수 탱크 사이, 유탄유 탱크와 청수 탱크 사이 등에 설치되어 연료유, 유탄유, 청수 등의 상호 침입을 막기 위한 공간이다.

- 개선안 : **임시물막이**/현행유지
- 이유 : 외국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음. 다만 국내 조선산업이 시작된 이래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용어로서 변경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8. 사수(射水)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 해설 : 물을 분사함
- 개선안 : 물 분사/현행유지
- 이유 : 보다 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방안을 제시함

9. 축기(蓄氣)시험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 해설 : 보일러 안전밸브의 분출능력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개선안 : **공기흡입시험**/현행유지
- 이유 : 보일러압력용기의 일반적인 시험방법으로 변경시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음. 순화해야 한다면 공기흡입시험을 순화어로 제시함.

10. 도기시험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 해설 : 사용 상태에 있어서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용기에는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험
- 개선안 : **공기도출시험**/현행유지

- 이유 : 보일러압력용기의 일반적인 시험방법으로 변경시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체 용어 없음. 순화해야 한다면 공기도출시험을 순화어로 제시함.

11. 창구복포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나목 1)
- 해설 : 창구복포(艙口覆布, tarpulin)는 방수천의 일종으로 타르 칠한 방수천, 타르입힌 돛배를 가리킨다.
- 개선안 : 타르방수천
- 이유 : 외국어 표현으로, 보다 쉬운 우리말 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음

12. 합사기(合絲機)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 해설 : 실을 2가닥 이상 합하는 것, 또는 그 기계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섬유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는 용어로서 순화시 혼선 야기할 수 있음. “합사기(合絲機: 실을 합치는 기계)”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3. 연사기(撚絲機)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 해설 : 정방기(精紡機)에서 뽑아진 실을 홑실(單絲)이라고 하는데, 이 홑실을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가닥으로 합쳐 꼬는 기계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섬유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는 용어로서 순화시 혼선 야기할 수 있음. “연사기(撚絲機: 홑실 꼬는 기계)”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4. 정경기(整經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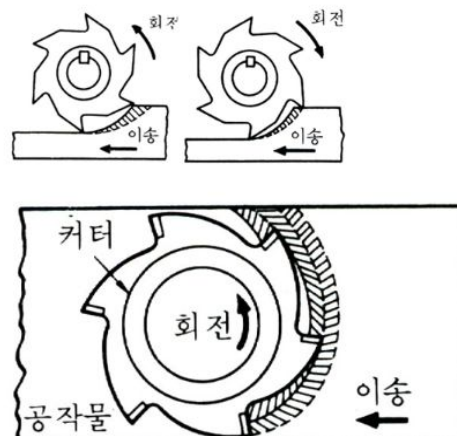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 해설 : 낄실을 필요한 올의 수만큼 가지런히 펴서 도투마리에 감는 기계
- 개선안 : 낄실틀
 - 이유 : 한자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 있음

15. 벤딩머신(Bending machine)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다)
- 해설 :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은 강재나 파이프 등의 재료를 굽힘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함
- 개선안 : 절곡기
 - 이유 : 외국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음.

16. 밀링머신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 해설 : 공작기계(工作機械)의 일종이며, 원형(圓形)의 낄(cutter)이 있는 도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절삭(切削)한다. 평면, 홈(溝, groove), 기어(齒車, gear), 캠(cam) 등의 절삭에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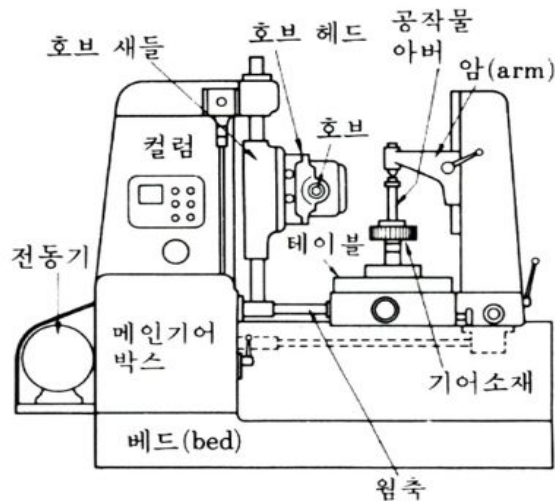
- 개선안 : 회전절삭기계
- 이유 : 외국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음.

17. 브로칭머신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 해설 : 브로치는 가공하는 모양과 비슷한 많은 날이 차례로 치수를 늘리면서 출선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봉 모양의 공구로, 이것을 브로칭머신의 축에 장치하고, 축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겨서 가공함.
- 개선안 : **브로치공작기계/절삭가공기계**
- 이유 : 외국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음. 브로치공작기계를 순화어로 검토함.

18. 호빙머신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 해설 : 기어를 절삭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어절삭용 공작기계, 수직 호빙머신과 수평호빙머신이 있다.



- 개선안 : **기어제작기계/기어가공기계**
- 이유 : 외국어 표현으로, 적절한 우리말 순화용어를 찾아 풀어 쓸 필요가 있음.

19. 침탄로(浸炭爐)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 해설 : 침탄은 강철의 탄소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를 강철표현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침탄을 하기 위하여 쌓은 노를 말함
- 개선안 : **탄소강화로/현행유지**
- 이유 : 금속업계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순화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순화해야한다면 탄소강화로를 순화어로 제시함.

20. 질화로(窒化爐)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 해설 : 질화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으로서 질소를 강(鋼)에 침투시켜 그 표면을 경화시키는 조작으로 공작물을 정밀하게 다듬질한 다음 암모니아가스 속에 500℃ 정도로 18~19시간 가열하여 자연스럽게 냉각시킴. 이 질화 과정이 진행되는 노(爐)를 말함.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금속업계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순화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질화로(窒化爐)”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1. 아우트리거(outrigger)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9 제1호 나목 5)
- 해설 : 이동식 크레인 또는 케이블 경운장치 등으로 작업할 때 안정을 위하여 프레임 등에 부착하여 길게 설치된 지주, 또는 하우스 등이 폭풍에 버티도록 하기 위해 지상에 고정된 장치
- 개선안 : **현외부재(舷外浮材)/고정지주/현행유지**
- 이유 : 크레인에 사용되는 고유명사로서 순화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순화해야 한다면 현외부재, 고정지주 등을 순화어로 검토할 수 있음.

22. 전면(前面)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해설 : 물건의 앞쪽 면
- 개선안 : 앞면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필요 있음

23. 폐위(閉圍)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라목
- 해설 : 넓은 뜻으로는 외관,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 격벽, 갑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폐위구역 가운데 제외구역을 뺀 부분을 말함.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 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좁은 뜻의 폐위구역에 해당함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지만 업계에서 두루 쓰이는 표현이며, 대체할 용어가 적절하지 않음. “폐위(閉圍)”로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4. 격벽(隔壁, partition wall)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 해설 : 선박 용어로서는 선체의 내부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칸막이 벽을 말함. 격벽은 선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기름 등의 탱크로 쓰기 위하여, 단순히 구획을 나누기 위하여 설치함.
- 개선안 : 칸막이 벽/현행유지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24. 수밀성(水密性, watertightness)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 해설 : 기계 또는 장치의 어느 부분에 채워진 물이, 밖으로 새지 아니하고 밀봉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작용.
- 개선안 : **방수성/현행유지**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이해의 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현행용어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함.

25. 입거(入渠)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 해설 : 배를 선거(船渠)에 넣음
- 개선안 : **선체입고/현행유지**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과 병행하여 표기함

26. 상 가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 해설 : 배를 선거(船渠) 안 받침대 위에 놓음
- 개선안 : **선체올림/현행유지**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과 병행하여 표기함

27. 지브크레인(Jib Crane)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
- 해설 : 집(jib)이 달린 크레인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旋回)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음
- 개선안 : **선회크레인/현행유지**
 - 이유 : 외래어를 좀 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건축 등 다른 관련 분야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현행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28. 데릭(Derrick)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
- 해설 : 짐을 동력을 사용해 매달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이며, 마스트(mast) 또는 붐(boom)이 있고 원동기를 따로 설치해 와이어로프에 의해 조작되는 것
- 개선안 : 데릭기중기/현행유지
 - 이유 : 기중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중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데릭기중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29. 상앗대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부칙 제70호
- 해설 :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순우리말로 변경의 필요성은 없으나 어려운 용어이므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상앗대(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로 설명을 병기할 수 있음.

30. 묘쇄고(錨鎖庫)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 해설 : 닻사슬을 넣어 두는 창고.
- 개선안 : 닻사슬 창고
 - 이유 :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31. 디프탱크(deep tank)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 해설 : 창내 탱크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창내 탱크
- 이유 : 용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안으로 순화안을 검토함. 다만 선박과 관련된 용어는 국제 표준용어와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안도 검토함. 순화가 어려운 경우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32. 축로(舳艫, Shaft Tunnel)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 해설 : 선체 중앙에 기관실이 있는 선박에서는 기관실과 선미격벽 사이의 내저판 상에 축로를 설치하여 축 관련 장치를 보호하고 보수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선미관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구조로 함.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선박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선박/어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현창(舷牆, Side Scuttle)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 해설 : 선박 거주구역(accommodation space)의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선박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선박/어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복판타(Double Plate Rudder)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 해설 : 타는 선박의 진로를 제어하는 장치이고, 복판타는 조합해 만든 타골의 양면에 강판을 붙인 것으로, 내부는 속이 빈 수밀 구조이다. 타면이 유선형이어서 효율적이고 저항도 작아서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서 이용되고 있음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선박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선박/어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배기터빈과급기(Turbo Charger)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3
- 해설 : 엔진배기가스에 의해 원심공기펌프를 작동하는 것으로, 엔진에 공기 또는 혼합기의 추가분을 강제로 유입해 연소압력과 엔진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기계 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기계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6. 스러스트축(thrust shaft, - 軸)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3
- 해설 : 주로 스러스트 하중(荷重)이 가해지는 축, 또는 스러스트 하중을 전달하는 축을 스러스트 축이라고 하며, 추력축(推力軸)이라고도 함.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기계 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기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7. 러더프로펠러(Rudderpropeller)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3
- 해설 : 해양플랜트 선박에 주로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조향·추진장치
- 개선안 : 현행유지/방향타 프로펠러
 - 이유 : 기계 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설명을 병기할 경우 “러더프로펠러(방향타프로펠러)”로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8. 워터젯추진장치(Waterjet)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3
- 해설 : 타 엔진과 연결된 임펠러(회전익)를 구동하여 선저에 선수방향으로 설치된 흡입구를 통하여 해수를 흡입하여 압력을 높인 후, 노즐을 통하여 가속된 해수를 선저의 선미방향으로 분사시킴으로써 선체를 조향하고 추진시키는 장치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선박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이 경우 선박/어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설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9. 호이스트(hoist, 卷上機)

- 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 해설 : 전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올리기 기계(권상기)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음. 체인 호이스트, 공기 호이스트, 전기 호이스트 등이 있음
- 개선안 : 현행유지/권상기(卷上機)
 - 이유 : 기계관련 전문용어로서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유지함. 변경하여야 한다면 권상기(卷上機)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VIII. 어장관리법

1. 어장(漁場)

- 출처 : 법 제1조, 제2조제1호
- 해설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2. 어장휴식(漁場休息)

- 출처 : 법 제2조제4호
- 해설 :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어장휴식(漁場休息)”과 같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어장관리해역(漁場管理海域)

- 출처 : 법 제5조제2항
- 해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으로 지정된 해역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4. 어장청소(漁場清掃)

- 출처 : 법 제12조제1항
- 해설 :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것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5. 방류명령(放流命令)

- 출처 : 법 제21조
- 해설 : 물로 놓아 보냄
- 개선안 : 현행 유지
- 이유 :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관련 대체어가 없음

Ⅸ. 낚시어선업법

1. 교 부

- 출처 : 낚시어선업법 제4조 제2항
- 해설 : 물건을 인도하는 일.
- 개선안 : 발급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필요 있음

2. 당 해

- 출처 : 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2 제2항
- 해설 : 바로 그것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 개선안 : 해당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필요 있음

3. 연 접

- 출처 :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해설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 개선안 : 인접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쉽게 표현할 필요 있음

X. 낚시관리 및 육성법

1. 환가(換價)

- 출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해설 :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 값으로 환산함
- 개선안 : 금전으로 환산
- 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필요 있음

2. 개측(改測)

- 출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 해설 :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점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것
- 개선안 : 다시 측정 또는 새로 측정
- 이유 :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필요 있음

XI.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1. 사유수면

- 출처 : 내수면어업법 제2조
- 해설 :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
- 개선안 : 개인수면/현행유지
- 이유 : 내수면어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변경시 내수면어업법 개정이 필요함.

2. 유어기반(遊漁基盤)

- 출처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해설 : 체험어업기반
- 개선안 : 체험어업기반
- 이유 : 유어장을 체험(어업)학습장으로 순화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의견을 제시함.

3. 어살어업(漁箭漁業)

- 출처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부칙 제16930호
- 해설 : 어살류[漁箭類]의 정치망 어구는 수심이 얕은 저질(底質)에 곧은 나무나 대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엮어 세우거나 박아서 어류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기 울타리를 만들어 포획하는 전통 어구 혹은 어업 중의 하나.
- 개선안 : **울(타리)그물 어업**/현행유지
- 이유 : 어구의 용례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함.

4. 외줄낚시어업(pole and line fishery)

- 출처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해설 : 어획 대상 어군이 얕은 곳에 산발적으로 분포할 때 쓰는 낚시어구로 오징어 채낚기, 가다랑어 채낚기와 같은 낚싯대, 낚싯줄,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 어업.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우리말 용어로 현행유지가 적정함

5. 조방식(粗放式)

- 출처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 해설 : 양식어업의 방식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유지가 적정함.

XII. 기타 법령 및 행정규칙

1. 양륙량(揚陸量)

- 출처 :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 제2조
- 해설 : 수산자원의 어획량을 의미함
- 개선안 : 어획량/현행유지
- 이유 : 쉬운 용어로 풀어쓸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 요령의 명칭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수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검토 필요.

2. 저서동물(底棲動物)/저서어족(底棲魚族)

- 출처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 해설 : 주로 저인망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족으로 세계 도처의 대륙붕 및 그 연변에서 어획되는 어족을 말함.
- 개선안 : 저층생활물고기/저층생활어족
- 이유 : 한자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는 방향으로 순화를 검토함

3. 거양(擧揚)

- 출처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
- 해설 : 높이 들어 올림, 칭찬하여 높임
- 개선안 : 고양/고취
- 이유 : 같은 한자어이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알기 쉬운 한자어로 순화할 것을 검토함.

4. 패각(貝殼)

- 출처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 해설 : 연체동물에서 연체를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분비형성물

- 개선안 : 껍데기

· 이유 :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것을 검토함.

5. 굴패각

- 출처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 해설 : 굴의 몸을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형성물

- 개선안 : 굴껍데기

· 이유 :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것을 검토함.

6. 갯녹음

- 출처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 해설 :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체 상태로 석출되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함.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이므로 현행유지함.

7. 모식도(模式圖)

- 출처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 해설 : 어떤 물건 또는 구조물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 개선안 : 도식도/개략도

· 이유 :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것을 검토함.

8. 잔교(棧橋)

- 출처 : 어촌·어항법 제2조

- 해설 :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 개선안 : 연결다리

· 이유 :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것을 검토함.

9. 부잔교(浮棧橋)

- 출처 : 어촌·어항법 제2조
- 해설 :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 개선안 : 뜬다리
 - 이유 :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것을 검토함.

10. 도상연습(圖上演習)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 해설 : 도구나 부호를 이용하여 실제 작전처럼 하는 연습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전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적당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도상연습(圖上演習)”과 같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1. 객토(客土)

-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 해설 :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불량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의 지력(地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적당한 성질을 가진 흙을 가져다 넣는 일.
- 개선안 : 새 흙 넣기/흙갈이/현행유지
 - 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기준에서 객토는 새 흙 넣기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현행유지의견도 함께 검토함.

12. 성성숙(性成熟)

- 출처 : 닭검정기준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해설 : 가축, 어류 등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일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달리 순화할 적당한 용어가 없으나 용어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명을 병기하는 안을 검토함. “성성숙(性成熟: 가축, 어류 등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일)” 또는 “성성숙(性成熟: 산란 가능 성장)”과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4. 구명부환(life buoy, 救命浮環)

- 출처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 해설 : · 선박 조난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코르크나 카포크를 채워 방수포를 씌운 것으로, 보통 고리 모양임.
· 생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물에 뜨는 둥근 고리



- 개선안 : 구명부표/구명부이/구난부표/구명고리
- 이유 : ‘구명부환’ 또는 ‘부환’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현으로서 적절한 용어의 쓰임은 아니며, ‘부표’ 혹은 ‘고리’로 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5. 어로(漁撈)

- 출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 해설 : 고기잡이
- 개선안 : 고기잡이/현행유지/한자병기
- 이유 : 어로(御路)와 동음이의어이므로 고기잡이로 순화하여 사용하거나 현행유지 할 경우 한자어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16. 어망(漁網)

- 출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 해설 : 그물, 고기기물
- 개선안 : 그물/고기기물
-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화 용어인 그물 또는 고기그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17. 어상자(漁箱子)

- 출처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해설 : 고기상자
- 개선안 : 고기상자
-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화 용어인 고기상자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18. 어유(魚油)

- 출처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해설 : 생선기름
- 개선안 : 생선기름
-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화 용어인 생선기름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19. 원양부어류(遠洋浮魚類)

- 출처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해설 : 어류를 서식장소와 관련해서 구분하여, 해저와 연관성이 없고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를 총칭하여 부어류라 함. 부어류는 크게 청어과(청어, 연어, 정어리, 멸치, 은어 등)와 고등어과(고등어, 다랑어, 삼치, 청새치, 갈치 등)로 구분됨.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 및 설명병기)
- 이유 : 속한 물고기의 종류가 많고 표층과 중층에 걸쳐 있으므로 풀어 쓴 용어가 오히려 너무 길고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하되 한자와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원양부어류(浮魚類: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로 한자와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0. 양승(揚昇)

- 출처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해설 :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림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현재의 용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사용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양승(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리는 행위)”와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1. 천평기

- 출처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6
- 해설 : 해저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는 기계장치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현재의 용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사용하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천평기(공기주입기계)”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2. 크랭크축((crankshaft軸)

- 출처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해설 :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 개선안 : 현행유지/곡축(曲軸)
- 이유 : 현재의 용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사용하되 변경한다면 곡축(曲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함. 이 경우 외래어와 한자어의 합성인 용어를 한자어로 변경하여 통일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23. 커플링(Coupling)

- 출처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해설 :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 개선안 : 현행유지/축이음
- 이유 : 현재의 용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사용하
되 변경한다면 “축이음”으로 풀어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함.

24. 예망(曳罔)

- 출처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해설 :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
- 개선안 : 현행유지(설명병기)
- 이유 : 현재의 용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용어를 사용하
되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예망(그물끌기)”로 설명을 병
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5. 갯닦기

- 출처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해설 : 양식하는 해조류의 포자나 어패류 따위의 치어가 붙을 수 있도록
바윗면을 깨끗이 닦아 주는 일, 양식장의 암반이나 돌에 양식 생물
이 부착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착 생물
을 제거하는 일
- 개선안 : 바위 닦기
- 이유 :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검토함.

26. 석조망(石繰網)

- 출처 : 구수산업법
- 해설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친 후 돌을 던져 어군의 도피를 막으면서 그물을 죄어 대상물
을 잡는 어업

- 개선안 : 두릿그물/선망
- 이유 : 석조망은 선망에 포섭되는 그물의 이름이므로 선망의 순화어인 두릿그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27. 양조망(揚繰網)

- 출처 : 구수산업법
- 해설 : 두릿그물의 하나. 물고기 떼를 둘러싸기만 하고 아래 깃을 조이지 않는 형태의 선망임
- 개선안 : 두릿그물/선망
- 이유 : 양조망은 선망의 한 종류로 선망의 순화어인 두릿그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28. 바이오매스(biomass)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 해설 :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물량, 생물체량이라고도 함
- 개선안 : 생물량/생물체량
- 이유 : 동일한 용어로 우리 언어권에 더 가까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29 . 어황(漁況)

- 출처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제29조
- 해설 : 어획 대상 자원의 수량이나 어획 가능한 밀도의 수준
- 개선안 : 어획상황
-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화 용어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30. 레토르트식품(retort --)

- 출처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제3조
- 해설 :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이다. 조리가공한 여러 가지 식품을 일종의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압가열살균솥(retort)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살균하여,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
- 개선안 : 고열처리 장기보존식품/현행유지
- 이유 : 레토르트식품을 보다 쉽게 풀어서 고열처리 장기보존식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만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레토르트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현행유지하면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31. 종패(種貝)

- 출처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 해설 :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조개
- 개선안 : 씨조개
- 이유 :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함

32. 어즙(魚汁)

- 출처 : 구사료관리법시행령 제10조
- 해설 : 생선 통조림 또는 어육가공공장에서 불가식 부위나 비식용 생선으로부터 어분을 만들 때 생기는 끈끈하고 냄새가 나는 액체를 어즙이라 함
- 개선안 : 생선즙
- 이유 :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도 순화용어로 생선즙을 제시하고 있음.

33. 어렵(漁獵)

- 출처 : 구어선종업제한등에관한규정
- 해설 : 고기잡이
- 개선안 : 고기잡이
- 이유 : 국어사전에서 어렵은 고기잡이와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도 순화용어로 고기잡이를 제시하고 있음.

XIII. 기타 수산관계 용어

1. 모천국(母川國)

- 해설 : 연어, 송어 따위의 소하성 어종이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는 하천이 있는 연안국
- 개선안 : 현행유지(한자병기/설명병기)
- 이유 :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자어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모천국(母川國: 소하성 어종이 알을 낳는 하천 연안국)” 또는 “모천국(母川國: 회귀성 어종이 알을 낳는 하천 연안국)”과 같이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2. 지지줄 자망(--- 刺網)

- 해설 : 지지줄을 사용하는 자망
- 개선안 : 지지줄 걸그물/현행유지
- 이유 : ‘자망’의 개선방안인 걸그물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검토함

3. 연승수하식

- 해설 : 양식어업의 한 방식
- 개선안 : 연속식 수중매달기 방식

- 이유 : 어구어법상 ‘연승’은 주낙으로 순화하였으나 양식어업의 방식으로 연승수하식은 주낙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그 모양만을 차용하고 있어서 연속식 수중매달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함

4. 귀매달이식

- 해설 : 가리비양식의 방법, 귀걸이를 단 것처럼 매달아 주는 방법으로 양식의 모양을 표현한 것임
- 개선안 : 현행유지
- 이유 : 양식의 모양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자연순치시설(自然馴致施設)

- 해설 : 어류 또는 패류가 적응하도록 하는 시설
- 개선안 : 자연적응시설
- 이유 : 보다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

6. 건착망(巾着網)

- 해설 : 고기그물의 한, 양조망을 개량한 것. 큰 띠 모양의 그물로 고기떼를 뺨 둘러싸고 그물의 아랫부분을 빨리 즐라매기 위해서 그물에 금속고리를 많이 달아,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음. 마치 주머니 주둥이를 즐라매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물안의 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 다랑어·고등어·가다랭이·정어리 잡이 따위에 많이 쓰임.
- 개선안 : 두릿그물/선망/현행유지
- 이유 : 건착망은 선망의 한 종류로 선망의 순화어인 두릿그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7. 종패망(種貝網)

- 해설 : 씨조개그물

- 개선안 : 씨조개그물
- 이유 :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여 씨조개그물로 개선할 것을 검토함

8. 박신(剝身)

- 해설 : 껍각만을 제거한 근육, 내장, 외투막, 생식소 등의 총칭
- 개선안 : 껍질제거/현행유지
- 이유 : 박신은 주로 굴의 껍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껍질제거로 개선하거나 “박신(剝身: 껍질제거)”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함

9. 자담(自擔)

- 해설 : 자기부담
- 개선안 : 자기부담
- 이유 : 보다 쉬운 용어로 풀어서 사용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함.

10. 어분(魚粉)

- 해설 :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부터 기름을 짠 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가루. 생선을 전체 또는 일부를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부분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어체의 가공처리과정에서 부생(副生)하는 머리, 뼈, 내장 등을 원료로 한 것을 황박이라 하고 어분과는 구별한다. 붉은살 생선으로부터 만든 것을 브라운 밀(brown meal), 흰살 생선으로부터의 것을 화이트밀(white meal)이라함. 어분은 가축이나 양식어에게 주는 배합사료의 원료가 됨.
- 개선안 : 생선가루
-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화 용어인 생선가루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11. 어정선

- 해설 : 어업지도선
- 개선안 : 어업지도선/현행유지
- 이유 :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함

20. 자숙품(煮熟品)

- 해설 : 원물을 세척하여 삶은 것을 일컫는 말
- 개선안 : 삶은 물품/현행유지
- 이유 :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함

12. 피레트(fillet)

- 해설 :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
- 개선안 : (뼈를 발라낸)살코기
- 이유 :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함

【 부 록 】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개선방안 마련 용어

- 용어전환의 시급성 및 용이성을 기준으로 비고란에 난이도를 표시함
1. ☆: 추가검토가 필요한 용어
 2. ☆☆: 바꿀 필요성이 있는 용어
 3. ☆☆☆: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수산업법 제2조제4호	호료(糊料)	한자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축을 좋게 하는 물질. 천연 호료와 합성 호료가 있으며, 식품에 넣으면 점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지는 물질	접착원료/접착풀원료/현행 유지	(설명을 붙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한자	밀물 경계선 고조선 공유수면 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의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 고조선(高潮線, high-water line)이라고도 하며, 공유수면에 포함되는 바닷가와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최고수위선/현행유지	☆
3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1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한자	어구는 크게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길게 뻗힌 길그물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우리(통그물)로 어군을 유도하여 잡는 어업	자릿그물어업, 고정망어업/고정그물어업, 고정식어업, 자리그물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4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연승(long line, 延繩)	한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어업이다.	‘연승(延繩)’은 한자어이며, 주낙은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주낙’으로 통일	☆☆☆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구획어업(區劃漁業)	한자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	구역어업/현행유지	☆☆
6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유어장(遊漁場)	한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	체험관광어장/ 현행유지	☆☆☆
7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낙망(落網)	한자	정치망의 한 종류로, 통그물을 헛통과 원통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경계에 비탈그물을 설치하여 원통으로 들어간 고기가 되돌아 나오기가 힘들도록 제작된 어구	비탈 자릿그물, ‘합정망’ 또는 ‘합정그물’	☆☆☆.
8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승망(fyke net, 罟網)	한자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그물이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망의 한 종류임.	고리테 자릿그물,	☆☆☆
9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죽방렴 (bamboo weirs, 竹防簾)	한자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대나무 어사리, 방전)	대나무발 자릿그물, ‘대나무발어업’/ 현행유지	☆☆☆
10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수하식 (hanging culture, 垂下式)양식어업	한자	양식 대상 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 바닥 양성이나 다른 양성법으로서 양성하는 것보다 생장이 좋고,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수중매달기’ /현행 유지	☆☆
11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	채룡(-籠)	우리말+한자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틀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전복이나 가리비 등 치패를 넣어 성장시키는 양식에 사용되는 통	‘그물 망태기’/ 현행유지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2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	한자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방식’양식어업	☆☆
13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	한자	바다 밑에 서식하는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 끌그물[曳網]류에 속하는 그물어구	저층끌그물, 저층끌망	☆☆☆
1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어업 (底引網漁業)	한자	동력선으로 바다 밑에 있는 어류 등을 어획하기 위해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업.	저층끌그물어업, 저층끌망어업	☆☆☆
1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	우리말+한자	60t이상 어선이 하는 저인망어업을 대형저인망어업이라 하고, 1척으로 하는 것을 외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끌그물어법이 아닌 후릿그물어법을 사용하므로 용어개선 및 향후 법령정비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일척식 대형배후릿그물어업/ 일척식 대형선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그물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망어업	☆☆☆
1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6호	트롤어업 (trawls 漁業)	영어+한자	동력선으로 전개판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동력그물어업/ 현행유지	☆
17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선망어업	한자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fish shoal)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게 가둔 후에 차차 그 범위를 좁혀서 떠 올리는 어법을 두릿그물(선망)어업이라 함.	두릿그물어업	☆☆☆
1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망어업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인 자망을 이용한 어업,	결그물어업, 고정결이그물어업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대상물이 그물코에 꽂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19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유자망(流刺網)	한자	긴 대모양의 그물 상부에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부착하여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걸어구류의 어업.	홀림걸그물	☆☆☆
2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안강망어업	한자	안강(鮫鱈)은 아귀과의 바다 물고기의 명칭임.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조류에 의해 고기가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 안강망은 우리 나라 재래식 어망인 중선망(中船網)과 어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보급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일중선(日中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돛(고정) 자루그물어업/ 하나돛 자루그물어업	☆☆☆
2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봉수망어업	한자	사각형 그물의 한 모서리에 뜰과 테의 역할을 겸하는 뜰대를 붙여 수면에 지지하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발돌[沈子]을 달아 가라앉혔다가 어군(魚群)이 그물 위에 모이면 발돌 부분에 연결된 돌움줄을 당김으로써 발돌부분을 들어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을 이용한 어업	채들그물어업, 꽂치어업, 꽂치잡어업	☆☆☆
22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초망(抄網)	한자	‘채그물’의 북한어. 채그물은 지나가는 물고기를 물 밑으로부터 떠올려 잡는 그물을 말함.	채그물	☆☆☆
23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리돔들망어업	우리말+한자	평평한 그물을 퍼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잡는 방법이며 비교적 작은 어구는 별다른 기구가	자리돔들그물어업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없으나 대형화하면 어구를 올리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어업		
2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연승어업(延繩漁業)	한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어획 대상생물을 잡는 어업.	주낙어업	☆☆☆
2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형망어업(珩網漁業)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퀴나 썬레 같은 것을 부착한 것으로 썬레에 의해 펄이나 모래 속에 묻혀있는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틀방그물어업, 썬레그물어업, 쓰레그물어업	☆☆☆
2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기선권현망어업	한자	멸치잡이 그물어구인 권현망을 사용하여 멸치 등을 잡는 어업. 권현망은 기본적으로 끌그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1개의 자루와 2개의 날개로 되어 있으며, 날개는 크게 오비기와 수비로 구분됨	쌍끌이(대형) 중충끌그물어업/ 표충끌그물어업, 멸치잡이어업, 멸치어업, 권현망어업,	용어개선이 필요한 어업으로 수산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있음. 향후 법령 정비시 반영 필요. ☆☆☆
27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한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	잠수어업/현행유지	☆☆
28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조망어업(漕 翼網漁業)	한자	조망을 활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빔트롤어업, 현행 유지	☆☆
29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선인망어업(boat scine, 船引網)	한자	배후리그물, 사람들이 어선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지인망과 동일하나 사람이 인력으로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과 배에서 당기는 점에 차이가 있음	배후릿그물어업, ‘배후리그물어업’, ‘배후리망어업’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0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들망어업	우리말+한자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 두고 대상물을 위로 유인하여 들어 올려서 잡는 어업을 들그물어업(들망)어업이라 함. 규모가 작은 것은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으며, 모서리에 길이가 같은 3-4가닥의 목줄을 내고, 이 목줄을 한데 묶은 곳에 돌출줄을 달거나 채를 달아서 어구를 들어올림.	들그물어업	☆☆☆
31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패류껍질어업	우리말+한자	소라·피빨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현행유지/조개류껍질어업	☆☆
32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간망어업(set net in shallow waters, fish fence, 建干網)	한자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물고기가 밀물 때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썰물 때에 걸리어 잡힘. 어구의 형태가 방패처럼 생겨 조수간만시 그물에 고기가 걸리도록 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임.	개막이그물어업, ‘개막이어업’	☆☆☆
33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망어업(健網漁業)	한자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길그물, 헛통, 어포부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어구를 활용하는 어업. 조업방법은 어포부측에 배를 매달아 놓고 어포부를 한쪽부터 들어올려 어포부의 한쪽으로 고기를 몰아 퍼올려 어획함.	소형 사각자릿그물어업	☆☆☆
34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승망류어업(昇網類漁業)	한자	승망을 활용하는 어업. 어구의 구성은 길그물, 헛통, 고리테그물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루그물 속에 등근테를 넣어 깔대기 모형으로 만들어 고기가 나오지 못하게 함. 과거에는 3각망, 5각망, 7각망, 호망 등을 승망어업으로 분류하였음	고리테 자릿그물류어업, ‘승망류어업’ ‘자루그물류어업’	☆☆☆
3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류어업	한자	대상물이 강한 조류 등의 외력에 밀려가게 하여 강제적으로 자루그물에	‘별린 자루그물류어업’/현행 유지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몰아넣어서 잡는 어업. 주목망, 장망, 낭장망이 이 어업에 속한다.		
36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gape net, 張網)	한자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며, 자루그물에는 형상을 유지해 주는 고리테가 있고 날개그물에 의해 유도된 고기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리테에 연결된 깔때기 모양의 허그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날개벌림 고리테자루그물 '넓은 자루 그물', '벌림그물' 등으로 순화	☆☆☆
37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주목망 (swing net on stakes, stow nets, 柱木網)	한자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말뚝벌림 자루그물, '나무기둥고정그물', '연안 고정식 함정그물'	☆☆☆
38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낭장망 (long bag set net, 囊長網)	한자	조류(潮流)가 빠른 곳에 설치하여 먼치를 잡는 어구(漁具).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닻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잡는 정지성(定置性) 어구이다.	날개벌림 자루그물, '긴자루 고정그물', '이동식 함정그물'	☆☆☆
39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지인망어업(beach seine, 地引網漁業)	한자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갯후릿그물어업, 갯후리어업	☆☆☆
40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해선망어업 (醞船網罟漁業)	한자	젓새우를 잡는 어업	배고정 기름대자루그물어업 하나닷 기름대자루그물어업/ '젓새우잡어업'	☆☆☆
41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새우조망어업 (--翼網漁業)	한자	새우조망 어업은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으로 생이 무리와 보리새우 무리를 어획.	새우 빔 트롤어업, 현행유지	☆☆
42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말목식종묘생산어업	우리말+한자	'말목식'은 연안의 깊이가 얇은 곳에서 두 줄의 말목을 박고 말목 위에 옆으로	말목식 종묘생산어업/현행 유지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나무를 걸쳐서 이 나무에 수하연을 늘 어뜨려 양식하는 방식을 말함.		
43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물양장 (lighters wharf, 物揚場)	한자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	‘소형선박 접안부두’, ‘소형부두’, ‘소형하역부두’	☆☆
44	수산업법시행령 제51조	선복량(船腹量)	한자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선적용량’	☆☆☆
45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제17조제1항 관련)	양식장형망선		‘형망(dredge, 桁網)’은 틀에 갈쿠리 를 붙여 해저생물을 채취하는 장치	양식장틀방그물선/ 양식장틀방선 ‘갈쿠리그물배’	☆☆☆
46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강선(steel ship, 鋼船)	한자	선체의 주요 구조(構造)의 재료가 강철인 선박	철강선(박)/현행 유지	☆
47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F.R.P 선	영어+한자	유리섬유를 골격으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로 만든 배(강화 플라스틱선)	강화플라스틱선/현행유지	☆
48	어업등록령 제9조제1항 제3호	어장도 편철장	한자	‘어장도(fishing chart, 漁場圖)’는 어떤 시공간에서 어떠한 어업이 행하여 지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 게 도시한 것 ‘(도면)편철(filing)장’은 등기신청시 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 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 미의 등기부 중 하나이다.	어장도면 보관장부	☆☆
4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호	컴프레서	영어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
5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건홍식(建築式)	한자	김양식을 위하여 대나무 등 다발을 갯벌에 세우는 방식	‘(김)통발식’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5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지주망홍(蜘蛛網篋)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의 모양이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는 방식	‘거미줄통발’	☆☆☆
5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부류망홍(浮流網篋)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이 고정식이 아니라 물속에 띄어서 설치하는 방식	‘부류통발’	☆☆☆
5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천해(淺海)	한자	얕은 바다. 대개 해안에서부터 수심 200미터 되는 부분까지를 이른다.	‘얕은 바다’	☆☆
5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수하연식(垂下延式)	한자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물을 달거나, 약 3m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	수직강하식/현행 유지	☆☆☆
55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구명부환 (life buoy, 救命浮環)	한자	생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물에 뜨는 둥근고리	‘구명부이’, ‘구명부표’, ‘구난부표’, ‘구명고리’	☆☆☆
56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체장(體長)	한자	개별 수산자원(물고기·어패류 등)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값. 수산자원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에 대비되는 한자어	일반용어인 ‘(몸)길이’로 순화	☆☆
57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제4항	자망(gill net, 刺網)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	‘걸그물’, ‘가시그물’ 혹은 ‘침그물’	☆☆☆
58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어(稚魚)	한자	어린 물고기	어린물고기	☆☆☆
59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8호	치패(稚貝)	한자	어린 어패류	어린 어패류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60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제5조	양륙항 (port of discharge, 揚陸港)	한자	운송되는 물품의 환적항 또는 최종 목적지	상륙항/현행 유지	☆☆
61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제8조제4항 제3호	어선감척(減隻)	한자	어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어선 감척사업’	‘어선감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
62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제11조	왕돌초(--礁)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 해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암초.	현행 유지. ‘초’는 ‘암초’로 순화검토	☆☆
63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제25조제1항	나잠어업(裸潛漁業)	한자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 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이다. 즉,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물 질을 하는 여성노동력 위주의 생업 생산체계이다.	맨몸잠수어업, ‘해녀어업’ 또는 ‘잠수어업’	☆☆
64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제51조제3호	해중림(sea jungle, 海中林)	한자	바다에 대형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 는 곳. 일반적으로 해조류가 잘 번 식하는 곳은 보통 저조선에서 수심 20m까지로 수산동물의 산란장이나 유생의 발육장으로서 중요함.	해조밭, 해조숲	☆☆
65	어선법 제3조 제5호	계선(繫船)	한자	선박을 육지에 매우 두는 일. 계류(繫 留)라고도 한다. 해운의 경기가 악화될 때 운항을 중지하고 항구에 정박하는 것도 계류라고 한다. 종류는 묘박(錨泊: 닻을 내려 정박하는 일)·부표(浮標)계 선·안벽(岸壁)계선의 3가지가 있다.	현행유지/계류선	☆☆
66	어선법 제3조 제5호	양묘(揚錨)	한자	닻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진다.	닻 올리기/현행 유지	☆☆
67	어선법 제4조	만재흡수선 (滿載吃水線)	한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積荷限度)의 흡수선. 만재	최대선(수)심선/ 현행유지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흘수선은 선박의 만재흘수선 규정에 의하여 선종별로, 또 같은 선박 일지라도 최대 만재흘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정 위치를 명확히 하고,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박의 중앙부 양현(兩舷)에 간현표(乾舷標: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68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3호	감항성(堪航性)	한자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상법은 감항능력(堪航能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있어서 내공능력(耐空能力)에 비견될 수 있음.	항해안전성/현행유지	☆
69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흘수(吃水)		수중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	선(수)심/현행유지	☆
70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폭로부/폭로갑판		선박의 외부장소로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	노출부/갑판/현행유지	☆
71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표	코퍼댐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청수 탱크와 유류 탱크 사이의 유밀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입시물막이 또는 현행유지	☆
7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축기(蓄氣)시험		보일러 안전밸브의 분출능력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공기흡입시험/현행유지	☆☆
7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도기시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용기에는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험	공기도출시험/ 현행유지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7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나목 1)	창구복포	한자	창구복포(艙口覆布, tarpulin)는 방수천의 일종으로 타르 칠한 방수천, 타르입힌 돛배를 가리킨다.	타르방수천	☆
75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정경기(整經機)	한자	날실을 필요한 울의 수만큼 가지런히 펴서 도투마리에 감는 기계	날실틀	☆
7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다)	벤딩머신	영어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은 강재나 파이프 등의 재료를 굽힘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절곡기	☆
77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밀링머신	영어	공작기계(工作機械)의 일종이며, 원형(圓形)의 날(cutter)이 있는 도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절삭(切削)한다. 평면, 홈(溝, groove), 기어(齒車, gear), 캠(cam) 등의 절삭에 사용한다.	회전절삭기계	☆
78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브로칭머신	영어	브로치는 가공하는 모양과 비슷한 많은 날이 차례로 치수를 늘리면서 출선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봉 모양의 공구로, 이것을 브로칭머신의 축에 장치하고, 축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겨서 가공한다.	브로칭공작기계 또는 절삭가공기계	☆
7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호빙머신	영어	기어를 잘삭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어절삭용 공작기계, 수직호빙머신과 수평호빙머신이 있다.	기어제작기계 또는 기어가공기계	☆
8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침탄로(浸炭爐)	한자	침탄은 강철의 탄소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를 강철표면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침탄을 하기 위하여 쌓은 노를 말함	탄소강화로/현행유지	☆
81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9 제1호 나목 5)	아우트리거(outrigger)	영어	이동식 크레인 또는 케이블 경운장치 등으로 작업할 때 안정을 위하여 프레	현행유지/현외부재(舷外浮材) /고정지주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임 등에 부착하여 길게 설치된 지주, 또는 하우스 등이 폭풍에 버티도록 하기 위해 지상에 고정된 장치		
8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	포란(brooding, 抱卵)	한자	동물이 산란한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체를 이용하여 알을 따뜻하게 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보통 조류에서 많이 발견되며, 게나 성게의 일부도 몸체로 알을 보호하지만 육자낭이나 입 속에서 알을 보호하는(구내보육, mouth brooding) 어류 종류가 있음.	알보호행위/현행유지	☆
8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방란(spawn, 放卵)	한자	어류, 양서류, 패류 등이 알을 낳는 것.	산란/현행유지	☆
8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호	어망(fishing net, 漁網)	한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그물	☆☆☆
85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호	어구(漁具)	한자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어획도구/ 현행유지	☆☆
86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2절 제목	어법(漁法)	한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망법이나 조어법 따위가 있다.	어획방법/ 현행유지	☆☆
87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호	수질오탁행위(水質汚濁行爲)	한자	오탁(pollution, 汚濁) : 대기 또는 물이나 인체 등 동·식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	오탁을 오염(汚染)으로 개선	☆☆☆
88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제1호	매립행위(埋立行爲)	한자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매움’으로 순화.	‘매움 행위’	☆☆
89	낙시어선업법 제4조 제2항	교부	한자	물건을 인도하는 일.	발급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90	낙시어선업법 제12조의2 제2항	당해	한자	바로 그것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해당	☆☆☆
91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접	한자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인접	☆☆
9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개측(改測)	한자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 점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것	다시 측정 또는 새로 측정을 실시하는 것	☆☆
93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전면	한자	물건의 앞쪽면	앞면	☆
94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입거	한자	배를 선거(船渠)에 넣음	선체입고/ 현행유지	☆☆
95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상가(上架)	한자	배를 선거(船渠) 안 받침대 위에 놓음	선체올림/ 현행유지	☆☆
9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여자망(緋子網)	한자어	씨줄과 날줄을 2가닥씩 꼬아 가면서 일정한 간격마다 서로 엮어 그 물코가 직사각형이 되게 짠 그물로 멸치 등 작은 고기를 잡는데 쓰임	교차 꼬임사각그물/ 현행유지	☆☆☆
9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직망(織網)	한자어	편자사 또는 2자사를 강하게 꼬아서 교차시켜 만든 그물	교차사각그물/현행유지	☆☆☆
98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 제2조	양륙량(揚陸量)	한자어	수산자원의 어획량	어획량	☆
99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저서동물(底棲動物)/저서어족(底棲魚族)	한자어	주로 저인망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족으로 세계 도처의 대륙붕 및 그 연변에서 어획되는 어족을 말함	저층생활물고기/저층생활어족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00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	거양(擧揚)	한자어	높이 들어올림, 칭찬하여 높임	고양/고취	☆☆☆
101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패각(貝殼)	한자어	연체동물에서 연체를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분비형성물	껍테기	☆☆
102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굴패각	우리말+한자어	굴의 몸을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형성물	굴 껍테기	☆☆☆
10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모식도(模式圖)	한자어	어떤 물건 또는 구조물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도식도, 개략도	☆
104	어촌·어항법 제2조	잔교(棧橋)	한자어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연결다리	☆
105	어촌·어항법 제2조	부잔교(浮棧橋)	한자어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뜬다리, 선창, 발판	☆
106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객토(客土)	한자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불량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의 지력(地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적당한 성질을 가진 흙을 가져다 넣는 일.	새 흙 넣기, 흙갈이/현행유지	☆☆
10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유어기반(遊漁基盤)	한자어	체험어업기반	체험어업기반	☆☆
108		지지줄 자망(--- 刺網)	우리말+한자어	자망의 종류	지지줄 걸그물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09	내수면어업법 제2조	사유수면	한자어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	현행유지/개인수면	내수면어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임 ☆
110		연승수하식	한자어	양식의 종류	연승의 우리말인 주낙을 사용하여 '주낙수중매달기방식'으로 순화	☆☆☆
111		죽홍식(竹筴式)	한자어	대나무를 쫓개 발을 만들고 수면에 띄워 양쪽을 고정시켜 대발에 포자를 부착케 하는 양식방법	통발식 또는 대나무발식	순우리말로 순화 ☆
112		자연순치시설(自然馴致施設)	한자어	어류 또는 패류가 적응하도록 하는 시설	자연적응시설	보다 쉬운 한자어로 순화 ☆
113	구수산업법	석조망(石繰網)	한자어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친 후 돌을 던져 어군의 도피를 막으면서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	현행유지 또는 유낭두릿그물, 두릿쥬그물	☆☆☆
114	구수산업법	양조망(揚繰網)	한자어	두릿그물의 하나. 물고기 떼를 둘러싸기만 하고 아래 것을 조이지 않는 형태의 선망이다.	현행유지 또는 무낭두릿그물	☆☆☆
115		건착망(巾着網)	한자어	고기그물의 한, 양조망을 개량한 것. 큰 띠 모양의 그물로 고기떼를 뺨 둘러싸고 그물의 아랫부분을 빨리 줄라매기 위해서 그물에 금속 고리를 많이 달아,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음. 마치 주머니 주둥이를 줄라매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물안의 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 다랑어·고등어·가나랭이·정어리 잡이 따위에 많이 쓰임.	현행유지 또는 두건그물, 무낭두릿쥬그물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16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부칙제8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각망(角網)	한자어	대모양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여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구	직각길그물/ 현행유지	☆☆☆
117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	부망(敷網)	한자어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펼쳐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	들그물	들망어업과의 비교 필요. ☆☆☆
118		종패망(種貝網)	한자어	씨조개그물	씨조개그물	☆☆☆
11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바이오매스(biomass)	영어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물량, 생물체량이라고도 한다.	생물량, 생물체량	영어병기 검토 ☆
120		박신(剝身)	한자어	패각만을 제거한 근육, 내장, 외투막, 생식소 등의 총칭	껍질제거	☆☆☆
121		자담(自擔)	한자어	자기부담	자기부담	☆☆☆
122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내용연수(耐用年數)	한자어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활용가능기간, 내구연수, 내구연한, 현행유지	회계학 등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
123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제29조	어황(漁況)	한자어	어획 대상 자원의 수량이나 어획 가능한 밀도의 수준	어획상황	☆☆
12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제3조	레토르트 식품(retort --)	영어+한자어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이다. 조리가공한 여러 가지 식품을 일종의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압가열살균술(retort)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살균하여,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열처리식품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25		종패	한자어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조개	씨조개	☆☆☆
126		어분(魚粉)	한자어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부터 기름을 짠 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가루. 생선을 전체 또는 일부를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부분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어체의 가공처리과정에서 부생(副生)하는 머리, 뼈, 내장 등을 원료로 한 것을 황박이라 하고 어분과는 구별한다. 붉은살 생선으로부터 만든 것을 브라운 밀(brown meal), 흰살 생선으로부터의 것을 화이트밀(white meal)이라 한다. 어분은 가축이나 양식어에게 주는 배합사료의 원료가 된다.	생선가루	☆☆
127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사수(射水)	한자어	물을 분사함	물 분사	☆☆
128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친수공간	한자어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등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수변공간	수변공간/ 현행유지	☆☆
129		어정선	한자어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현행유지	☆☆
13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양망(揚網)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물끌기/ 현행유지	설명병기도 가능 ☆☆☆
13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어유(魚油)	한자	생선기름	생선기름	☆☆
132		자숙품(煮熟品)	한자어	원물을 세척하여 삶은 것을 일컫는 말	삶은 물품	☆☆☆
132		피레트(fillet)	한자어+영어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고기 조각	(뼈를 발라낸)살코기	☆☆

1-1.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개선방안 마련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3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로(漁撈)	한자	고기잡이	고기잡이	☆☆
134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크랭크축(crankshaft軸)	외래어+한자어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곡축(曲軸) /현행 유지	☆
135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커플링(Coupling)	외래어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축이음 /현행유지	☆
136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부칙16930호>	어살어업(漁箭漁業)	한자어	어살류[漁箭類]의 정지망 어구는 수심이 얇은 저질(底質)에 꽂은 나무나 대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엮어 세우거나 박아서 어류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기 울타리를 만들어 포획하는 전통 어구 혹은 어업 중의 하나	울(타리)그물 어업	☆☆☆
13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수망(deep net, 受網)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에 막대를 달아 올려 잡는 어구.	반두그물	‘반두’와 비교 필요. ☆☆☆
138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격벽(隔壁, partition wall)	한자어	선박 용어로서는 선체의 내부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간막이 벽을 가리킨다. 격벽은 선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기름 등의 탱크로 쓰기 위하여, 단순히 구획을 나누기 위하여 설치함	칸막이 벽 /현행유지	☆☆☆
139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수밀성 (watertightness, 水密性)	한자어	기계 또는 장치의 어느 부분에 채워진 물이, 밖으로 새지 아니하고 밀봉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작용	방수성 /현행유지	이해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순화의견이지만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함.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40	구사료관리법시행령 제10조	어즙(魚汁)	한자	생선 통조림 또는 어육가공공장에서 불가식 부위나 비식용 생선으로부터 어분을 만들 때 생기는 끈끈하고 냄새가 나는 액체를 어즙이라 함	생선즙	☆☆☆
141	구어선종업제한등에 관한규정	어렵(漁獵)	한자	고기잡이	고기잡이	☆☆☆
142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데릭(Derrick)	외래어	짐을 동력을 사용해 매달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이며, 마스트(mast) 또는 붐(boom)이 있고 원동기를 따로 설치해 와이어로프에 의해 조작되는 것	데릭기중기/현행유지	기중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중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143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지브크레인(Jib Crane)	외래어	집(jib)이 달린 크레인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旋回)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선회크레인/현행유지	☆
144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갯닦기	우리말	양식하는 해조류의 포자나 어패류 따위의 치어가 붙을 수 있도록 바윗면을 깨끗이 닦아 주는 일, 양식장의 암반이나 돌에 양식 생물이 부착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일	바위 닦기	-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검토함. ☆☆☆
145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묘쇄고(錨鎖庫)	한자어	닻사슬을 넣어 두는 창고.	닻사슬 창고	☆☆☆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1호	정치망어업 (定置網漁業)	한자	어구는 크게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바깥 쪽으로 길게 뻗힌 길그물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우리(통그물)로 어군을 유도하여 잡는 어업	자릿그물어업, 고정망어업/고정그물어업, 고정식어업, 자리그물	☆☆☆
2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연승(long line, 延繩)	한 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어업이다.	‘연승(延繩)’은 한자어이며, 주낙은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 주낙 ’으로 통일	☆☆☆
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유어장(遊漁場)	한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	체험관광어장/ 현행유지	☆☆☆
4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낙망(落網)	한자	정치망의 한 종류로, 통그물을 헛통과 원통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경계에 비탈그물을 설치하여 원통으로 들어간 고기가 되돌아 나오기가 힘들도록 제작된 어구	비탈 자릿그물, ‘합정망’ 또는 ‘합정그물’	☆☆☆.
5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승망(fyke net, 柵網)	한 자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그물이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망의 한 종류임.	고리테 자릿그물,	☆☆☆
6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죽방렴 (bamboo weirs, 竹防簾)	한 자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대나무 어사리, 방전)	대나무발 자릿그물, ‘대나무발어업’/ 현행유지	☆☆☆
7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	채룡(-籠)	우리말+한자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틀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전복이나 가리비 등 치패를 넣어 성장시키는 양식에 사용되는 통	‘그물 망태기’/ 현행유지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	한자	바다 밑에 서식하는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 끌그물[曳網]류에 속하는 그물어구	저층끌그물 , 저층끌망	☆☆☆
9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어업 (底引網漁業)	한자	동력선으로 바다 밑에 있는 어류 등을 어획하기 위해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업.	저층끌그물어업 , 저층끌망어업	☆☆☆
1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우리말+한자	60t이상 어선이 하는 저인망어업을 대형저인망어업이라 하고, 1척으로 하는 것을 외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끌그물어법이 아닌 후릿그물어법을 사용하므로 용어개선 및 향후 법령정비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일척식 대형배후릿그물어업/ 일척식 대형선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그물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망어업	☆☆☆
1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선망어업	한자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fish shoal)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에 차차 그 범위를 좁혀서 떠 올리는 어법을 두릿그물(선망)어법이라 함.	두릿그물어업	☆☆☆
12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망어업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인 자망을 이용한 어업, 대상물이 그물코에 꽂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걸그물어업 , 고정걸이그물어업	☆☆☆
13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유자망(流刺網)	한자	긴 대모양의 그물 상부에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부착하여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걸어구류의 어업.	흘림걸그물	☆☆☆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안강망어업	한자	안강(鮫鱈)은 아귀과의 바다 물고기의 명칭임.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조류에 의해 고기가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 안강망은 우리 나라 제래식 어망인 중선망(中船網)과 어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보급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일중선(日中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돛(고정) 자루그물어업/ 하나돛 자루그물어업	☆☆☆
1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봉수망어업	한자	사각형 그물의 한 모서리에 뜰과 테의 역할을 겸하는 뜰대를 붙여 수면에 지지하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발돌[沈子]을 달아 가라앉혔다가 어군(魚群)이 그물 위에 모이면 발돌 부분에 연결된 뜰줄을 당김으로써 발돌부분을 들어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을 이용한 어업	채들그물어업, 꽂치어업, 꽂치잡이어업	☆☆☆
1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초망(抄網)	한자	‘채그물’의 북한어. 채그물은 지나가는 물고기를 물 밑으로부터 떠올려 잡는 그물을 말함.	채그물	☆☆☆
17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리돔들망어업	우리말+한자	평평한 그물을 퍼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잡는 방법이며 비교적 작은 어구는 별다른 기구가 없으나 대형화하면 어구를 올리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어업	자리돔들그물어업	☆☆☆
1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연승어업(延繩漁業)	한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어획 대상물을 잡는 어업.	주낙어업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9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형망어업(珩網漁業)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퀴나 썬레 같은 것을 부착한 것으로 썬레에 의해 펄이나 모래 속에 묻혀 있는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틀방그물어업 , 썬레그물어업, 쓰레그물어업	☆☆☆
20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선인망어업(boat seine, 船引網)	한자	배후리그물, 사람들이 어선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지인망과 동일하나 사람이 인력으로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과 배에서 당기는 점에 차이가 있음	배후릿그물어업 , '배후리그물어업', '배후리망어업'	☆☆☆
21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들망어업	우리말+한자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 두고 대상물을 위로 유인하여 들어 올려서 잡는 어업을 들그물어업(들망)어업이라 함. 규모가 작은 것은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으며, 모서리에 길이가 같은 3-4가닥의 목줄을 내고, 이 목줄을 한데 묶은 곳에 돌출줄을 달거나 채를 달아서 어구를 들어올림.	들그물어업	☆☆☆
22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망어업(set net in shallow waters, fish fence, 建干網)	한자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물고기가 밀물 때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썰물 때에 걸리어 잡힘. 어구의 형태가 방패처럼 생겨 조수간만시 그물에 고기가 걸리도록 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임.	개막이그물어업 , '개막이어업'	☆☆☆
23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망어업(健網漁業)	한자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길그물, 헛통, 어포부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어구를 활용하는 어업. 조업방법은 어포부측에 배를 매달아 놓고 어포부를 한쪽부터	소형 사각자릿그물어업	☆☆☆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들어올려 어포부의 한쪽으로 고기를 몰아 퍼올려 어획함.		
24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승망류어업(昇網類漁業)	한자	승망을 활용하는 어업. 어구의 구성은 길그물, 헛통, 고리테그물 등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루그물 속에 등근테를 넣어 깔대기 모형으로 만들어 고기가 나오지 못하게 함. 과거에는 3각망, 5각망, 7각망, 호망 등을 승망어업으로 분류하였음	고리테 자릿그물류어업 , ‘승망류어업’ ‘자루그물류어업’	☆☆☆
2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류어업	한자	대상물이 강한 조류 등의 외력에 밀려가게 하여 강제적으로 자루그물에 몰아넣어서 잡는 어업. 주목망, 장망, 낭장망이 이 어업에 속한다.	‘벌린 자루그물류어업’ /현행 유지	☆☆☆
26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gape net, 張網)	한자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며, 자루그물에는 형상을 유지해 주는 고리테가 있고 날개그물에 의해 유도된 고기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리테에 연결된 깔때기 모양의 허그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날개벌림 고리테자루그물 ‘넓은 자루 그물’, ‘벌림그물’ 등으로 순화	☆☆☆
27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주목망 (swing net on stakes, stow nets, 柱木網)	한자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채래식 어망.	말뚝벌림 자루그물 , ‘나무기둥고정그물’, ‘연안 고정식 함정그물’	☆☆☆
28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낭장망 (long bag set net, 囊長網)	한자	조류(潮流)가 빠른 곳에 설치하여 멸치를 잡는 어구(漁具).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닻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잡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다.	날개벌림 자루그물 , ‘긴자루 고정그물’, ‘이동식 함정그물’	☆☆☆
29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지인망어업(beach seine, 地引網漁業)	한자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갯후릿그물어업 , 갯후리어업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0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해선망어업 (醞船網望漁業)	한자	젓새우를 잡는 어업	배고정 기름대지루그물어업 하나룻 기름대지루그물어업/ ‘젓새우잡어업’	☆☆☆
31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말뚝식종묘생산어업	우리말+한자	‘말뚝식’은 연안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 두 줄의 말뚝을 박고 말뚝 위에 옆으로 나무를 걸쳐서 이 나무에 수하연을 늘어뜨려 양식하는 방식을 말함.	말뚝식 종묘생산어업/현행 유지	☆☆☆
32	수산업법시행령 제51조	선복량(船腹量)	한자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선적용량’	☆☆☆
33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제17조제1항 관련)	양식장형망선		‘형망(dredge, 桁網)’은 틀에 갈퀴리를 붙여 해저생물을 채취하는 장치	양식장틀방그물선/양식장틀방선 ‘갈퀴리그물배’	☆☆☆
3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건홍식(建筍式)	한자	김양식을 위하여 대나무 등 다발을 갯벌에 세우는 방식	‘(김)통발식’	☆☆☆
3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지주망홍(蜘蛛網筍)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의 모양이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는 방식	‘거미줄통발’	☆☆☆
3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부류망홍(浮流網筍)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이 고정식이 아니라 물속에 띄워서 설치하는 방식	‘부류통발’	☆☆☆
3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수하연식(垂下筵式)	한자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롱을 달거나, 약 3m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	수직강하식/현행 유지	☆☆☆
38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구명부환 (life buoy, 救命浮環)	한자	생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물에 뜨는 둥근고리	‘구명부이’, ‘구명부표’, ‘구난부표’, ‘구명고리’	☆☆☆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9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제4항	자망(gill net, 刺網)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	‘ 걸그물 ’, ‘가시그물’ 혹은 ‘ 침그물 ’	☆☆☆
40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어(稚魚)	한자	어린 물고기	어린물고기	☆☆☆
41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패(稚貝)	한자	어린 어패류	어린 어패류	☆☆☆
42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8조제4항 제3호	어선감척(減隻)	한자	어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어선 감척사업’	‘어선감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
4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어망(fishing net, 漁網)	한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그물	☆☆☆
44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호	수질오탁행위 (水質汚濁行爲)	한자	오탁(pollution, 汚濁) : 대기 또는 물이나 인체 등 동·식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유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	오탁을 오염(汚染)으로 개선	☆☆☆
45	낙시어선업법 제12조의2 제2항	당해	한자	바로 그것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해당	☆☆☆
46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1	여자망(緋子網)	한자어	씨줄과 날줄을 2가닥씩 꼬아 가면서 일정한 간격마다 서로 엮어 그물코가 직사각형이 되게 짠 그물로 멸치 등 작은 고기를 잡는데 쓰임	교차 꼬임사각그물/현행유지	☆☆☆
47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1	직망(織網)	한자어	편자사 또는 2자사를 강하게 꼬아서 교차시켜 만든 그물	교차사각그물/현행유지	☆☆☆
48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	거양(擧揚)	한자어	높이 들어올림, 칭찬하여 높임	고양/고취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49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굴괘각	우리말+한자어	굴의 몸을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형성물	굴 껍데기	☆☆☆
50		지지줄 자망(--- 刺網)	우리말+한자어	자망의 종류	지지줄 걸그물	☆☆☆
51		연승수하식	한자어	양식의 종류	연승의 우리말인 주낙을 사용하여 '주낙수중매달기방식'으로 순화	☆☆☆
52	구수산업법	석조망(石線網)	한자어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 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돌 러친 후 돌을 던져 어군의 도피를 막으면서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 는 어업	현행유지 또는 유낭두릿그물, 두릿쥘그물	☆☆☆
53		양조망(揚繰網)	한자어	두릿그물의 하나. 물고기 떼를 돌 러싸기만 하고 아래 깃을 조이지 않는 형태의 선망이다.	현행유지 또는 무낭두릿그물	☆☆☆
54		건착망(巾着網)	한자어	고기그물의 한, 양조망을 개량한 것. 큰 띠 모양의 그물로 고기떼를 뺨 둘러싸고 그물의 아랫부분을 빨리 줄라매기 위해서 그물에 금속 고리를 많이 달아,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음. 마치 주머니 주둥이를 줄라매는 것 과 비슷한 것으로, 그물안의 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 다랑어· 고등어·가다랭이·정어리 잡이 따 위에 많이 쓰임.	현행유지 또는 두건그물, 무낭두릿쥘그물	☆☆☆
5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부칙제8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각망(角網)	한자어	대모망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 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여	직각길그물/ 현행유지	☆☆☆

1-1-1.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구		
56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	부망(敷網)	한자어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펴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	들그물	들망어업과의 비교 필요. ☆☆☆
57		종패망(種貝網)	한자어	씨조개그물	씨조개그물	☆☆☆
58		박신(剝身)	한자어	패각만을 제거한 근육, 내장, 외투막, 생식소 등의 총칭	껍질제거	☆☆☆
59		자담(自擔)	한자어	자기부담	자기부담	☆☆☆
60		종패	한자어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조개	씨조개	☆☆☆
6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1	양망(揚網)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물끌기/ 현행유지	설명병기도 가능 ☆☆☆
62		자숙품(煮熟品)	한자어	원물을 세척하여 삶은 것을 일컫는 말	삶은 물품	☆☆☆
63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부칙16930호>	어살어업(漁箭漁業)	한자어	어살류[漁箭類]의 정치망 어구는 수심이 얕은 저질(底質)에 곧은 나무나 대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엮어 세우거나 박아서 어류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기 울타리를 만들어 포획하는 전통 어구 혹은 어업 중의 하나	울(타리)그물 어업	☆☆☆
64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수망(deep net, 受網)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에 막대를 달아 올려 잡는 어구.	반두그물	‘반두’와 비교 필요. ☆☆☆
65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격벽(隔壁, partition wall)	한자어	선박 용어로서는 선체의 내부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간막이 벽을 가리킨다. 격벽은 선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기름 등의 탱크로 쓰기 위하여, 단순히 구획을 나누기 위하여 설치함	칸막이 벽/현행유지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66	구사료관리법시행령 제10조	어즙(魚汁)	한자	생선 통조림 또는 어육가공공장에서 불가식 부위나 비식용 생선으로부터 어분을 만들 때 생기는 끈끈하고 냄새가 나는 액체를 어즙이라 함	생선즙	☆☆☆
67	구어선종업제한등에 관한 규정	어렵(漁獵)	한자	고기잡이	고기잡이	☆☆☆
68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갯닦기	우리말	양식하는 해조류의 포자나 어패류 따위의 치어가 붙을 수 있도록 바윗면을 깨끗이 닦아 주는 일, 양식장의 암반이나 돌에 양식 생물이 부착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일	바위 닦기	-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검토함. ☆☆☆
69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묘쇄고(錨鎖庫)	한자어	닷사슬을 넣어 두는 창고.	닷사슬 창고	☆☆☆

1-1-2. 바꿀 필요성이 있는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수산업법 제2조제4호	호료(糊料)	한자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촉을 좋게 하는 물질. 천연 호료와 합성 호료가 있으며, 식품에 넣으면 점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지는 물질	접착원료/접착풀원료/현행 유지	(설명을 붙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
2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구획어업(區劃漁業)	한자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	구역어업/현행유지	☆☆

1-1-2. 바깥 필요성이 있는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수하식 (hanging culture , 垂下式)양식어업	한자	양식 대상 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 바닥 양성이나 다른 양성법으로서 양성하는 것보다 생장이 좋고,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수중매달기’ /현행 유지	☆☆
4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	한자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방식’양식어업	☆☆
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한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	잠수어업/현행유지	☆☆
6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조망어업(漕 翼網漁業)	한자	조망을 활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빔트롤어업, 현행 유지	☆☆
7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패류껍질어업	우리말+한자	소라·피랴고등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현행유지/조개류껍질어업	☆☆
8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새우조망어업 (--翼網漁業)	한자	새우조망 어업은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으로 생이 무리와 보리새우 무리를 어획.	새우 빔 트롤어업, 현행유지	☆☆
9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물양장 (lighters wharf , 物揚場)	한자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	‘소형선박 접안부두’, ‘소형부두’, ‘소형하역부두’	☆☆
10	어업등록령 제9조제1항 제3호	어장도 편철장	한자	‘어장도(fishing chart , 漁場圖)’는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어업이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시한 것 ‘(도면)편철(filing)장’은 등기신청시	어장도면 보관장부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 중 하나이다.		
1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호	컴프레서	영어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
1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천해(淺海)	한자	얕은 바다. 대개 해안에서부터 수심 200미터 되는 부분까지를 이른다.	‘얕은 바다’	☆☆
1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체장(體長)	한자	개별 수산자원(물고기·어패류 등)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값. 수산자원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에 대비되는 한자어	일반용어인 ‘(몸)길이’로 순화	☆☆
14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조	양륙항 (port of discharge, 揚陸港)	한자	운송되는 물품의 환적항 또는 최종 목적지	상륙항/현행 유지	☆☆
15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1조	왕돌초(--礁)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해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암초.	현행 유지. ‘초’는 ‘암초’로 순화검토	☆☆
16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나잠어업(裸潛漁業)	한자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즉,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 여성노동력 위주의 생업 생산체계이다.	맨몸잠수어업 , ‘해녀어업’ 또는 ‘잠수어업’	☆☆
17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3호	해중림(sea jungle, 海中林)	한자	바다에 대형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곳. 일반적으로 해조류가 잘 번식하는 곳은 보통 저조선에서 수심 20m까지로 수산동물의 산란장이나 유생의 발육장으로서 중요함.	해조밭 , 해조숲	☆☆
18	어선법 제3조 제5호	계선(繫船)	한자	선박을 육지에 매우 두는 일. 계류(繫留)라고도 한다. 해운의 경기가	현행유지/계류선	☆☆

1-1-2. 바뀔 필요성이 있는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악화될 때 운항을 중지하고 항구에 정박하는 것도 계류라고 한다. 종류는 묘박(錨泊)을 내려 정박하는 일 · 부표(浮標)계선 · 안벽(岸壁)계선의 3가지가 있다.		
19	어선법 제3조 제5호	양묘(揚錨)	한자	닻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진다.	닻 올리기/현행 유지	☆☆
2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축기(蓄氣)시험		보일러 안전밸브의 분출능력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공기흡입시험/현행유지	☆☆
2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호	어구(漁具)	한자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어획도구/현행유지	☆☆
22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2절 제목	어법(漁法)	한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망법이나 조어법 따위가 있다.	어획방법/현행유지	☆☆
23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 제1호	매립행위(埋立行爲)	한자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매움’으로 순화.	‘매움 행위’	☆☆
24	낙시어선업법 제4조 제2항	교부	한자	물건을 인도하는 일.	발급	☆☆
25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접	한자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인접	☆☆
26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개측(改測)	한자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 점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것	다시 측정 또는 새로 측정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7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입거	한자	배를 선거(船渠)에 넣음	선체입고/ 현행유지	☆☆
28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상가(上架)	한자	배를 선거(船渠) 안 받침대 위에 놓음	선체올림/ 현행유지	☆☆
29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저서동물(底棲動物)/저서어족(底棲魚族)	한자어	주로 저인망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족으로 세계 도처의 대륙붕 및 그 연변에서 어획되는 어족을 말함	저층생활물고기/저층생활어족	☆☆
30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패각(貝殼)	한자어	연체동물에서 연체를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분비형성물	껍데기	☆☆
3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객토(客土)	한자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불량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의 지력(地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적당한 성질을 가진 흙을 가져다 넣는 일.	새 흙 넣기, 흙갈이/현행유지	☆☆
3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유어기반(遊漁基盤)	한자어	체험어업기반	체험어업기반	☆☆
33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제29조	어황(漁況)	한자어	어획 대상 자원의 수량이나 어획 가능한 밀도의 수준	어획상황	☆☆
34		어분(魚粉)	한자어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부터 기름을 짠 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가루. 생선을 전체 또는 일부를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부분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어체의 가공처리공정에서 부생(副生)하는 머리, 뼈, 내장 등을 원료로 한 것을 황박이라 하고 어분과는 구별한다. 붉은살 생	생선가루	☆☆

1-1-3.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선으로부터 만든 것을 브라운 밀(brown meal), 흰쌀 생선으로부터의 것을 화이트밀(white meal)이라 한다. 어분은 가축이나 양식어에게 주는 배합사료의 원료가 된다.		
35	어선법시행규칙[별표2]	사수(射水)	한자어	물을 분사함	물 분사	☆☆
36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친수공간	한자어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등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수변공간	수변공간/ 현행유지	☆☆
37		어정선	한자어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현행유지	☆☆
38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어유(魚油)	한자	생선기름	생선기름	☆☆
39		피레트(fillet)	한자어+영어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	(뼈를 발라낸)살코기	☆☆
4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로(漁撈)	한자	고기잡이	고기잡이	☆☆

1-1-3.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수산업법 제2조제18호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한자	밀물 경계선 고조선 공유수면 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의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 고조선(高潮)	최고수위선/현행유지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線, high-water line)이라고도 하며, 공유수면에 포함되는 바닷가와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2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6호	트롤어업 (trawls 漁業)	영어+한자	동력선으로 전개관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동력그물어업/ 현행유지	☆
3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제69조 관련)	강선(steel ship, 鋼船)	한자	선체의 주요 구조(構造)의 재료가 강철인 선박	철강선(박)/현행 유지	☆
4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제69조 관련)	F.R.P 선	영어+한자	유리섬유를 골격으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로 만든 배(강화 플라스틱선)	강화플라스틱선/현행유지	☆
5	어선법 제4조	만재흘수선 (滿載吃水線)	한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積荷限度)의 흘수선.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만재흘수선 규정에 의하여 선종별로, 또 같은 선박 일지라도 최대 만재흘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정 위치를 명확히 하고,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박의 중앙부 양현(兩舷)에 건현표(乾舷標: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선(수)심선/ 현행유지	☆
6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3호	감항성(堪航性)	한자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상법은 감항능력(堪航能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있어서 내공능력(耐空能力)에 비견될 수 있음.	항해안전성/현행유지	☆

1-1-3.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7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흡수(吃水)		수중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	선(수)심/현행유지	☆
8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폭로부/폭로갑판		선박의 외부장소로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	노출부/갑판/현행유지	☆
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표	코퍼댐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청수 탱크와 유류 탱크 사이의 유밀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물막이 또는 현행유지	☆
1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도기시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용기에는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험	공기도출시험/ 현행유지	☆
11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나목 1)	창구복포	한자	창구복포(艙口覆布, tarpulin)는 방수천의 일종으로 타르 칠한 방수천, 타르입힌 돛배를 가리킨다.	타르방수천	☆
1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정경기(整經機)	한자	날실을 필요한 올의 수만큼 가지런히 펴서 도투마리에 감는 기계	날실틀	☆
1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다)	벤딩머신	영어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은 강재나 파이프 등의 재료를 굽힘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절곡기	☆
1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밀링머신	영어	공작기계(工作機械)의 일종이며, 원형(圓形)의 날(cutter)이 있는 도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절삭(切削)한다. 평면, 홈(溝, groove), 기어(齒車, gear), 캠(cam) 등의 절삭에 사용한다.	회전절삭기계	☆
15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바)	브로칭머신	영어	브로치는 가공하는 모양과 비슷한 많은 날이 차례로 치수를 늘리면서 출선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봉 모	브로칭공작기계 또는 절삭가공기계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양의 공구로, 이것을 브로칭머신의 축에 장치하고, 축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겨서 가공한다.		
1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호빙머신	영어	기어를 잘삭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어절삭용 공작기계, 수직호빙머신과 수평호빙머신이 있다.	기어제작기계 또는 기어가공기계	☆
17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침탄로(浸炭爐)	한자	침탄은 강철의 탄소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를 강철표면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침탄을 하기 위하여 쌓은 노를 말함	탄소강화로/현행유지	☆
18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9 제1호 나목 5)	아우트리거(outrigger)	영어	이동식 크레인 또는 케이블 경운장치 등으로 작업할 때 안정을 위하여 프레임 등에 부착하여 길게 설치된 지주, 또는 하우스 등이 폭풍에 버티도록 하기 위해 지상에 고정된 장치	현행유지/현외부재(舷外浮材) /고정지주	☆
19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	포란(brooding, 抱卵)	한자	동물이 산란한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체를 이용하여 알을 따뜻하게 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보통 조류에서 많이 발견되며, 계나 성계의 일부도 몸체로 알을 보호하지만 육자낭이나 입 속에서 알을 보호하는(구내보육, mouth brooding) 어류 종류가 있음.	알보호행위/현행유지	☆
2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방란(spawn, 放卵)	한자	어류, 양서류, 패류 등이 알을 낳는 것.	산란/현행유지	☆
21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전면	한자	물건의 앞쪽면	앞면	☆
22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 제2조	양륙량(揚陸量)	한자어	수산자원의 어획량	어획량	☆

1-1-3. 타법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모식도(模式圖)	한자어	어떤 물건 또는 구조물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도식도, 개략도	☆
24	어촌·어항법 제2조	잔교(棧橋)	한자어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연결다리	☆
25	어촌·어항법 제2조	부잔교(浮棧橋)	한자어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뜬다리, 선창, 발판	☆
26	내수면어업법 제2조	사유수면	한자어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	현행유지/개인수면	내수면어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임 ☆
27		죽홍식(竹筴式)	한자어	대나무를 쪼개 발을 만들고 수면에 띄워 양쪽을 고정시켜 대발에 포자를 부착케 하는 양식방법	통발식 또는 대나무발식	순우리말로 순화 ☆
28		자연순치시설(自然馴致施設)	한자어	어류 또는 패류가 적응하도록 하는 시설	자연적응시설	보다 쉬운 한자어로 순화 ☆
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바이오매스(biomass)	영어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물량, 생물체량이라고도 한다.	생물량, 생물체량	영어병기 검토 ☆
30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내용연수(耐用年數)	한자어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활용가능기간, 내구연수, 내구연한, 현행유지	회계학 등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
3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제3조	레토르트 식품(retort --)	영어+한자어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이다. 조리가공한 여러 가지 식품을 일종의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압가열살균술(retort)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살균하여,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열처리식품	☆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크랭크축(crankshaft軸)	외래어+한자어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곡축(曲軸) /현행 유지	☆
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커플링(Coupling)	외래어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축이음 /현행유지	☆
34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수밀성 (watertightness, 水密性)	한자어	기계 또는 장치의 어느 부분에 채워진 물이, 밖으로 새지 아니하고 밀봉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작용	방수성 /현행유지	이해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순화의견이지만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함. ☆
35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데릭(Derrick)	외래어	짐을 동력을 사용해 매달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이며, 마스트(mast) 또는 붐(boom)이 있고 원동기를 따로 설치해 와이어로프에 의해 조작되는 것	데릭기중기 /현행유지	기중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중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36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지브크레인(Jib Crane)	외래어	집(jib)이 달린 크레인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旋回)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선회크레인 /현행유지	☆

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설명병기 가능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뜸	순우리말	물에 띄워서 그물, 낚시 따위의 어구를 위쪽으로 지탱하는 데에 쓰는	현행유지(설명병기)	- 법령에 쓰이는 순우리말이지만, 일반적

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설명병기 가능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물건.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		으로 쓰이는 용어와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구 지탱을 위한 물건)으로 병기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투석식(投石式)	한자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으로서 조개껍데기, 돌 따위를 바다에 뿌려서 조개류나 해조류를 기르는 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바다에 뿌려 기르는 양식 방법)으로 설명병기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간이식(簡易式)	한자	수하식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간단한 양식어업 방식)으로 설명병기 가능 (검토필요)
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살포식(撒布式)	한자	살포식은 수심 약 40m 이내의 모래와 펄이 섞인 바닥에서 서식하는 패류의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으로 설명병기
5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합사기(合絲機)	한자	실을 2가닥 이상 합하는 것, 또는 그 기계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실을 합치는 기계)로 설명병기
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연사기(撚絲機)	한자	정방기(精紡機)에서 뽑아진 실을 홑실(單絲)이라고 하는데, 이 홑실을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가닥으로 합쳐 꼬는 기계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홑실 꼬는 기계)로 설명병기
7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질화로(窒化爐)	한자	질화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으로서 질소를 강(鋼)에 침투시켜 그 표면을 경화시키는 조작으로 공작물을 정밀하게 다듬질한 다음 암모니아가스 속에 500℃ 정도로 18~19시간 가열하여 자연스럽게 냉각시킨다. 이 질화 과정이 진행되는 노를 말한다.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8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어초(the fish shelter, 魚礁)	한자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번식하는 바다 밑의 도도룩한 곳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물고기 번식장소)로 설명병기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9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해조장(algal bed, 海藻場)	한자	해조류가 많이 모여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 생물의 산란장, 성육장 및 서식장 소가 되는 곳.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해조류 서식장소)로 설명병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포획(捕獲)	한자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채취(採取)	한자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냄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11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제1항	휴어기(no-fishing period, 休漁期)	한자	어로 작업을 쉬는 시기.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어로작업을 쉬는 시기)로 설명병기
12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제1항	부수어획(bycatch, 附隨漁獲)	한자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으로 설명병기
13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도상연습(圖上演習)	한자어	도구나 부호를 이용하여 실제 작전 처럼 하는 연습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전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적당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14	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	어장휴식(漁場休息)	한자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침하식(沈下式)	한자	‘침하’는 가라앉아 내림.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가라앉히는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설명병기

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설명병기 가능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6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라목	폐위(閉圍)	한자	넓은 뜻으로는 외관,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격벽,감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폐위구역 가운데 제외구역을 뺀 부분을 말함.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좁은 뜻의 폐위구역에 해당함	<p>현행유지(한자병기)</p> <p>- 폐쇄구역 또는 단원공간으로의 순화 검토</p>	<p>- 한자병기</p> <p>- 순화의조건이 일치하는 용어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p>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단서	벽지(僻地)	한자	외파로 딱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을 이른다. 비슷한 말(벽경)	<p>현행유지(한자병기)</p>	<p>- 한자병기</p>
18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제1호	인공어초(人工魚礁)	한자	바다속 자연적인 지형지물외에 인공적으로 연안에 투하하여 어초를 만든 것.	<p>현행유지(한자병기)</p>	<p>- 한자병기</p>
19	닭검정기준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성성숙(性成熟)	한자어	가축, 어류 등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일	<p>현행유지</p> <p>- 성장 또는 성장성숙으로 순화 검토</p>	<p>- (산란 가능 성장)으로 설명 병기 또는 순화의조건을 제시</p>
20		모천국(母川國)	한자어	연어, 송어 따위의 소하성 어종이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는 하천이 있는 연안국	<p>현행유지(한자병기)</p>	<p>- 한자병기</p> <p>- (소하성 어종이 알을 낳는 하천 연안국)으로 설명병기</p>
21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6	천평기	한자	해저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는 기계장치	<p>현행유지(설명병기)</p>	<p>- 한자병기</p> <p>- (공기주입기계)로 설명병기</p>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세목망(細目網)	한자	그물코가 아주 작은 그물감. 일반적으로 세목망은 그물코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규격단위를 mm를 사용하지 않고 '경'이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50cm 폭 안에 든 씨줄의 수를 뜻합니다. 보통 시판되고 있는 것은 90경, 105경, 120경, 140경, 160경 등이 있음.	현행유지(설명병기)	설명병기 세목망(細目網: 모기장 그물)
23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양부어류(遠洋浮魚類)	한자어	어류를 서식장소와 관련해서 구분하여, 해저와 연관성이 없고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를 총칭하여 부어류라 함	현행유지(설명병기)	- 설명병기 - 원양부어류(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
24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조	일본홍(日本筭)	한자	산죽이나 갈대 따위를 모래펄에 꽂아 하는 양식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일본홍(日本筭:양식방법의 하나)
25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양승(揚昇)	한자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림	현행유지(설명병기)	양승(揚昇: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리는 행위)
26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어장빈매(漁場濱賣)	한자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	현행유지(설명병기)	어장빈매(漁場濱賣: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의 일종)
27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조수로	한자어	조수가 통과하는 물길	현행유지(한자병기)	조수로(潮水路)

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설명병기 가능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예망(曳罔, dragged net)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예망(그물끌기)”
29	어선법시행규칙 부칙 제70호 제8조	상앗대	우리말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현행유지(설명병기)	“상앗대(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30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디프탱크(deep tank)	외래어	창내 탱크	현행유지 (설명병기/창내 탱크)	“디프탱크(창내 탱크)”
31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축로(Shaft Tunnel, 軸艙)	한자어	선체 중앙에 기관실이 있는 선박에서는 기관실과 선미격벽 사이의 내저판상에 축로를 설치하여 축 관련 장치를 보호하고 보수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선미관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구조로 한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32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현창(Side Scuttle, 舷牆)	한자어	선박 거주구역(accommodation space)의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선측에 설치한 개구	현행 유지(설명병기)	
33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복판타(Double Plate Rudder)	우리말	타는 선박의 진로를 제어하는 장치이고, 복판타는 조합해 만든 타골의 양면에 강판을 붙인 것으로, 내부는 속이 빈 수밀 구조이다. 타면이 유선형이어서 효율적이고 저항도 작아서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34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배기터빈과급기(Turbo Charger)	외래어	엔진배기가스에 의해 원심공기펌프를 작동하는 것으로, 엔진에 공기 또는 혼합기의 추가분을 강제로 유입해 연소압력과 엔진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현행 유지(설명병기)	
35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스러스트축(thrust shaft, - 軸)	외래어	주로 스러스트 하중(荷重)이 가해지는 축, 또는 스러스트 하중을 전달	현행 유지(설명병기)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하는 축을 스러스트 축이라고 하며, 추력축(推力軸)이라고도 한다.		
36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러더프로펠러 (Rudderpropeller)	외래어	해양플랜트 선박에 주로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조향·추진장치	현행 유지(설명병기)	“러더프로펠러(방향타 프로펠러)”
37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워터젯트추진장치 (Waterjet)	외래어+한자	엔진과 연결된 임펠러(회전익)를 구동하여 선저에 선수방향으로 설치된 흡입구를 통하여 해수를 흡입하여 압력을 높인 후, 노즐을 통하여 가속된 해수를 선저의 선미방향으로 분사시킴으로써 선체를 조향하고 추진시키는 장치	현행 유지(설명병기)	
38	어선법시행규칙 [별표8]	호이스트 (hoist, 卷上機)	외래어	전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올리기 기계(권상기)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체인 호이스트, 공기 호이스트, 전기 호이스트 등이 있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3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투망(投網)	한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그물 던지기)	“투망(그물던지기)”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통발	순우리말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데 쓰는 어구. 가는 뗏조각이나 짜리, 플라스틱, 아크릴 등으로 통처럼 엮어 만들어 사용하며,	현행유지	- 법령에 쓰이는 순우리말이며,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대게, 봉장어 등을 잡는데 사용함. 대상물에게 은신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끼를 사용하여 통 속으로 유인하여 잡는 어구.		아니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2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호	바닥식양식어업	한글+한자 혼용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현행유지	- 혼용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
3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1호	가두리양식어업	우리말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또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현행유지	- 순우리말이면서 일반적인 이해가능용어로 현행유지
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채낚기어업	우리말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끼가 없는 낚시 여러 개를 달아 맨 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현행유지	- 순우리말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지만 어려운 용어는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문어단지어업	우리말+한자	여러 개의 단지를 미끼 없이 일정 간격으로 밧줄에 묶어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 후에 인양하여 단지 속에 들어 있는 문어를 잡는 어구(漁具)를 활용한 어업. 문어가 은신처를 찾아 들어가서 상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단지를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인양하여 단지 속의 문어를 어획한다. 단지를 인양할 때는 일반 어류는 모두 놀라 달아나지만, 문어는 단지가 움직일수록 내부에 더욱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단지의 인양으로 인해 문어가 이탈하지 않음	현행유지	- 어업의 성격을 혼용용어로 잘 표현한 것으로 현행 유지가 적절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뗏목식	우리말+한자 혼용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치패를 부착시켜 양식하는 방법	현행유지	- 어업의 성격을 혼용 용어로 잘 표현한 것으로 현행 유지가 적절
7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제3호, 제43조	소하성(溯河性)	한자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번식기가 되면 하천, 호수 등지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성질. 연어, 송어, 철갑상어 따위가 있다.	현행유지	
8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4호	가리	순우리말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대오리를 엮어서 밀이 없이 통발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강이나 냇물에서 쓴다.	현행유지	-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9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5호	낫대	우리말	설낫, 미역낫	현행유지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10		반두	우리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어구, 두 개의 긴 작대기 사이에 너비 1.5m, 길이 5m쯤 되는 그 물을 위는 좁고 아래는 조금 넓게 잡아매며 아랫도리에 작은 남덩어리를 달아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현행유지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11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총허용어획량	한자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 제3호	보호수면(保護水面)	한자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구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호	수산자원관리수면(水産資源管理水面)	한자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으로 지정한 곳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4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	수산자원조사원(水産資源調査員)	한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임명한 경우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근해어업(offshore fisheries, 近海漁業)	한자	근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연안어업(coastal fishery, 沿岸漁業)	한자	해안에서 가까운 곳 또는 한 나라의 영해(領海)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7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어획물운반업	한자	어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8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제1항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한자+영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 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 현황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9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조업금지구역(操業禁止區域)	한자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0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제2항	수역(水域)	한자	수면의 일정한 구역. 물지역(비슷한 말)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1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제1호	수산종묘(水産種苗)	한자	수산관련 동식물의 종묘(성어로 가기 이전의 치어단계 또는 유생단계를 지나 착저단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2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3절 제목	어업자협약	한자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5호	이식(transplantation, 移植)	한자	식물의 나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심어서 그 곳에서 기르는 것이나 동식물의 조직, 장기 등의 부분을 잘라 같은 생물의 다른 부위에 심거나 다른 생물에 옮겨 심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4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단서	낙도(落島)	한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5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 제2호	준설행위(dredging, 浚渫行爲)	한자	물의 깊이를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하천·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6	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1호	어장(漁場)	한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7	어장관리법 제5조제2항	어장관리해역(漁場管理海域)	한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으로 지정된 해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8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어장청소(漁場清掃)	한자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29	어장관리법 제21조	방류명령(放流命令)	한자	물로 놓아 보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30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2항	경계수면(境界水面)	한자	경계지역의 수면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31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2항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한자	해양친수공간은 바다에 면한 친수공간을 의미함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32		순환여과양식(循環濾過養殖)	한자어	사육하는 물을 연속적으로 정화하면서 순환시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장치	현행유지	

부록 1.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3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채묘연(採苗漣)	한자	‘채묘(seed collection)’는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 부유생활기 이후 부착생활기를 갖는 이매패(굴, 피조개, 가리비등) 및 우렁쟁이 등을 대상으로 부착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이들 유생을 수집함.	현행유지	
3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6]	마을어업(마을漁業)	우리말+한자어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며,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그 면허가 인정된다.	현행유지	마을 어업은 용어의 의미를 법령에서 특정하여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해당 법령의 정의규정에서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정의규정에서 해설>
35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2]	쪽대	우리말	수산동식물을 손에 잡고 포획하기 위한 대나무	순우리말로 현행유지가 적절	
36	내수면어업법시행 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외줄낚시어업 (pole and line fishery)	우리말	어획 대상 어군이 얇은 곳에 산발적으로 분포할 때 쓰는 낚시어구로 오징어 채낚기, 가다랑어 채낚기와 같은 낚시대, 낚시줄,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 어업.	현행유지	
37	내수면어업법시행 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조방식(粗放式)	한자어	양식어업의 방식	현행유지	
38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3조	선발육종 (selective breeding, 選拔育種)	한자어	생물이 가진 유용한 유전적 형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진 개체나 개체군을 선택하여 교배하여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에서도 연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교배하는 일.	현행유지	

1-3.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정비안 : 현행유지 용어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9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	그물코(mesh)	우리말	그물실을 서로 조합시킨 네 개의 매듭과 네 가닥의 그물실, 즉 발로 구성된 것. 망목(網目)	현행유지	
40		갯녹음	우리말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체 상태로 석출되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함.	현행유지	
41		귀매달이식	우리말+한자어	가리비양식의 방법, 귀걸이를 단 것처럼 매달아 주는 방법으로 양식의 모양을 표현한 것임	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개측(改測)	한자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 점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 을 실시하는 것	다시 측정 또는 새로 측정	
2	낙시어선업법 제4조 제2항	교부	한자	물건을 인도하는 일.	발급	
3	낙시어선업법 제12조의2 제2항	당해	한자	바로 그것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해당	
4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접	한자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인접	
5	내수면어업법 제2조	사유수면	한자어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 성된 내수면	현행유지/개인수면	내수면어업법에서 정의 하고 있는 용어임
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유어기반(遊漁基盤)	한자어	체험어업기반	체험어업기반	
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부칙16930호>	어살어업(漁箭漁業)	한자어	어살류[漁箭類]의 정치망 어구는 수 심이 얇은 저질(底質)에 곧은 나무나 대나무, 짜리나무 등으로 엮어 세우거 나 박아서 어류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기 울타리를 만들어 포획하 는 전통 어구 혹은 어업 중의 하나	울(타리)그물 어업	
8	내수면어업법시행 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외줄낙시어업 (pole and line fishery)	우리말	어획 대상 어군이 얇은 곳에 산발적 으로 분포할 때 쓰는 낙시어구로 오 징어 채낚기, 가다랑어 채낚기와 같 은 낚시대, 낚시줄,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 어업.	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9	내수면어업법시행 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조방식(粗放式)	한자어	양식어업의 방식	현행유지	
10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저서동물(底棲動物)/저서어족 (底棲魚族)	한자어	주로 저인망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족으로 세계 도처의 대륙붕 및 그 연변에서 어획되는 어족을 말함	저층생활물고기/저층생활어족	
11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도상연습(圖上演習)	한자어	도구나 부호를 이용하여 실제 작전 처럼 하는 연습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전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적당한 개선안 을 마련하기 어려움
12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굴패각	우리말+한자어	굴의 몸을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형성물	굴 껍데기	
13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패각(貝殼)	한자어	연체동물에서 연체를 싸서 보호하 는 무기질의 분비형성물	껍데기	
14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바이오매스(biomass)	영어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 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물량, 생물체량이라고도 한다.	생물량, 생물체량	영어병기 검토
1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	거양(擧揚)	한자어	높이 들어올림, 칭찬하여 높임	고양/고취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객토(客土)	한자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불량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 의 지력(地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적당한 성질을 가 진 흙을 가져다 넣는 일.	새 흙 넣기, 흙갈이/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7	닭집정기준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성성숙(性成熟)	한자어	가축, 어류 등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일	현행유지 - 성장 또는 성장성숙으로 순화 검토	- (산란 가능 성장)으로 설명 병기 또는 순화 의견을 제시
1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로(漁撈)	한자	고기잡이	고기잡이	
1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망(漁網)	한자	그물	그물, 고기그물	
20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어유(魚油)	한자	생선기름	생선기름	
21	수산업법 제2조제4호	호료(糊料)	한자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축을 좋게 하는 물질. 천연 호료와 합성 호료가 있으며, 식품에 넣으면 점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지는 물질	접착원료/접착폴원료/현행유지	(설명을 붙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2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한자	밀물 경계선 고조선 공유수면 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의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 고조선(高潮線, high-water line)이라고도 하며, 공유수면에 포함되는 바닷가와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최고수위선/현행유지	
23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한자	어구는 크게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길게 뻗힌 길그물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우리(통그물)로 어군을 유도하여 잡는 어업	자릿그물어업, 고정망어업/고정그물어업, 고정식어업, 자릿그물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4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통발	순우리말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데 쓰는 어구. 가는 낫조각이나 싸리, 플라스틱, 아크릴 등으로 통처럼 엮어 만들어 사용하며, 대게, 붕장어 등을 잡는데 사용함. 대상물에게 은신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끼를 사용하여 통 속으로 유인하여 잡는 어구.	현행유지	- 법령에 쓰이는 순우리말이며,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아니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25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연승(long line, 延繩)	한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어업이다.	‘연승(延繩)’은 한자어이며, 주낙은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주낙’으로 통일	
26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구역어업(區劃漁業)	한자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	구역어업/현행유지	
27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유어장(遊漁場)	한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	체험관광어장/ 현행유지	
28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낙망(落網)	한자	정치망의 한 종류로, 통그물을 헛통과 원통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경계에 비탈그물을 설치하여 원통으로 들어간 고기가 되돌아 나오기가 힘들도록 제작된 어구	비탈 자릿그물, ‘합정망’ 또는 ‘합정그물’	
29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승망(fyke net, 柵網)	한자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그물이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망의 한 종류임.	고리테 자릿그물,	
30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죽방렴 (bamboo weirs, 竹防簾)	한자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대나무 어사리, 방전)	대나무발 자릿그물, ‘대나무발어업’/ 현행유지	
31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	부망(敷網)	한자어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펼쳐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	들그물	들망어업과의 비교 필요.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2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수하식 (hanging culture, 垂下式)양식어업	한 자	양식 대상 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 바닥 양성이나 다른 양성법으로서 양성하는 것보다 생장이 좋고,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수중매달기’ /현행유지	
33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뜸	순우리말	물에 띄워서 그물, 낚시 따위의 어구를 위쪽으로 지탱하는 데에 쓰는 물건.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	현행유지(설명병기)	- 법령에 쓰이는 순우리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와의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어구 지탱을 위한 물건)으로 병기
34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호	바닥식양식어업	한글+한자 혼용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현행유지	- 혼용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
35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가두리양식어업	우리말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또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현행유지	- 순우리말이면서 일반적인 이해가능용어로 현행유지
36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채룡(-籠)	우리말+한자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틀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전복이나 가리비 등 치패를 넣어 성장시키는 양식에 사용되는 통	‘그물 망태기’ 현행유지	
37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	한자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방식’양식어업	
3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채낚기어업	우리말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끼가 없는 낚시 여러 개를 달아 맨 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현행유지	- 순우리말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지만 어려운 용어는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39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문어단지어업	우리말+한자	여러 개의 단지를 미끼 없이 일정 간격으로 밧줄에 묶어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 후에 인양	현행유지	- 어업의 성격을 혼용용어로 잘 표현한 것으로 현행유지가 적절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하여 단지 속에 들어 있는 문어를 잡는 어구(漁具)를 활용한 어업. 문어가 은신처를 찾아 들어가서 상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단지를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인양하여 단지 속의 문어를 어획한다. 단지를 인양할 때는 일반 어류는 모두 놀라 달아나지만, 문어는 단지가 움직일수록 내부에 더욱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단지의 인양으로 인해 문어가 이탈하지 않음		
4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선망어업	한자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fish shoal)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에 차차 그 범위를 좁혀서 떠 올리는 어법을 두릿그물(선망)어법이라 함.	두릿그물어업	
4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망어업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인 자망을 이용한 어업, 대상물이 그물코에 꽂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걸그물어업, 고정걸이그물어업	
42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유자망(流刺網)	한자	긴 대모양의 그물 상부에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부착하여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걸어구류의 어업.	흘림걸그물	
43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안강망어업	한자	안강(鮫鱈)은 아귀과의 바다 물고기의 명칭임.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조류에 의해 고기가 그물안으	한돛(고정) 자루그물어업/ 하나돛 자루그물어업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 안강망은 우리 나라 재래식 어망인 중선망(中船網)과 어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보급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일중선(日中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4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봉수망어업	한자	사각형 그물의 한 모서리에 뜰과 테의 역할을 겸하는 뜰대를 붙여 수면에 지지하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발돌[沈子]을 달아 가라앉혔다가 어군(魚群)이 그물 위에 모이면 발 돌 부분에 연결된 돌움줄을 당김으로써 발돌부분을 들어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을 이용한 어업	채들그물어업, 꽂치어업, 꽂치잡이어업	
4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초망(抄網)	한자	‘채그물’의 북한어. 채그물은 지나가는 물고기를 물 밑으로부터 떠올려 잡는 그물을 말함.	채그물	
4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리돔들망어업	우리말+한자	평평한 그물을 퍼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잡는 방법이며 비교적 작은 어구는 별다른 기구가 없으나 대형화하면 어구를 올리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어업	자리돔들그물어업	
47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연승어업(延繩漁業)	한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어획 대상생물을 잡는 어업.	주낙어업	
4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형망어업(桁網漁業)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퀴나 썬레 같은 것을 부착한 것으로 썬레에 의해 펄이나 모래 속에 묻혀있는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틀방그물어업, 썬레그물어업, 쓰레그물어업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49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기선권현망어업	한자	멸치잡이 그물어구인 권현망을 사용하여 멸치 등을 잡는 어업. 권현망은 기본적으로 끌그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1개의 자루와 2개의 날개로 되어 있으며, 날개는 크게 오비기와 수비로 구분됨	쌍끌이(대형) 중층끌그물어업/ 표층끌그물어업, 멸치잡이어업, 멸치어업, 권현망어업,	용어개선이 필요한 어업으로 수산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있음. 향후 법령 정비시 반영 필요.
5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한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	잠수어업/현행유지	
5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	한자	바다 밑에 서식하는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 끌그물[曳網]류에 속하는 그물어구	저층끌그물, 저층끌망	
52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어업 (底引網漁業)	한자	동력선으로 바다 밑에 있는 어류 등을 어획하기 위해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업.	저층끌그물어업, 저층끌망어업	
53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우리말+한자	60t이상 어선이 하는 저인망어업을 대형저인망어업이라 하고, 1척으로 하는 것을 외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끌그물어법이 아닌 후릿그물어법을 사용하므로 용어개선 및 향후 법령정비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일척식 대형배후릿그물어업/ 일척식 대형선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그물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망어업	
5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6호	트롤어업 (trawls 漁業)	영어+한자	동력선으로 전개관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동력그물어업/ 현행유지	
55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조망어업(漕 翼網漁業)	한자	조망을 활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빔트롤어업, 현행유지	
56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선인망어업(boat seine, 船引網)	한자	배후리그물, 사람들이 어선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지인망과 동일하나 사람이 인력으로 육지에서 그물을	배후릿그물어업, ‘배후리그물어업’, ‘배후리망어업’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끌어당기는 것과 배에서 당기는 점에 차이가 있음		
57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들망어업	우리말+한자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 두고 대상물을 위로 유인하여 들어 올려서 잡는 어업을 들그물어업(들망)어업이라 함. 규모가 작은 것은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으며, 모서리에 길이가 같은 3-4가닥의 목줄을 내고, 이 목줄을 한테 묶은 곳에 돛줄을 달거나 채를 달아서 어구를 들어올림.	들그물어업	
58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패류껍질어업	우리말+한자	소라·피빨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현행유지/조개류껍질어업	
59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망어업(set net in shallow waters, fish fence, 建干網)	한자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물고기가 밀물 때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 썰물 때에 걸리어 잡힘. 어구의 형태가 방패처럼 생겨 조수간만시 그물에 고기가 걸리도록 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임.	개막이그물어업, ‘개막이어업’	
60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망어업(健網漁業)	한자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길그물, 헛통, 어포부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어구를 활용하는 어업. 조업방법은 어포부측에 배를 매달아 놓고 어포부를 한쪽부터 들어올려 어포부의 한쪽으로 고기를 몰아 퍼올려 어획함.	소형 사각자릿그물어업	
61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승망류어업(昇網類漁業)	한자	승망을 활용하는 어업. 어구의 구성은 길그물, 헛통, 고리테그물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루그물 속에 둥근테를 넣어 깔대기 모형으로 만들어 고기가 나오지 못하게 함. 과거에는 3각망, 5각망, 7각망, 호망 등을 승망어업으로 분류하였음	고리테 자릿그물류어업, ‘승망류어업’ ‘자루그물류어업’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62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류어업	한자	대상물이 강한 조류 등의 외력에 밀려가게 하여 강제적으로 자루그물에 몰아넣어서 잡는 어업. 주목망, 장망, 낭장망이 이 어업에 속한다.	‘벌린 자루그물류어업’ /현행유지	
63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gape net, 張網)	한자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며, 자루그물에는 형상을 유지해 주는 고리테가 있고 날개그물에 의해 유도된 고기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리테에 연결된 깔때기 모양의 허그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날개벌림 고리테자루그물 ‘넓은 자루 그물’, ‘벌림그물’ 등으로 순화	
64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주목망 (swing net on stakes, stow nets, 柱木網)	한자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말뚝벌림 자루그물 , ‘나무기둥고정그물’, ‘연안 고정식 함정그물’	
6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낭장망 (long bag set net, 囊長網)	한자	조류(潮流)가 빠른 곳에 설치하여 멸치를 잡는 어구(漁具).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닻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잡는 정지성(定置性) 어구이다.	날개벌림 자루그물 , ‘긴자루 고정그물’, ‘이동식 함정그물’	
66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지인망어업(beach seine, 地引網漁業)	한자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갯후릿그물어업 , 갯후리어업	
67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해선망어업 (醞船網罟漁業)	한자	젓새우를 잡는 어업	배고정 기름대자루그물어업 하나랏 기름대자루그물어업 ‘젓새우잡어업’	
68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새우조망어업 (--翼網漁業)	한자	새우조망 어업은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으로 생이 무리와 보리새우 무리를 어획.	새우 빔 트롤어업 , 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업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69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부칙제8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각망(角網)	한자어	대모망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여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구	직각길그물/ 현행유지	
70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말목식종묘 생산어업	우리말+한자	‘말목식’은 연안의 깊이가 얇은 곳에서 두 줄의 말목을 박고 말목 위에 옆으로 나무를 걸쳐서 이 나무에 수하연을 늘어뜨려 양식하는 방식을 말함.	말목식 종묘생산어업 /현행유지	
71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채묘연(採苗漣)	한자	‘채묘(seed collection)’는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 부유생활기 이후 부착생활기를 갖는 이매패(굴, 피조개, 가리비등) 및 우렁챙이 등을 대상으로 부착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이들 유생을 수집함.	현행유지	
72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물양장 (lighters wharf, 物揚場)	한자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	‘소형선박 접안부두’, ‘소형부두’, ‘소형하역부두’	
73	수산업법시행령 제51조	선복량(船腹量)	한자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선적용량’	
74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제17조제1항 관련)	양식장형망선		‘형망(dredge, 桁網)’은 틀에 갈쿠리를 붙여 해저생물을 채취하는 장치	양식장틀방그물선/ 양식장틀방선 ‘갈쿠리그물배’	
75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내용연수(耐用年數)	한자어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활용가능기간, 내구연수, 내구연한, 현행유지	회계학 등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76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강선(steel ship, 鋼船)	한자	선체의 주요 구조(構造)의 재료가 강철인 선박	철강선(박) /현행유지	
77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F.R.P 선	영어+한자	유리섬유를 골격으로 하여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로 만든 배(강화플라스틱선)	강화플라스틱선/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78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어초(the fish shelter, 魚礁)	한자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번식하는 바다 밑의 도도룩한 곳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물고기 번식장소)로 설명병기
79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해조장(algal bed, 海藻場)	한자	해조류가 많이 모여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 생물의 산란장, 성육장 및 서식장소가 되는 곳.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해조류 서식장소)로 설명병기
80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총허용어획량	한자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1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 제3호	보호수면(保護水面)	한자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구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호	수산자원관리수면 (水産資源管理水面)	한자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으로 지정한 곳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3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	수산자원조사원(水産資源 調査員)	한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임명한 경우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4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근해어업(offshore fisheries, 近海漁業)	한자	근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5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연안어업 (coastal fishery, 沿岸漁業)	한자	해안에서 가까운 곳 또는 한 나라의 영해(領海)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8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어획물운반업	한자	어장에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7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제1항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한자+영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 현황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	포란(brooding, 抱卵)	한자	동물이 산란한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체를 이용하여 알을 따뜻하게 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보통 조류에서 많이 발견되며, 기나성계의 일부도 몸체로 알을 보호하지만 육자낭이나 입 속에서 알을 보호하는(구내보육, mouth brooding) 어류 종류가 있음.	알보호행위/현행유지	
89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방란(spawn, 放卵)	한자	어류, 양서류, 패류 등이 알을 낳는 것.	산란/현행유지	
9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호	어망(fishing net, 漁網/魚網)	한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그물	
9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호	어구(漁具)	한자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어획도구/ 현행유지	
9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포획(捕獲)	한자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9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채취(採取)	한자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냄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9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체장(體長)	한자	개별 수산자원(물고기·어패류 등)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값. 수산자원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에 대비되는 한자어	일반용어인 ‘(몸)길이’로 순화	
95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조업금지구역(操業禁止區域)	한자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96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제1항	휴어기(no-fishing period, 休漁期)	한자	어로 작업을 쉬는 시기.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어로작업을 쉬는 시기)로 설명병기
97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제2항	수역(水域)	한자	수면의 일정한 구역. 물지역(비슷한 말)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	그물코(mesh)	우리말	그물실을 서로 조합시킨 네 개의 매듭과 네 가닥의 그물실, 즉 발로 구성된 것. 망목(網目)	현행유지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제4항	자망(gill net, 刺網)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	‘걸그물’, ‘가시그물’ 혹은 ‘침그물’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제1호	수산종묘(水産種苗)	한자	수산관련 동식물의 종묘(성어로 가기 이전의 치어단계 또는 유생단계를 지나 착저단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01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제3호, 제43조	소하성(溯河性)	한자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번식기가 되면 하천, 호수 등지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성질. 연어, 송어, 철갑상어 따위가 있다.	현행유지	
102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어(稚魚)	한자	어린 물고기	어린물고기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0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패(稚貝)	한자	어린 어패류	어린 어패류	
104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호	수질오탁행위 (水質汚濁行爲)	한자	오탁(pollution, 汚濁) : 대기 또는 물 이나 인체 등 동·식물에 직접 접촉 하는 것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 는 상태	오탁을 오염(汚染)으로 개선	
105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5호	이식(transplantation, 移植)	한자	식물의 나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심 어서 그 곳에서 기르는 것이나 동식 물의 조직, 장기 등의 부분을 잘라 같은 생물의 다른 부위에 심거나 다 른 생물에 옮겨 심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 합이며 어려운 용어 도 아니므로 현행유 지가 적절
106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제1항	부수어획(bycatch, 附隨漁獲)	한자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 획·채취하는 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 획하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 으로 설명병기
107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단서	벽지(僻地)	한자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을 이른다. 비슷한 말(벽경)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108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단서	낙도(落島)	한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 합이며 어려운 용어 도 아니므로 현행유 지가 적절
109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제1호	인공어초(人工魚礁)	한자	바다속 자연적인 지형지물 이외에 인공적으로 연안에 투하하여 어초 를 만든 것.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110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2항	경계수면(境界水面)	한자	경계지역의 수면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 합이며 어려운 용어 도 아니므로 현행유 지가 적절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11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친수공간	한자어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등 여유허공간을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수변공간	수변공간/ 현행유지	
112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2항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한자	해양친수공간은 바다에 면한 친수공간을 의미함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13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 제1호	매립행위(埋立行爲)	한자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매움’으로 순화.	‘매움행위’	
114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 제2호	준설행위(dredging, 浚渫行爲)	한자	물의 깊이를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하천·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15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2절 제목	어법(漁法)	한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망법이나 조어법 따위가 있다.	어획방법 현행유지	
116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3절 제목	어업자협약	한자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17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조	양륙항 (port of discharge, 揚陸港)	한자	운송되는 물품의 환적항 또는 최종목적지	상륙항/현행유지	
118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4항제3호	어선감축(減隻)	한자	어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어선감축사업’	‘어선감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119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1조	왕돌초(--礁)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해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암초.	현행유지. ‘초’는 ‘암초’로 순화검토	
120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나잡어업(裸漚漁業)	한자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	맨몸잠수어업 , ‘해녀어업’ 또는 ‘잠수어업’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즉,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 여성노동력 위주의 생업 생산체계이다.		
12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3호	해중림(sea jungle, 海中林)	한자	바다에 대형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곳. 일반적으로 해조류가 잘 번식하는 곳은 보통 저조선에서 수심 20m까지로 수산동물의 산란장이나 유생의 발육장으로서 중요함.	해조밭 , 해조숲	
122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1	여자망(緋子網)	한자어	씨줄과 날줄을 2가닥씩 꼬아 가면서 일정한 간격마다 서로 엮어 그물코가 직사각형이 되게 짠 그물로 멸치 등 작은 고기를 잡는데 쓰임	교차 꼬임사각그물/ 현행유지	
1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1	직망(織網)	한자어	편자사 또는 2자사를 강하게 꼬아서 교차시켜 만든 그물	교차사각그물/ 현행유지	
124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1	양망(揚網)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물끌기/ 현행유지	설명병기도 가능
125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1	세목망(細目網)	한자	그물코가 아주 작은 그물감. 일반적으로 세목망은 그물코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규격단위를 mm를 사용하지 않고 ‘경’이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50cm 폭 안에 든 씨줄의 수를 뜻합니다. 보통 시판되고 있는 것은 90경, 105경, 120경, 140경, 160경 등이 있음.	현행유지(설명병기)	설명병기 세목망(細目網: 모기장 그물)
126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4호	가리	순우리말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대오리를 엮어서 밑이 없이 통발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강이나 냇물에서 쓴다.	현행유지	-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27	수산자원관리법시 행규칙 제6조제5호	낫대	우리말	설낫, 미역낫	현행유지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128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제23조	선발육종 (selective breeding, 選拔育種)	한자어	생물이 가진 유용한 유전적 형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진 개체나 개체군을 선택하여 교배하여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에서도 연속하여 동일 한 방법으로 선택 교배하는 일.	현행유지	
12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투망(投網)	한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 여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그물 던지기	“투망(그물던지기)”
13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수망(deep net, 受網)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에 막대를 달아 올려 잡는 어구.	반두그물	‘반두’와 비교 필요.
13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모식도(模式圖)	한자어	어떤 물건 또는 구조물의 모양을 그 대로 따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도식도, 개략도	
132	어선법 제3조 제5호	계선(繫船)	한자	선박을 육지에 매우 두는 일. 계류 (繫留)라고도 한다. 해운의 경기가 악화될 때 운항을 중지하고 항구에 정박하는 것도 계류라고 한다. 종류 는 묘박(錨泊: 닻을 내려 정박하는 일) · 부표(浮標)계선 · 안벽(岸壁) 계선의 3가지가 있다.	현행유지/계류선	
133	어선법 제3조 제5호	양묘(揚錨)	한자	닻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 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 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진다.	닻 올리기/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34	어선법 제4조	만재흡수선 (滿載吸水線)	한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積荷限度)의 흡수선. 만재흡수선은 선박의 만재흡수선 규정에 의하여 선종별로, 또 같은 선박일지라도 최대 만재흡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정위치를 명확히 하고, 만재흡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박의 중앙부 양현(兩舷)에 건현표(乾舷標: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선(수)심선/ 현행유지	
135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전면	한자	물건의 앞쪽면	앞면	
136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흡수(吸水)		수중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	선(수)심/현행유지	
137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폭로부/폭로갑판		선박의 외부장소로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	노출부/갑판/현행유지	
138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라목	폐위(閉圍)	한자	넓은 뜻으로는 외판,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격벽,갑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폐위구역 가운데 제외구역을 뺀 부분을 말함.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좁은 뜻의 폐위구역에 해당함	현행유지(설명병기) - 폐쇄구역 또는 닫힌공간으로의 순화 검토	- 한자병기 - 순화의견이 일치하는 용어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139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3호	감항성(堪航性)	한자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항해안전성/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상법은 감항능력(塘航能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있어서 내공능력(耐空能力)에 비견될 수 있음.		
140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입거	한자	배를 선거(船渠)에 넣음	선체입고/ 현행유지	
141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상가(上架)	한자	배를 선거(船渠) 안 받침대 위에 놓음	선체올림/ 현행유지	
142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사수(射水)	한자어	물을 분사함	물 분사	
14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표	코퍼댐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청수 탱크와 유류 탱크 사이의 유밀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물막이 또는 현행유지	
14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축기(蓄氣)시험		보일러 안전밸브의 분출능력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공기흡입시험/현행유지	
145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도기시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용기에는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험	공기도출시험/ 현행유지	
14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나목 1)	창구복포	한자	창구복포(艙口覆布, tarpulin)는 방수천의 일종으로 타르 칠한 방수천, 타르입힌 돛배를 가리킨다.	타르방수천	
147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정경기(整經機)	한자	날실을 필요한 올의 수만큼 가지런히 펴서 도투마리에 감는 기계	날실틀	
148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합사기(合絲機)	한자	실을 2가닥 이상 합하는 것, 또는 그 기계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실을 합치는 기계)로 설명병기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4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연사기(撚絲機)	한자	정방기(精紡機)에서 뽑아진 실을 홀실(單絲)이라고 하는데, 이 홀실을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가닥으로 합쳐 꼬는 기계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홀실 꼬는 기계)로 설명병기
15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질화로(窒化爐)	한자	질화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으로서 질소를 강(鋼)에 침투시켜 그 표면을 경화시키는 조작으로 공작물을 정밀하게 다듬질한 다음 암모니아가스 속에 500℃ 정도로 18~19시간 가열하여 자연스럽게 냉각시킨다. 이 질화 과정이 진행되는 노를 말한다.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151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다)	벤딩머신	영어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은 강재나 파이프 등의 재료를 굽힘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절곡기	
15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밀링머신	영어	공작기계(工作機械)의 일종이며, 원형(圓形)의 날(cutter)이 있는 도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절삭(切削)한다. 평면, 홈(溝, groove), 기어(齒車, gear), 캠(cam) 등의 절삭에 사용한다.	회전절삭기계	
15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브로칭머신	영어	브로치는 가공하는 모양과 비슷한 많은 날이 차례로 치수를 늘리면서 출선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봉 모양의 공구로, 이것을 브로칭머신의 축에 장치하고, 축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겨서 가공한다.	브로칭공작기계 또는 절삭가공기계	
15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호빙머신	영어	기어를 잘삭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어절삭용 공작기계, 수직호빙머신과 수평호빙머신이 있다.	기어제작기계 또는 기어가공기계	
155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침탄로(浸炭爐)	한자	침탄은 강철의 탄소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를 강철표면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	탄소강화로/현행유지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을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침탄을 하기 위하여 쌓은 노를 말함		
15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9 제1호 나목 5)	아우트리거(outrigger)	영어	이동식 크레인 또는 케이블 경운장치 등으로 작업할 때 안정을 위하여 프레임 등에 부착하여 길게 설치된 지주, 또는 하우스 등이 폭풍에 버티도록 하기 위해 지상에 고정된 장치	현행유지/현외부재(舷外浮材) /고정지주	
157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격벽(隔壁, partition wall)	한자어	선박 용어로서는 선체의 내부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칸막이 벽을 가리킨다. 격벽은 선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기름 등의 탱크로 쓰기 위하여, 단순히 구획을 나누기 위하여 설치한다	현행유지/ 칸막이 벽	
158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수밀성 (watertightness, 水密性)	한자어	기계 또는 장치의 어느 부분에 채워진 물이, 밖으로 새지 아니하고 밀봉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작용	현행유지/ 방수성	이해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순화의견이지만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함.
159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데릭(Derrick)	외래어	짐을 동력을 사용해 매달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이며, 마스트(mast) 또는 붐(boom)이 있고 원동기를 따로 설치해 와이어로프에 의해 조작되는 것	현행유지/ 데릭기중기	기중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중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
160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지브크레인(Jib Crane)	외래어	집(jib)이 달린 크레인으로서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旋回)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현행유지/선회크레인	
161	어선법시행규칙 부칙 제70호 제8조	상앗대	우리말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현행유지/설명병기	“상앗대(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162	어선법시행규칙[별표2]	묘쇄고(錨鎖庫)	한자어	닻사슬을 넣어 두는 창고.	닻사슬 창고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63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디프탱크(deep tank)	외래어	창내 탱크	현행유지/설명병기/창내 탱크	“디프탱크(창내 탱크)”
164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축로(Shaft Tunnel, 舳艫)	한자어	선체 중앙에 기관실이 있는 선박에서는 기관실과 선미격벽 사이의 내저판상에 축로를 설치하여 축 관련 장치를 보호하고 보수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선미관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구조로 한다.	현행유지/설명병기	
165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현창(Side Scuttle, 舷牆)	한자어	선박 거주구역(accommodation space)의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선체에 설치한 개구	현행유지/설명병기	
166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복판타(Double Plate Rudder)	우리말	타는 선박의 진로를 제어하는 장치이고, 복판타는 조합해 만든 타골의 양면에 강판을 붙인 것으로, 내부는 속이 빈 수밀 구조이다. 타면이 유선형이어서 효율적이고 저항도 작아서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행유지/설명병기	
167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배기터빈과급기 (Turbo Charger)	외래어	엔진배기가스에 의해 원심공기펌프를 작동하는 것으로, 엔진에 공기 또는 혼합기의 추가분을 강제로 유입해 연소압력과 엔진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현행유지/설명병기	
168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스러스트축 (thrust shaft, - 軸)	외래어	주로 스러스트 하중(荷重)이 가해지는 축, 또는 스러스트 하중을 전달하는 축을 스러스트 축이라고 하며, 추력축(推力軸)이라고도 한다.	현행유지/설명병기	
169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러더프로펠러 (Rudderpropeller)	외래어	해양플랜트 선박에 주로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조향·추진장치	현행유지/설명병기	“러더프로펠러(방향타 프로펠러)”
170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워터젯추진장치 (Waterjet)	외래어+한자	엔진과 연결된 임펠러(회전익)를 구동하여 선저에 선수방향으로 설치된 흡입구를 통하여 해수를 흡입하	현행유지/설명병기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여 압력을 높인 후, 노즐을 통하여 가속된 해수를 선저의 선미방향으로 분사시킴으로써 선체를 조향하고 추진시키는 장치		
171	어선법시행규칙 [별표8]	호이스트 (hoist, 卷上機)	외래어	전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올리기 기계(권상기)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체인 호이스트, 공기 호이스트, 전기 호이스트 등이 있다.	현행유지/설명병기	
172	어업등록령 제9조제1항 제3호	어장도 편철장	한자	‘어장도(fishing chart, 漁場圖)’는 어떤 시공간에서 어떠한 어업이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시한 것 ‘(도면)편철(filing)장’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 중 하나이다.	어장도면 보관장부	
17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호	컴프레서	영어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17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조	일본홍(日本筍)	한자	산죽이나 갈대 따위를 모래필에 꽂아 하는 양식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일본홍(日本筍:양식방법의 하나)
17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수하연식 (垂下延式)	한자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종을 달거나, 약 3m 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	수직강하식/현행유지	
17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살포식(撒布式)	한자	살포식은 수심 약 40m 이내의 모래와 빨이 섞인 바닥에서 서식하는 패류의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으로 설명병기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7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뗏목식	우리말+한자 혼용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치패를 부착시켜 양식하는 방법	현행유지	- 어업의 성격을 혼용 용어로 잘 표현한 것으로 현행유지가 적절
178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건홍식(建筍式)	한자	김양식을 위하여 대나무 등 다발을 갯벌에 세우는 방식	‘(김)통발식’	
17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지주망홍(蜘蛛網筍)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의 모양이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는 방식	‘거미줄통발’	
18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부류망홍(浮流網筍)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이 고정식이 아니라 물속에 띄워서 설치하는 방식	‘부류통발’	
18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천해(淺海)	한자	얕은 바다. 대개 해안에서부터 수심 200미터 되는 부분까지를 이른다.	‘얕은 바다’	
18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투석식(投石式)	한자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으로서 조개껍데기, 돌 따위를 바다에 뿌려서 조개류나 해조류를 기르는 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바다에 뿌려 기르는 양식 방법)으로 설명병기
18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간이식(簡易式)	한자	수하식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간단한 양식어업 방식)으로 설명병기 가능 (검토필요)
18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침하식(沈下式)	한자	‘침하’는 가라앉아 내림.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가라앉히는 바닥식양식어업)으로 설명병기
18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어장빈매(漁場濱賣)	한자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	현행유지/설명병기	어장빈매(漁場濱賣: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의 일종)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8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6]	마을어업(마을漁業)	우리말+한자어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작성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며,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그 면허가 인정된다.	현행유지	마을 어업은 용어의 의미를 법령에서 특정하여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해당 법령의 정의규정에서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정의규정에서 해설>
187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조수로	한자어	조수가 통과하는 물길	현행유지/한자병기	조수로(潮水路)
188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6	천평기	한자	해저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는 기계장치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공기주입기계)로 설명병기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89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예망(曳罟, dragged net)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예망(그물끌기)”
19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크랭크축(crankshaft軸)	외래어+한자어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현행유지 혹은 곡축(曲軸)	
19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커플링(Coupling)	외래어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현행유지/축이음	
192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제29조	어황(漁況)	한자어	어획 대상 자원의 수량이나 어획 가능한 밀도의 수준	어획상황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9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어상자(漁箱子)	한자	고기상자	고기상자	
194	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1호	어장(漁場)	한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95	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	어장휴식(漁場休息)	한자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196	어장관리법 제5조제2항	어장관리해역(漁場管理海域)	한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으로 지정된 해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97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어장정소(漁場清掃)	한자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99	어장관리법 제21조	방류명령(放流命令)	한자	물로 놓아 보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99	어촌·어항법 제2조	잔교(棧橋)	한자어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연결다리	
200	어촌·어항법 제2조	부잔교(浮棧橋)	한자어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뜬다리, 선창, 발판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01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양부어류(遠洋浮魚類)	한자어	어류를 서식장소와 관련해서 구분하여, 해저와 연관성이 없고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를 총칭하여 부어류라 함	현행유지(설명병기)	- 설명병기 - 원양부어류(浮魚類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
202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양승(揚昇)	한자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림	현행유지/설명병기	양승(揚昇: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리는 행위)
203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 제2조	양륙량(揚陸量)	한자어	수산자원의 어획량	어획량	
20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구명부환 (life buoy, 救命浮環)	한자	생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물에 뜨는 둥근고리	‘구명부이’, ‘구명부표’, ‘구난부표’, ‘구명고리’	
205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2]	쪽대	우리말	수산동식물을 손에 잡고 포획하기 위한 대나무	순우리말로 현행유지가 적절	
206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	종패	한자어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조개	씨조개	
207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제3조	레토르트 식품(retort --)	영어+한자어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이다. 조리가공한 여러 가지 식품을 일종의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압가열살균술(retort)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살균하여,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열처리식품	
208	구수산업법	석조망(石纜網)	한자어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들	현행유지 또는 유낭두릿그물, 두릿웹그물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러친 후 돌을 던져 어군의 도피를 막으면서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		
209	구수산업법	양조망(揚繰網)	한자어	두릿그물의 하나. 물고기 떼를 둘러싸기만 하고 아래 깃을 조이지 않는 형태의 선망이다.	현행유지 또는 무낭두릿그물	
210		지지줄 자망(--- 刺網)	우리말+한자어	자망의 종류	지지줄 걸그물	
211		연승수하식	한자어	양식의 종류	연승의 우리말인 주낙을 사용하여 '주낙수중매달기방식'으로 순화	
212		귀매달이식	우리말+한자어	가리비양식의 방법, 귀걸이를 단 것처럼 매달아 주는 방법으로 양식의 모양을 표현한 것임	현행유지	
213		죽홍식(竹筴式)	한자어	대나무를 쪼개 발을 만들고 수면에 띄워 양쪽을 고정시켜 대발에 포자를 부착케 하는 양식방법	통발식 또는 대나무발식	순우리말로 순화
214		자연순치시설(自然馴致施設)	한자어	어류 또는 패류가 적응하도록 하는 시설	자연적응시설	보다 쉬운 한자어로 순화
215		건착망(巾着網)	한자어	고기그물의 한, 양조망을 개량한 것. 큰 띠 모양의 그물로 고기떼를 뺨 둘러싸고 그물의 아랫부분을 빨리 줄라매기 위해서 그물에 금속 고리를 많이 달아,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음. 마치 주머니 주둥이를 줄라매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물안의 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 다랑어·고등어·가다랭이·정어리 잡이 따위에 많이 쓰임.	현행유지 또는 두건그물, 무낭두릿웁그물	
216		종패망(種貝網)	한자어	씨조개그물	씨조개그물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17		박신(剝身)	한자어	패각만을 제거한 근육, 내장, 외투막, 생식소 등의 총칭	깍질제거	
218		자담(自擔)	한자어	자기부담	자기부담	
219		어분(魚粉)	한자어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부터 기름을 짠 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가루. 생선을 전체 또는 일부를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부분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어체의 가공처리공정에서 부생(副生)하는 머리, 뼈, 내장 등을 원료로 한 것을 황박이라 하고 어분과는 구별한다. 붉은살 생선으로부터 만든 것을 브라운 밀(brown meal), 흰살 생선으로부터의 것을 화이트밀(white meal)이라 한다. 어분은 가축이나 양식어에게 주는 배합사료의 원료가 된다.	생선가루	
220		어정선	한자어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현행유지	
221		자숙품(煮熟品)	한자어	원물을 세척하여 삶은 것을 일컫는 말	삶은 물품	
222		피레트(fillet)	한자어+영어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	(뼈를 발라낸)살코기	
223		모천국(母川國)	한자어	연어, 송어 따위의 소하성 어종이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는 하천이 있는 연안국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소하성 어종이 알을 낳는 하천 연안국)으로 설명병기
224		반두	우리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어구, 두 개의 긴 작대기 사이에 너비 1.5m, 길이 5m쯤 되는 그 물을 위는 좁고 아래는 조금 넓게 잡아매며 아랫도리에 작은 납덩어리를 달아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현행유지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부록 2.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25		순환여과양식(循環濾過養殖)	한자어	사육하는 물을 연속적으로 정화하면서 순환시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장치	현행유지	
226		갯녹음	우리말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체 상태로 석출되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함.	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미	개선방안	비고
1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1호	가두리양식어업	우리말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또는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현행유지	- 순우리말이면서 일반적인 이해가능어로 현행유지
2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4호	가리	순우리말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대오리를 엮어서 밑이 없이 통발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강이나 냇물에서 쓴다.	현행유지	-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3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부칙제8조,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각망(角網)	한자어	대모망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여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구	직각길그물/ 현행유지	
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간이식(簡易式)	한자	수하식 양식어업의 방식으로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간단한 양식어업 방식)으로 설명병기 가능 (검토필요)
5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어선감축(減隻)	한자	어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어선감축사업’	‘어선감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6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3호	감항성(堪航性)	한자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상법은 감항능력(堪航能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있어서 내공능력(耐空能力)에 비견될 수 있음.	항해안전성/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7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강선(steel ship, 鋼船)	한자	선체의 주요 구조(構造)의 재료가 강철인 선박	철강선(박) /현행유지	
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개측(改測)	한자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 점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 을 실시하는 것	다시 측정 또는 새로 측정	
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객토(客土)	한자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불량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 의 지력(地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적당한 성질을 가 진 흙을 가져다 넣는 일.	새 흙 넣기. 흙갈이/현행유지	
10		갯녹음	우리말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체 상태로 석 출되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함.	현행유지	
11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	거양(擧揚)	한자어	높이 들어올림, 칭찬하여 높임	고양/고취	
12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간망어업(set net in shallow waters, fish fence, 建干網)	한자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 물. 물고기가 밀물 때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썰물 때에 걸리어 잡힘. 어구의 형태가 방패처럼 생겨 조수 간만시 그물에 고기가 걸리도록 하 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임.	개막이그물어업, '개막이어업'	
13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건망어업(健網漁業)	한자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길그물, 헛통, 어포부 등 3 부분으로 구성된 어구를 활용하는 어 업. 조업방법은 어포부측에 배를 매 달아 놓고 어포부를 한쪽부터 들어올 려 어포부의 한쪽으로 고기를 몰아 피울려 어획함.	소형 사각자릿그물어업	
14		건착망(巾着網)	한자어	고기그물의 한, 양조망을 개량한 것. 큰 띠 모양의 그물로 고기떼를 뺨 둘러싸고 그물의 아랫부분을 빨리	현행유지 또는 두건그물, 무낭두릿침그물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줄라매기 위해서 그물에 금속 고리를 많이 달아,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음. 마치 주머니 주둥이를 줄라매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물안의 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 다랑어·고등어·가다랭이·정어리 잡이 따위에 많이 쓰임.		
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건홍식(建筍式)	한자	김양식을 위하여 대나무 등 다발을 갯벌에 세우는 방식	‘(김)통발식’	
16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격벽(隔壁, partition wall)	한자어	선박 용어로서는 선체의 내부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칸막이 벽을 가리킨다. 격벽은 선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기름 등의 탱크로 쓰기 위하여, 단순히 구획을 나누기 위하여 설치한다	현행유지/ 칸막이 벽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2항	경계수면(境界水面)	한자	경계지역의 수면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8	어선법 제3조 제5호	계선(繫船)	한자	선박을 육지에 매우 두는 일. 계류(繫留)라고도 한다. 해운의 경기가 악화될 때 운항을 중지하고 항구에 정박하는 것도 계류라고 한다. 종류는 묘박(錨泊)을 내려 정박하는 일·부표(浮標)계선·안벽(岸壁)계선의 3가지가 있다.	현행유지/계류선	
19	낚시어선업법 제4조 제2항	교부	한자	물건을 인도하는 일.	발급	
20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구명부환 (life buoy, 救命浮環)	한자	생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물에 뜨는 둥근고리	‘구명부이’, ‘구명부표’, ‘구난부표’, ‘구명고리’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구획어업(區劃漁業)	한 자	일정하게 계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	구역어업/현행유지	
22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굴패각	우리말+한자어	굴의 몸을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형성물	굴 껍테기	
23		귀매달이식	우리말+한자어	가리비양식의 방법, 귀걸이를 단 것처럼 매달아 주는 방법으로 양식의 모양을 표현한 것임	현행유지	
24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	그물코(mesh)	우리말	그물실을 서로 조합시킨 네 개의 매듭과 네 가닥의 그물실, 즉 발로 구성된 것. 망목(網目)	현행유지	
25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근해어업(offshore fisheries, 近海漁業)	한자	근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2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기선권현망어업	한자	멸치잡이 그물어구인 권현망을 사용하여 멸치 등을 잡는 어업. 권현망은 기본적으로 낚그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1개의 자루와 2개의 날개로 되어 있으며, 날개는 크게 오비기와 수비로 구분됨	쌍끌이(대형) 중층낚그물어업/ 표층낚그물어업, 멸치잡이어업, 멸치어업, 권현망어업,	용어개선이 필요한 어업으로 수산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있음. 향후 법령 정비시 반영 필요.
27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나잠어업(裸潛漁業)	한자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밭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즉,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 여성노동력 위주의 생업 생산체제이다.	맨몸잠수어업, '해녀어업' 또는 '잠수어업'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단서	낙도(落島)	한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9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낙망(落網)	한자	정치망의 한 종류로, 통그물을 헛통과 원통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경계에 비탈그물을 설치하여 원통으로 들어간 고기가 되돌아 나오기가 힘들도록 제작된 어구	비탈 자릿그물 , ‘함정망’ 또는 ‘함정그물’	.
30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5호	낚대	우리말	설낚, 미역낚	현행유지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31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낭장망 (long bag set net, 囊長網)	한자	조류(潮流)가 빠른 곳에 설치하여 멸치를 잡는 어구(漁具). 긴 자루 그물의 날개와 자루 끝을 닷 등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잡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다.	날개벌립 자루그물 , ‘긴자루 고정그물’, ‘이동식 함정그물’	
32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내용연수(耐用年數)	한자어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활용가능기간, 내구연수, 내구연한, 현행유지	회계학 등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33	낙시어선업법 제12조의2 제2항	당해	한자	바로 그것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해당	
34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데릭(Derrick)	외래어	짐을 동력을 사용해 매달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이며, 마스트(mast) 또는 붐(boom)이 있고 원동기를 따로 설치해 와이어로프에 의해 조작되는 것	현행유지/ 데릭기중기	기중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중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
35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도기시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용기에는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험	공기도출시험/ 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36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도상연습(圖上演習)	한자어	도구나 부호를 이용하여 실제 작전 처럼 하는 연습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전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적당한 개선 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37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들망어업	우리말+한자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 두고 대상 물을 위로 유인하여 들어 올려서 잡 는 어업을 들그물어업(들망)어업이라 함. 규모가 작은 것은 그물의 위 언저 리에 테가 있으며, 모서리에 길이가 같은 3-4가닥의 목줄을 내고, 이 목줄 을 한테 묶은 곳에 돌출줄을 달거나 채를 달아서 어구를 들어올림.	들그물어업	
38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디프탱크(deep tank)	외래어	창내 탱크	현행유지/설명병기/창내 탱크	“디프탱크(창내 탱크)”
3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뗏목식	우리말+한자 혼용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에 시 설물을 설치하고 치패를 부착시켜 양식하는 방법	현행유지	- 어업의 성격을 혼용 용어로 잘 표현한 것 으로 현행 유지가 적절
40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뜸	순우리말	물에 띄워서 그물, 낚시 따위의 어 구를 위쪽으로 지탱하는 데에 쓰는 물건.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 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	현행유지/설명병기	- 법령에 쓰이는 순우 리말이지만, 일반적 으로 쓰이는 용어와 의미의 차이가 있으 므로 (어구 지탱을 위한 물건)으로 병기
41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러더프로펠러 (Rudderpropeller)	외래어	해양플랜트 선박에 주로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조향·추진장치	현행 유지/설명병기	“러더프로펠러(방향타 프로펠러)”
42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제3조	레토르트 식품(retort --)	영어+한자어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이다. 조리가공한 여러 가지 식품을 일종 의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압가 열살균솥(retort)에 넣어 고온에서 가 열살균하여,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열처리식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4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6]	마을어업(마을漁業)	우리말+한자어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며,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그 면허가 인정된다.	현행유지	마을 어업은 용어의 의미를 법령에서 특정하여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해당 법령의 정의규정에서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정의규정에서 해설>
44	어선법 제4조	만재흡수선(滿載吃水線)	한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積荷限度)의 흡수선. 만재흡수선은 선박의 만재흡수선 규정에 의하여 선종별로, 또 같은 선박일지라도 최대 만재흡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정 위치를 명확히 하고, 만재흡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박의 중앙부 양현(兩舷)에 건현표(乾舷標: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선(수)심선/ 현행유지	
45	수산업법 제2조제18호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한자	밀물 경계선 고조선 공유수면 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의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 고조선(高潮線, high-water line)이라고도 하며, 공유수면에 포함되는 바닷가와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최고수위선/현행유지	
46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말목식종묘생산어업	우리말+한자	‘말목식’은 연안의 깊이가 얇은 곳에서 두 줄의 말목을 박고 말목 위에 옆으로 나무를 걸쳐서 이 나무에 수하연을 늘어뜨려 양식하는 방식을 말함.	말목식 종묘생산어업/현행유지	
47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제1호	매립행위(埋立行爲)	한자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매움’으로 순화.	‘매움 행위’	
48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모식도(模式圖)	한자어	어떤 물건 또는 구조물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도식도, 개략도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49		모천국(母川國)	한자어	연어, 송어 따위의 소하성 어종이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는 하천이 있는 연안국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소하성 어종이 알을 낳는 하천 연안국)으로 설명병기
50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묘쇄고(錨鎖庫)	한자어	돛사슬을 넣어 두는 창고.	돛사슬 창고	
5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문어단지어업	우리말+한자	여러 개의 단지를 미끼 없이 일정 간격으로 밧줄에 묶어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 후에 인양하여 단지 속에 들어 있는 문어를 잡는 어구(漁具)를 활용한 어업. 문어가 은신처를 찾아 들어가서 상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단지를 해저에 투입해 두었다가 인양하여 단지 속의 문어를 어획한다. 단지를 인양할 때는 일반 어류는 모두 놀라 달아나지만, 문어는 단지가 움직일수록 내부에 더욱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단지의 인양으로 인해 문어가 이탈하지 않음	현행유지	- 어업의 성격을 혼용용어로 잘 표현한 것으로 현행 유지가 적절
52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물양장 (lighters wharf, 物揚場)	한자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	‘소형선박 접안부두’, ‘소형부두’, ‘소형하역부두’	
5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밀링머신	영어	공작기계(工作機械)의 일종이며, 원형(圓形)의 날(cutter)이 있는 도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절삭(切削)한다. 평면, 홈(溝, groove), 기어(齒車, gear), 캠(cam) 등의 절삭에 사용한다.	회전절삭기계	
54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호	바닥식양식어업	한글+한자 혼용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현행 유지	- 혼용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55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바이오매스(biomass)	영어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물량, 생물체량이라고도 한다.	생물량, 생물체량	영어병기 검토
56		박신(剝身)	한자어	패각만을 제거한 근육, 내장, 외투막, 생식소 등의 총칭	깎질제거	
57		반두	우리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어구, 두 개의 긴 작대기 사이에 너비 1.5m, 길이 5m쯤 되는 그 물을 위는 좁고 아래는 조금 넓게 잡아매며 아랫도리에 작은 납덩어리를 달아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현행유지	순우리말 용어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에 그림 등을 병기하는 것으로 고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방란(spawn, 放卵)	한자	어류, 양서류, 패류 등이 알을 낳는 것.	산란/현행유지	
59	어장관리법 제21조	방류명령(放流命令)	한자	물로 놓아 보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60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배기터빈과급기 (Turbo Charger)	외래어	엔진배기가스에 의해 원심공기펌프를 작동하는 것으로, 엔진에 공기 또는 혼합기의 추가분을 강제로 유입해 연소압력과 엔진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현행 유지/설병병기	
61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다)	벤딩머신	영어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은 강재나 파이프 등의 재료를 굽힘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절곡기	
62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단서	벽지(僻地)	한자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을 이른다. 비슷한 말(벽경)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6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보호수면(保護水面)	한자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구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64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복판타(Double Plate Rudder)	우리말	타는 선박의 진로를 제어하는 장치이고, 복판타는 조합해 만든 타골의 양면에 강판을 붙인 것으로, 내부는 속이 빈 수밀 구조이다. 타면이 유선형이어서 효율적이고 저항도 작아서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65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붕수망어업	한자	사각형 그물의 한 모서리에 뜰과 테의 역할을 겸하는 뜰대를 붙여 수면에 지지하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발돌[沈子]을 달아 가라앉혔다가 어군(魚群)이 그물 위에 모이면 발돌 부분에 연결된 돌움줄을 당김으로써 발돌부분을 들어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을 이용한 어업	채들그물어업, 꽂치어업, 꽂치잡이어업	
6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부류망홍(浮流網籠)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이 고정식이 아니라 물속에 띄어서 설치하는 방식	‘부류통발’	
67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	부망(敷網)	한자어	자루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퍼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	들그물	들망어업과의 비교 필요.
68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제1항	부수어획(bycatch, 附隨漁獲)	한자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것)으로 설명병기
69	어촌·어항법 제2조	부잔교(浮棧橋)	한자어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뜬다리, 선창, 발판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7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브로칭머신	영어	브로치는 가공하는 모양과 비슷한 많은 날이 차례로 치수를 늘리면서 출선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봉 모양의 공구로, 이것을 브로칭머신의 축에 장치하고, 축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겨서 가공한다.	브로칭공작기계 또는 절삭가공기계	
71	어선법시행규칙[별표2]	사수(射水)	한자어	물을 분사함	물 분사	
72	내수면어업법 제2조	사유수면	한자어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	현행유지/개인수면	내수면어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임
7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살포식(撒布式)	한자	살포식은 수심 약 40m 이내의 모래와 펄이 섞인 바닥에서 서식하는 패류의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으로 설명병기
74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상가(上架)	한자	배를 선거(船渠) 안 받침대 위에 놓음	선체올림/ 현행유지	
75	어선법시행규칙 부칙 제70호 제8조	상앗대	우리말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현행유지/설명병기	“상앗대(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76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새우조망어업 (--翼網漁業)	한자	새우조망 어업은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으로 생이 무리와 보리새우 무리를 어획.	새우 빔 트롤어업, 현행유지	
77		석조망(石繰網)	한자어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친 후 돌을 던져 어군의 도피를 막으면서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	현행유지 또는 유낭두릿그물, 두릿캡그물	
7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선망어업	한자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fish shoal)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에	두릿그물어업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차차 그 범위를 좁혀서 떠 올리는 어법을 두릿그물(선망)어법이라 함.		
79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3조	선발육종 (selective breeding, 選拔育種)	한자어	생물이 가진 유용한 유전적 형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진 개체나 개체군을 선택하여 교배하여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에서도 연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교배하는 일.	현행유지	
80	수산업법시행령 제51조	선복량(船腹量)	한자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선적용량’	
81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선인망어업(boat seine, 船引網)	한자	배후리그물, 사람들이 어선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지인망과 동일하나 사람이 인력으로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과 배에서 당기는 점에 차이가 있음	배후릿그물어업, ‘배후리그물어업’, ‘배후리망어업’	
82	닭검정기준 제14조,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성성숙(性成熟)	한자어	가축, 어류 등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일	현행유지 - 성장 또는 성장성숙으로 순화 검토	- (산란 가능 성장)으로 설명 병기 또는 순화의견을 제시
8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1	세목망(細目網)	한자	그물코가 아주 작은 그물감. 일반적으로 세목망은 그물코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규격단위를 mm를 사용하지 않고 ‘경’이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50cm 폭 안에 든 씨줄의 수를 뜻합니다. 보통 시판되고 있는 것은 90경, 105경, 120경, 140경, 160경 등이 있음.	현행유지(설명병기)	설명병기 세목망(細目網: 모기장 그물)
84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제3호, 제43조	소하성(溯河性)	한자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번식기가 되면 하천, 호수 등지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성질. 연어, 송어, 철갑상어 따위가 있다.	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8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수망(deep net, 受網)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에 막대를 달아 올려 잡는 어구.	반두그물	‘반두’와 비교 필요.
86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	수밀성 (watertightness, 水密性)	한자어	기계 또는 장치의 어느 부분에 채워진 물이, 밖으로 새지 아니하고 밀봉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작용	현행유지/ 방수성	이해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순화의견이지만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함.
87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호	수산자원관리수면 (水産資源管理水面)	한자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으로 지정한 곳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8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	수산자원조사원(水産資源調査員)	한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임명한 경우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89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제1항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한자+영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9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제1호	수산종묘(水産種苗)	한자	수산관련 동식물의 종묘(성어로 가기 이전의 치어단계 또는 유생단계를 지나 착저단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91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제2항	수역(水域)	한자	수면의 일정한 구역. 물지역(비슷한 말)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92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호	수질오탁행위 (水質汚濁行爲)	한자	오탁(pollution, 汚濁) : 대기 또는 물이나 인체 등 동·식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	오탁을 오염(汚染)으로 개선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93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수하식 (hanging culture, 垂下式)양식어업	한 자	양식 대상 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 바닥 양성이나 다른 양성법으로서 양성하는 것보다 생장이 좋고,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수중매달기’ /현행 유지	
9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수하연식 (垂下延式)	한자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물을 달거나, 약 3m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	수직강하식/현행 유지	
95		순환여과양식(循環濾過養殖)	한자어	사육하는 물을 연속적으로 정화하면서 순환시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장치	현행유지	
96	어선법시행규칙[별표3]	스러스트축 (thrust shaft, - 軸)	외래어	주로 스러스트 하중(荷重)이 가해지는 축, 또는 스러스트 하중을 전달하는 축을 스러스트 축이라고 하며, 추력축(推力軸)이라고도 한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97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승망(fyke net, 柵網)	한 자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그물이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망의 한 종류임.	고리테 자릿그물,	
98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승망류어업(昇網類漁業)	한자	승망을 활용하는 어업. 어구의 구성은 길그물, 헛통, 고리테그물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루그물 속에 둥근테를 넣어 깔대기 모형으로 만들어 고기가 나오지 못하게 함. 과거에는 3각망, 5각망, 7각망, 호망 등을 승망어업으로 분류하였음	고리테 자릿그물류어업, ‘승망류어업’ ‘자루그물류어업’	
9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9 제1호 나목 5)	아웃트리거(outrigger)	영어	이동식 크레인 또는 케이블 경운장치 등으로 작업할 때 안정을 위하여 프레임 등에 부착하여 길게 설치된 지주, 또는 하우스 등이 폭풍에 버티도록 하기 위해 지상에 고정된 장치	현행유지/현외부재(舷外浮材) /고정지주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0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안강망어업	한자	안강(鮫鱈)은 아귀과의 바다 물고기의 명칭업.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조류에 의해 고기가 그물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어획하는 어업. 안강망은 우리 나라 재래식 어망인 중선망(中船網)과 어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보급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일중선(日中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돛(고정) 자루그물어업/ 하나돛 자루그물어업	
101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 제2조	양륙량(揚陸量)	한자어	수산자원의 어획량	어획량	
102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조	양륙항 (port of discharge, 揚陸港)	한자	운송되는 물품의 환적항 또는 최종 목적지	상륙항/현행 유지	
10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1	양망(揚網)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물끌기/ 현행유지	설명병기도 가능
104	어선법 제3조 제5호	양묘(揚錨)	한자	돛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진다.	돛 올리기/현행 유지	
105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양승(揚昇)	한자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림	현행유지/설명병기	양승(揚昇: 줄이나 낚시를 끌어올리는 행위)
106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제17조 제1항 관련)	양식장형망선		‘형망(dredge, 桁網)’은 틀에 갈쿠리를 붙여 해저생물을 채취하는 장치	양식장틀방그물선/ 양식장틀방선 ‘갈쿠리그물배’	
107	구수산업법	양조망(揚繰網)	한자어	두릿그물의 하나. 물고기 떼를 둘러싸기만 하고 아래 깃을 조이지 않는 형태의 선망이다.	현행유지 또는 무낭두릿그물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0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호	어구(漁具)	한자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어획도구/ 현행유지	
10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로(漁撈)	한자	고기잡이	고기잡이	
11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망(漁網)	한자	그물	그물, 고기그물	
111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2절 제목	어법(漁法)	한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망법이나 조어법 따위가 있다.	어획방법/ 현행유지	
112		어분(魚粉)	한자어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부터 기름을 짠 찌꺼기를 말려서 만든 가루. 생선을 전체 또는 일부를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부분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어체의 가공처리과정에서 부생(副生)하는 머리, 뼈, 내장 등을 원료로 한 것을 황박이라 하고 어분과는 구별한다. 붉은살 생선으로부터 만든 것을 브라운 밀(brown meal), 흰살 생선으로부터의 것을 화이트밀(white meal)이라 한다. 어분은 가축이나 양식어에게 주는 배합사료의 원료가 된다.	생선가루	
113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부칙16930호>	어살어업(漁箭漁業)	한자어	어살류[漁箭類]의 정치망 어구는 수심이 얇은 저질(底質)에 곧은 나무나 대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엮어 세우거나 박아서 어류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기 울타리를 만들	울(타리)그물 어업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어 포획하는 전통 어구 혹은 어업 중의 하나		
11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어상자(漁箱子)	한자	고기상자	고기상자	
115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제3절 제목	어업자협약	한자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1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어유(魚油)	한자	생선기름	생선기름	
117	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1호	어장(漁場)	한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18	어장관리법 제5조제2항	어장관리해역(漁場管理海域)	한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으로 지정된 해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19	어업등록령 제9조제1항 제3호	어장도 편철장	한자	‘어장도(fishing chart, 漁場圖)’는 어떤 시공간에서 어떠한 어업이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시한 것 ‘(도면)편철(filing)장’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로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 중 하나이다.	어장도면 보관장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20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어장빈매(漁場濱賣)	한자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	현행유지/설명병기	어장빈매(漁場濱賣: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형태의 일종)
121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어장청소(漁場清掃)	한자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22	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	어장휴식(漁場休息)	한자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123		어정선	한자어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현행유지	
124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어초(the fish shelter, 魚礁)	한자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번식하는 바다 밑의 도도록한 곳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물고기 번식장소)로 설명병기
125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제29조	어황(漁況)	한자어	어획 대상 자원의 수량이나 어획 가능한 밀도의 수준	어획상황	
12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어획물운반업	한자	어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2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여자망(緋子網)	한자어	씨줄과 날줄을 2가닥씩 꼬아 가면서 일정한 간격마다 서로 엮어 그 물코가 직사각형이 되게 짠 그물로 멸치 등 작은 고기를 잡는데 쓰임	교차 꼬임사각그물/ 현행유지	
128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연사기(撚絲機)	한자	정방기(精紡機)에서 뽑아진 실을 홑실(單絲)이라고 하는데, 이 홑실을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가닥으로 합쳐 꼬는 기계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홑실 꼬는 기계)로 설명병기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29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연승(long line, 延繩)	한 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어업이다.	‘연승(延繩)’은 한자어이며, 주낙은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 주낙 ’으로 통일	
130		연승수하식	한자어	양식의 종류	연승의 우리말인 주낙을 사용하여 ‘ 주낙수중매달기방식 ’으로 순화	
13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연승어업(延繩漁業)	한자	한 가닥의 기다란 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낚시에 걸린 어획 대상물을 잡는 어업.	주낙어업	
132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연안어업 (coastal fishery, 沿岸漁業)	한자	해안에서 가까운 곳 또는 한 나라의 영해(領海)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예망(曳罔, dragged net)	한자어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예망(그물끌기)”
134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접	한자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인접	
135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1조	왕돌초(--礁)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해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암초.	현행 유지. ‘초’는 ‘암초’로 순화검토	
13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우리말+한자	60t이상 어선이 하는 저인망어업을 대형저인망어업이라 하고, 1척으로 하는 것을 외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끌그물어법이 아닌 후릿그물어법을 사용하	일척식 대형배후릿그물어업/ 일척식 대형선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그물어업/ 외끌이대형저층끌망어업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므로 용어개선 및 향후 법령정비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137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외줄낚시어업 (pole and line fishery)	우리말	어획 대상 어군이 얇은 곳에 산발적으로 분포할 때 쓰는 낚시어구로 오징어 채낚기, 가다랑어 채낚기와 같은 낚시대, 낚시줄,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 어업.	현행유지	
138	어선법시행규칙 [별표3]	워터젯트추진장치 (Waterjet)	외래어+한자	엔진과 연결된 임펠러(회전익)를 구동하여 선저에 선수방향으로 설치된 흡입구를 통하여 해수를 흡입하여 압력을 높인 후, 노즐을 통하여 가속된 해수를 선저의 선미방향으로 분사시킴으로써 선체를 조향하고 추진시키는 장치	현행 유지/설명병기	
139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양부어류(遠洋浮魚類)	한자어	어류를 서식장소와 관련해서 구분하여, 해저와 연관성이 없고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를 총칭하여 부어류라 함	현행유지(설명병기)	- 설명병기 - 원양부어류(浮魚類)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
140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유어기반(遊漁基盤)	한자어	체험어업기반	체험어업기반	
141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유어장(遊漁場)	한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	체험관광어장/ 현행유지	
142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유자망(流刺網)	한자	긴 대모양의 그물 상부에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부착하여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걸어구류의 어업.	홀림걸그물	
14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5호	이식(transplantation, 移植)	한자	식물의 나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심어서 그 곳에서 기르는 것이나 동식물의 조직, 장기 등의 부분을 잘라 같은 생물의 다른 부위에 심거나 다른 생물에 옮겨 심는 것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44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인공어초(人工魚礁)	한자	바다속 자연적인 지형지물외에 인공적으로 연안에 투하하여 어초를 만든 것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145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조	일본홍(日本筍)	한자	산죽이나 갈대 따위를 모래필에 꽂아 하는 양식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일본홍(日本筍:양식방법의 하나)
146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입거	한자	배를 선거(船渠)에 넣음	선체입고/ 현행유지	
147		자담(自擔)	한자어	자기부담	자기부담	
14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리돔들망어업	우리말+한자	평평한 그물을 퍼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잡는 방법이며 비교적 작은 어구는 별다른 기구가 없으나 대형화하면 어구를 올리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어업	자리돔들그물어업	
149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제4항	자망(gill net, 刺網)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	‘ 걸그물 ’, ‘가시그물’ 혹은 ‘ 침그물 ’	
15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자망어업	한자	어획 대상 생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망목에 끼도록 하여 잡는 어구인 자망을 이용한 어업, 대상물이 그물코에 꽂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걸그물어업, 고정걸이그물어업	
151		자숙품(煮熟品)	한자어	원물을 세척하여 삶은 것을 일컫는 말	삶은 물품	
152		자연순치시설(自然馴致施設)	한자어	어류 또는 패류가 적응하도록 하는 시설	자연적응시설	보다 쉬운 한자어로 순화
153	어촌·어항법 제2조	잔교(棧橋)	한자어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연결다리	
154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한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	잠수어업/ 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5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gape net, 張網)	한자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며, 자루그물에는 형상을 유지해 주는 고리테가 있고 날개그물에 의해 유도된 고기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리테에 연결된 깔때기 모양의 허그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날개벌림 고리테자루그물 '넓은 자루 그물', '벌림그물' 등으로 순화	
156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장망류어업	한자	대상물이 강한 조류 등의 외력에 밀려가게 하여 강제적으로 자루그물에 몰아넣어서 잡는 어업. 주목망, 장망, 낭장망이 이 어업에 속한다.	'벌린 자루그물류어업' /현행 유지	
157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저서동물(底棲動物)/저서어족(底棲魚族)	한자어	주로 저인망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족으로 세계 도처의 대륙붕 및 그 연변에서 어획되는 어족을 말함	저층생활물고기/저층생활어족	
15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	한자	바다 밑에 서식하는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 끌그물[曳網]류에 속하는 그물어구	저층끌그물, 저층끌망	
159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호	저인망어업 (底引網漁業)	한자	동력선으로 바다 밑에 있는 어류 등을 어획하기 위해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업.	저층끌그물어업, 저층끌망어업	
160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전면	한자	물건의 앞쪽면	앞면	
161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정경기(整經機)	한자	날실을 필요한 올의 수만큼 가지런히 펴서 도투마리에 감는 기계	날실틀	
1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1호	정치망어업 (定置網漁業)	한자	어구는 크게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길게 뻗힌 길그물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우리(통그물)로 어군을 유도하여 잡는 어업	자릿그물어업, 고정망어업/고정그물어업, 고정식어업, 자리그물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63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조망어업(漕 翼網漁業)	한자	조망을 활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빔트롤어업 , 현행 유지	
164	내수면어업법시행 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조방식(粗放式)	한자어	양식어업의 방식	현행유지	
165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조수로	한자어	조수가 통과하는 물길	현행유지/한자병기	조수로(潮水路)
166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조업금지구역(操業禁止區域)	한자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67		종패	한자어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조개	씨조개	
168		종패망(種貝網)	한자어	씨조개그물	씨조개그물	
16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2]	쪽대	우리말	수산동식물을 손에 잡고 포획하기 위한 대나무	순우리말로 현행유지가 적절	
170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주목망 (swing net on stakes, stow nets, 柱木網)	한자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말뚝벌립 자루그물 , '나무기둥고정그물', '연안 고정식 합정그물'	
171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	죽방림 (bamboo weirs, 竹防簾)	한 자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대나무 어사리, 방진)	대나무발 자릿그물 , '대나무발어업' 현행유지	
172		죽홍식(竹筴式)	한자어	대나무를 쪼개 발을 만들고 수면에 띄워 양쪽을 고정시켜 대발에 포자를 부착케 하는 양식방법	통발식 또는 대나무발식	순우리말로 순화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73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 제2호	준설행위(dredging, 浚渫行爲)	한자	물의 깊이를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하천·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74	어선법시행규칙 제61조	지브크레인(Jib Crane)	외래어	집(jib)이 달린 크레인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旋回)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현행유지/선회크레인	
17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지인망어업(beach seine, 地引網漁業)	한자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서 어획하는 어구어법을 활용하는 어업	갯후릿그물어업, 갯후리어업	
17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지주망홍(蜘蛛網篋)	한자	건홍식의 한 방식으로서 통발의 모양이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는 방식	‘거미줄통발’	
177		지지줄 자망(--- 刺網)	우리말+한자어	자망의 종류	지지줄 걸그물	
17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직망(織網)	한자어	편자사 또는 2자사를 강하게 꼬아서 교차시켜 만든 그물	교차사각그물/현행유지	
17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질화로(窒化爐)	한자	질화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으로서 질소를 강(鋼)에 침투시켜 그 표면을 경화시키는 조작으로 공작물을 정밀하게 다듬질한 다음 암모니아가스 속에 500℃ 정도로 18~19시간 가열하여 자연스럽게 냉각시킨다. 이 질화 과정이 진행되는 노를 말한다.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18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나목 1)	창구복포	한자	창구복포(艙口覆布, tarpulin)는 방수천의 일종으로 타르 칠한 방수천, 타르입힌 돛배를 가리킨다.	타르방수천	
181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채낚기어업	우리말	수산동물물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바늘이 없는 낚시 여러 개를 달아맨 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현행유지	- 순우리말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지만 어려운 용어는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182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	채룡(-籠)	우리말+한자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틀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전복이나 가리비 등 치패를 넣어 성장시키는 양식에 사용되는 통	‘그물 망태기’/ 현행유지	
183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채묘연(採苗漣)	한자	‘채묘(seed collection)’는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 부유생활기 이후 부착생활기를 갖는 이매패(굴, 피조개, 가리비등) 및 우렁쟁이 등을 대상으로 부착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이들 유생을 수집함.	현행 유지	
18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채취(採取)	한자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냄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185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6	천평기	한자	해저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는 기계장치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공기주입기계)로 설명 병기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8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천해(淺海)	한자	얕은 바다. 대개 해안에서부터 수심 200미터 되는 부분까지를 이른다.	‘얕은 바다’	
18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체장(體長)	한자	개별 수산자원(물고기·어패류 등)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값. 수산자원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에 대비되는 한자어	일반용어인 ‘(몸)길이’로 순화	
188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초망(抄網)	한자	‘채그물’의 북한어. 채그물은 지나가는 물고기를 물 밑으로부터 떠올려 잡는 그물을 말함.	채그물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89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총허용어획량	한자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
19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축기(蓄氣)시험		보일러 안전밸브의 분출능력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공기흡입시험/현행유지	
191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축로(Shaft Tunnel, 舢艫)	한자어	선체 중앙에 기관실이 있는 선박에서는 기관실과 선미격벽 사이의 내저관 상에 축로를 설치하여 축관 상의 장치를 보호하고 보수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선미관 누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구조로 한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192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	한자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방식’양식어업	
19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어(稚魚)	한자	어린 물고기	어린물고기	
194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8호	치패(稚貝)	한자	어린 어패류	어린 어패류	
195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친수공간	한자어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등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수변공간	수변공간/ 현행유지	
19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나)	침탄로(浸炭爐)	한자	침탄은 강철의 탄소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를 강철표면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침탄을 하기 위하여 쌓은 노를 말함	탄소강화로/현행유지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19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침하식(沈下式)	한자	‘침하’는 가라앉아 내림.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가라앉히는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설명 병기
19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커플링(Coupling)	외래어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현행유지/축이음	
19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호	컴프레서	영어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20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라목 표	코퍼담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청수 탱크와 유류 탱크 사이의 유밀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입시물막이 또는 현행유지	
20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크랭크축(crankshaft軸)	외래어+한자어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현행 유지 혹은 곡축(曲軸)	
20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비고	커플링(Coupling)	외래어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현행유지/축이음	
203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제3호	통발	순우리말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데 쓰는 어구. 가는 댕조각이나 싸리, 플라스틱, 아크릴 등으로 통처럼 엮어 만들어 사용하며, 대개, 봉장어 등을 잡는데 사용함. 대상물에게 은신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끼를 사용하여 통 속으로 유인하여 잡는 어구.	현행유지	- 법령에 쓰이는 순우리말이며,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아니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20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투석식(投石式)	한자	바닥식 양식어업의 한 방식으로서 조개껍데기, 돌 따위를 바다에 뿌려서 조개류나 해조류를 기르는 방법.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바다에 뿌려 기르는 양식 방법)으로 설명병기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0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투망(投網)	한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	현행유지/설명병기 /그물 던지기	“투망(그물던지기)”
206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6호	트롤어업 (trawls 漁業)	영어+한자	동력선으로 전개관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동력그물어업/ 현행유지	
207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패각(貝殼)	한자어	연체동물에서 연체를 싸서 보호하는 무기질의 분비형성물	껍데기	
208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패류껍질어업	우리말+한자	소라·피랴고등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현행유지/조개류껍질어업	
209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라목	폐위(閉圍)	한자	넓은 뜻으로는 외관,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격벽,감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폐위구역 가운데 제외구역을 뺀 부분을 말함.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좁은 뜻의 폐위구역에 해당함	현행유지(설명병기) - 폐쇄구역 또는 닫힌공간으로의 순화 검토	- 한자병기 - 순화의견이 일치하는 용어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1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	포란(brooding, 抱卵)	한자	동물이 산란한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체를 이용하여 알을 따뜻하게 하거나 보호하는 행위. 보통 조류에서 많이 발견되며, 게나 성게의 일부도 몸체로 알을 보호하지만 육자낭이나 입 속에서 알을 보호하는(구내보육, mouth brooding) 어류 종류가 있음.	알보호행위/현행유지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21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포획(捕獲)	한자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현행유지(한자병기)	- 한자병기 - 일반용어라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적절
212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폭로부/폭로갑판		선박의 외부장소로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	노출부/갑판/현행유지	
213		피레트(fillet)	한자어+영어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	(뼈를 발라낸)살코기	
21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	합사기(合絲機)	한자	실을 2가닥 이상 합하는 것, 또는 그 기계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실을 합치는 기계)로 설명병기
215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	해선망어업 (醞船網罟漁業)	한자	첫새우를 잡는 어업	배고정 기름대자루그물어업 하나닷 기름대자루그물어업 '첫새우잡어업'	
216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2항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한자	해양친수공간은 바다에 면한 친수 공간을 의미함	현행유지	- 일반적인 용어의 조합이며 어려운 용어도 아니므로 현행유지가 적절
217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 제4호	해조장(algal bed, 海藻場)	한자	해조류가 많이 모여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 생물의 산란장, 성육장 및 서식장소가 되는 곳.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해조류 서식장소)로 설명병기
218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3호	해중림(sea jungle, 海中林)	한자	바다에 대형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곳. 일반적으로 해조류가 잘 번식하는 곳은 보통 저조선에서 수심 20m까지로 수산동물의 산란장이나 유생의 발육장으로서 중요함.	해조밭 , 해조숲	
219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	현창(Side Scuttle, 舷牆)	한자어	선박 거주구역(accommodation space)의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선체에 설치한 개구	현행 유지/설명병기	
220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형망어업(形網漁業)	한자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틀방그물어업 , 씨레그물어업,	

부록 3.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용어정비안

	용어출처	수산전문용어	구분(한자어/외래어 등)	의 미	개선방안	비 고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퀴나 씨레 같은 것을 부착한 것으로 씨레에 의해 펄이나 모래 속에 묻혀 있는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쓰레그물어업	
221	수산업법 제2조제4호	호료(糊料)	한자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축을 좋게 하는 물질. 천연 호료와 합성 호료가 있으며, 식품에 넣으면 점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지는 물질	접착원료/접착폴원료/현행 유지	(설명을 붙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22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2) 마)	호빙머신	영어	기어를 잘삭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어절삭용 공작기계, 수직호빙머신과 수평호빙머신이 있다.	기어제작기계 또는 기어가공기계	
223	어선법시행규칙[별표8]	호이스트 (hoist, 卷上機)	외래어	전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올리기 기계(권상기)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체인 호이스트, 공기 호이스트, 전기 호이스트 등이 있다.	현행 유지/설명병기	
224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제1항	휴어기(no-fishing period, 休漁期)	한자	어로 작업을 쉬는 시기.	현행유지(설명병기)	- 한자병기 - (어로작업을 쉬는 시기)로 설명병기
225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흘수(吃水)		수중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	선(수)심/현행유지	
226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제69조 관련)	F.R.P 선	영어+한자	유리섬유를 골격으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로 만든 배(강화 플라스틱선)	강화플라스틱선/현행유지	